

310.127
72747
1.2
國富資料

No. 5

1978. 12.

1977年國富統計實務者會議結果(II)

(第61次～第93次)

B81449

1. 本資料는 1977 年 國富統計調査 擔當機關의 業務에 參考 하고 1977 年 國富統計調査의 業務的인 記錄을 남겨 次期 國富統計 調査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國富統計 業務者 會議가 構成된以後 第 60 次까지의 會議結果는 第 1 輯으로 이미 發刊하였고, 本第 2 輯에는 第 61 次會議(78, 5, 22) 부터 第 93 次會議(78, 11, 21)까지의 結果를 收錄하였으며 第 94 次以後의 會議結果는 앞으로 發刊될 第 3 輯에 收錄할 豫定입니다.
3. 本資料에는 紙面關係로 別添資料中 一部를 別冊으로 하였으므로 同資料가 必要한 경우에는 國富統計調査本部(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基準課 72-14 03)에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1977 年 國富統計調查實務者會議

1. 構成経緯

가. 1977 年 國富統計調查支部長會議 (77.6.29) 에서 本實務者會議
를 調査本部에 設置하기로 하였음.

나. 各調査支部의 推薦에 依拠 構成하여 第1次 本會議를 77.7.6
開催하였음.

다. 土地 및 山林資産 評價를 위한 關係機關會議에서 本實務者會
議에 山林庁 職員을 追加하여 運營하기로 하였음.

2. 存続期間

1977.7.6 ~ 1979.12.31 (30 個月間)

3. 構 成

1977 年 國富統計調查本부의 幹事인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基
準課長이 議長이 되며 그 構成 要員 名單은 다음과 같음.

다 음

所屬機關	職 級	姓 名	備 考
經濟企劃院	審 記 官	金 景 中	議長 (調査本部 幹事)
	行政事務官	金 泰 憲	77.7 ~ 78.11
	〃	趙 秉 甲	78.11 ~ } 調査本部

所屬機關	職 級	姓 名	備 考
經 濟 企 劃 院	行政事務官	南 繁	家計資産調査支部
農 水 産 部	〃	申 定 均	77.7~78.2
	〃	崔 炳 烈	78.2~78.5 個人企業
	〃	安 在 克	78.5~78.6 資産第1支部
	〃	徐 永 勲	78.7~
韓 國 銀 行	調 査 役	金 在 洙	政府 및 對外資産調査支部
韓國産業銀行	〃	金 春 植	法人資産調査支部
中小企業銀行	〃	尹 南 烈	77.7~78.8 個人企業
	〃	閔 周 鉉	78.8~ 資産調査第2支部
國 民 銀 行	〃	南 圭 弘	個人企業資産調査第3支部
山 林 庁 (山林資原研究所)	研 究 官	金 圭 憲	78.5~ 林野地 및 山林評價

4. 機 能

本実務者會議 構成員은 調査本部의 要員으로 다음業務를 遂行함.

가. 1977 年 國富統計調査 基本計劃 樹立

나. 1977 年 國富統計調査 綜合指針書作成

다. 各種評價基準表의 作成指針設定 및 基準表檢討

라. 各調査部門別 細部計劃 (調査 結果表, 調査要領等) 檢討

마. 部門別 및 綜合結果分析

바. 其他 調査上 各種問題点 解決

사. 土地 및 山林資産評價를 위한 基本計劃 樹立 및 綜合結果分析

차 례

회 수	회 의 내 용	페이지
61 차	동식물 평가 기준표 검토	3
62 차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 각종 평가기준표 검토	6
63 차	각종 평가 기준표 검토	85
64 차	물가 배률표 작성 방법 검토	97
65 차	2 차 계몽선전 실시	100
66 차	법인 및 개인기업부문 조사표 및 조사요령서 검토	102
67 차	건물평가 기준표 이용	104
68 차	국부통제 잠정추계 결과 작성 방법검토	109
69 차	국부통제 잠정추계결과 작성 방법 및 기간	111
70 차	잠정추계,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 방향 검토	115
71 차	지부장 회의 안건 검토	117
72 차	정부 부문 결과표 검토	131
73 차	기계 부문 결과표 검토	162
74 차	개인기업부문 (농림어업) 결과표 검토	189
75 차	개인기업부문 (농림어업) 결과표 검토, 정부 부문 물물자산 평가 기준 결정	191
76 차	개인기업부문 결과표, 법인부문 조사표심사요령서검토	210
77 차	법인부문 결과표 검토	254
78 차	개인기업부문 조사표 심사 요령서 검토	303
79 차	농림어업부문 조사표 심사요령서 검토	318

회 수	회 의 내 용	페이지
80 차	정부부문 조사표 심사요령서 검토	331
81 차	중고품 자산 평가 방법연구	343
82 차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347
83 차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350
84 차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350
85 차	총자산액 개념 선정 및 중고품자산 평가방법연구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를 위한 실무자회의〉	391
86 차	기본계획 수립	397
87 차	기존자료 검토	399
88 차	산림 평가 방법 검토	402
89 차	농경지 평가 방법 검토	406
90 차	평가지침서 작성	416
91 차	평가지침서 작성	419
92 차	기존 자료 검토	421
93 차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 방법 및 업무 분담	425

〈 제 61 차 〉

1978. 5. 22.

1.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동식물 평가기준표중 다음 사항을 보완하고 68년도와의 대비표, 작성지침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별첨참조)

가. 식물 평가기준표

(전체사항)

○ 68년도와 비교하여 볼때 육성년수가 대체로 빨라졌으므로 그 근거를 파악토록 하였음.

○ 각자산별로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에 도달했을 때의 잔가율을 5%로 간주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각품목별 정율을 산출하여 기입토록 하였음. (밤나무)

○ 기 작성된 사과, 감나무등의 육성년수 산출근거를 파악하여 동일기준으로 밤나무의 육성년수를 결정토록 하였음.

○ 밤나무 육성가격이 사과나무 육성가격의 1/16에 지나지 않아 사과나무와 밤나무의 육성년수에 이르는 투입비용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음.

나. 동물평가기준표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음.

○ 한우 : 암·수별, 연령별, 지역별 가격

○ 젖소, 고기소, 말 : 연령별, 전국평균 가격

○ 기타동물 : 성숙, 미성숙, 시기별, 전국 평균 가격

2. 각부문별 조사표 검토

가. 각부문별 조사표를 검토한 결과 error 를 check 할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를 5.23 자료처리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법인부문에 있어서 현실에 가까운 자산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액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품목별 자산 재평가액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 자료를 이용하여 각품목별 취득 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77.12.31. 현재의 총자산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순자산액은 자산재평가액을 총자산액은 취득 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각 자료에 적용된 물가배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 분석상 문제점이 내재함. 그러나 법인의 자산을 품목별, 취득년도별로 독립 조사할 경우 조사업무량의 과대함을 감안할때 현재와 같이 품목별 취득년도별을 계속 나열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일본의 경우 동일) 따라서 현 조사방법에 의존토록 하고 조사결과의 분석시 이를 감안하기로 하였음.

3. 기타사항

62차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1978. 5. 29. 10:00

나.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다. 안전 : 개인 기업 표본설계

첨부 : 동물평가 기준표 및 62 차 회의결과 참조

식물평가 기준표

〈 제 62 차 〉

1978. 5. 29.

1. 6월초에 개최 예정인 국부통계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아래와 같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보완하여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가.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 (안)

나. 잔가율표 (안)

다. 동식물 평가기준표 (안)

라. 물가배율표 및 건물평가기준표 작성지침 (안)

2. 각부문별로 본조사부터 사후조사까지의 세부 업무추진 일정을 차기회의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첨부 : 1.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 (안)

2. 잔가율표 (안) 별책참조

3. 동식물 평가기준표 (안)

4. 물가배율표 및 건물평가기준표 작성지침 (안)

〈별첨 1-1〉

個人企業部門 (農林漁業) 標本設計 (案)

1. 標本設計의 基本條件

本調査를 위한 標本設計에 充足되어야 할 基本條件으로 다음 事項을 考慮하였다.

가. 주어진 豫算規模內에서 最大의 精度를 얻도록하며

나. 豫算規模와 作業量 및 調査員의 資産調査의 熟練度 및 既存 調査資料의 活用面을 勘案하여 標本地区를 選定하고

다. 調査員은 既存 農家經濟調査員으로 하고 調査期間은 60日間으로 한다.

라. 推定値는 道別産業小分類別 資産額規模別로 分類할 수 있도록 한다.

2. 標本設計의 基本計劃

農水産部門資産調査를 위한 標本設計의 基本條件을 滿足시킬 수 있도록 適正標本을 設計함에는 極히 어려운 技術的인 問題가 많이 있었으며 業種에 따라 相異한 點이 있어 綜合的이고 包括的인 標本設計에는 어려운 點이 많다. 따라서 農水産部는 標本設計의 方向을 決定하기 위하여 試驗調査를 實施한 結果 作物生産量을 中心으로한 農家の 資産額은 道別로 큰 差異가 없음을 調査結果에서 얻었다.

따라서 企業農을 除外한 米麦中心의 農家資産調査는 農水産部에서 多年間 調査하고 있는 農家經濟調査地区標本 家口를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農家經濟調査地区標本の 母集團은 耕他 10a 以上の 農家 即 農家定義에 따른 農家로 構成되어 있으며 試驗場 學校等の 法人은 除外되어 있다.

本 標本은 任意標本選定方法에 道別로 母集團을 選定하고 있으며 標本設計는 層化 3段確率比例法에 의한 抽出法을 用하고 있으며 第1次 抽出은 市邑面, 第2次 抽出單位는 人口센서스 當時選定한 人口調査區로 하고 第3次 抽出單位는 農家로 되어 있다.

3. 標本設計

가. 標本の 크기

米穀生産量の 標本誤差	0.74 %
道特性値의 許容誤差	7.00 %
全國特性値의 許容誤差	2.50 %

$$\begin{aligned}
 n &= \frac{t^2 \cdot CV^2}{\epsilon^2} \\
 &= \frac{1.96^2 \times 0.74^2}{(0.025)^2} \\
 &= 3,366 \approx 3,375 \text{ 戶}
 \end{aligned}$$

調査地区数 = 3,375 戶 ÷ 15 = 225 地区

道別標本農家配分率

道 別	總家口数(N)	$\sqrt{N}$	配分率	地区数	標本農 家 数	f i (추출율)
京 畿	260,623 ^호	511 ^호	11.4%	26 ^개	390 ^호	653
江 原	137,854	371	8.3	19	285	530
忠 北	161,993	402	9.0	20	300	533
忠 南	296,900	545	12.2	27	405	740
全 北	271,774	521	11.7	26	390	703
全 南	433,265	658	14.7	33	495	880
慶 北	416,466	646	14.5	33	495	818
慶 南	333,644	578	12.9	29	435	770
濟 州	56,055	237	5.3	12	180	311
合 計	2,368,974	4,469	100.0	225	3,375	702

나. 層 化

本 標本設計에 있어서 層化의 指標는 全國的으로 同一 指標
를 使用하여 層化하였으며 指標의 選定은 農家率, 耕地率, 畝率, 其
他 水利安全畝率, 養蠶農家率, 畜産農家率, 煙草栽培農家率, 戶當耕地面

積等 農家資産과 關係가 있는 事項들이 考慮되어 있으며 또한 道別로 層을 設定하였다.

다. 標本抽出

1) 1次 抽出 單位 (邑面)

各層에서 農家數에 比例하는 確率比例法을 適用하여 2個의 邑面을 抽出하였다.

2) 2次 抽出單位 (行政上里洞 - 調查地區)

抽出된 邑面內의 各里洞의 總家口農家 總面積 耕地面積 畝面積 果樹農家 養蚕農家등의 資料를 蒐集하여 이를 利用하여 다시 層化하고 各層에서 1個의 里洞을 抽出하였다.

3) 3次 抽出單位 (農家)

抽出된 各 里洞의 總農家一覽表를 耕地面積順으로 作成하여 15個의 標本農家를 系統抽出하였다.

이때에 抽出間隔은 다음 算式에 의하였다.

$$f_i = \frac{n_i}{N_i}$$

$$f_i = f_{i_1} + f_{i_2} + f_{i_3}$$

$$= \frac{P_{ijk}}{P_{ij}} \times \frac{P_{ijk\ell}}{P_{ijk}} f_{i_3}$$

$$\frac{1}{f_{i_3}} = \frac{P_{ijk\ell}}{P_{ij}} \times \frac{1}{f_i}$$

여기서

$f_i = i$ 번째 道の 總抽出率

$n_i = i$ 번째 道の 總標本農家數

$N_i = i$ 번째 道の 總農家數

$P_{ij} = i$ 번째 道の j 번째 層의 總農家數

$P_{ijk} = i$ 번째 道の j 번째 層의 k 번째 邑面의 總農家數

$P_{ijk\ell} = i$ 번째 道の j 번째 層의 k 번째 邑面의 ℓ 번째
調査區 總農家數

라. 推定式

1) 道別 平均值

$$X_D = \frac{\sum_i \sum_k \times D_{jk}}{\sum_j n_{Dj}}$$

2) 全國 平均值

$$X = \frac{\sum X_D \cdot W_D}{\sum W_D}$$

$X = D$ 道の 平均치

$X_{DiK} = D$ 道の j 조사구 K 농가의 특정치

$n_{Dj} = D$ 道の j 조사조구의 표본농가수

$W_D = D$ 道の 총농가수

마. 分散 推定式

$$V_{r^2} = V_x^2 + V_n^2 - 2V_{xn} \quad \text{여기서}$$

$$V_x^2 = \frac{1}{(\sum x)^2} \sum_g \frac{L_g}{L_g - 1} \sum_h (X_{gh} - P_{gh} \cdot X_g)^2$$

$$V_n^2 = \frac{1}{(\sum n)^2} \sum_g \frac{L_g}{L_g - 1} \sum_n (n_{gh} - P_{gh} \cdot n_g)^2$$

$$V_{xn} = \frac{1}{\sum x \sum n} \sum_g \frac{1}{L_g - 1} \sum_h (X_{gh} - P_{gh} \cdot X_g)^2$$

$$(n_{gh} - P_{gh} \cdot n_g)^2$$

$$V_r^2 = \text{분산}$$

$$V_x^2 = \text{특정치의 분산}$$

$$V_n^2 = \text{표본농가수의 분산}$$

$$V_{nx} = X \text{와 } n \text{의 공분산}$$

$$P_{gh} = g \text{ 군 (group)의 총 표본농가수에 대한}$$

$$g \text{ 군내 } h \text{ 층의 표본 농가비율}$$

$$X_g = g \text{ 군의 표본농가 특성치의 총계}$$

$$n_g = g \text{ 군의 표본농가 총계}$$

$$n_{gh} = g \text{ 군의 } h \text{ 층의 표본농가의 합계}$$

라. 서울 부산의 標本家口 抽出

1) 서울과 부산시에는 農家經濟調查地區가 없으므로 農業基本統計 調查區를 利用하여 対象農家를 抽出한다.

2) '77年末에 作成한 農業基本統計 綜合表上的 農家口를 調查區 番號順으로 나열하여 全体家口의 $\frac{1}{10}$ 로 계통추출하여 서울은 50가구(농업기본통계 표본농가 508가구) 부산은 75가구(農業基本統計 標本家口 771家口)를 選定하여 調査対象家口로 한다.

4. 農家經濟調查地區 一覽表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경 기			19	여주, 점동, 당진	5
03-01	인천, 역곡, 괴안	15	20	이천, 대월, 고담	5
02	사흥 남 당	15	21	양평, 지제, 옥현	4
03	고양, 원당, 신원	15	22	강화, 송해, 하도	5
04	평택, 팽성, 두정	15	23	연천, 군남, 진상 2	5
05	포천, 군내, 유교	14	24	가평, 상, 향사	5
06	안성, 미양, 양지	15	25	양주, 화도, 차산	5
07	김포, 대곶, 대농	14	26	가평, 상, 행현 2	5
08	양주, 주내, 고읍	16			
09	평택, 포승, 석정 2	16	계	26 개 지구	390호
10	여주, 승서, 왕대	16			
11	고양, 원당, 도내	14	강 원		
12	광주, 광주, 장지	16	04-01	영월, 서, 쌍룡 2	15
13	김포, 대곶, 석정	15	02	삼척, 삼척, 남양 1	15
14	화성, 향남, 하길	15	03	인제, 남, 어른 1	14
15	백토	15	04	병주, 강동, 운산 2	15
16	파주, 적성, 주월	15	05	원성, 소초, 장양 2	15
17	이천, 대월, 대대	15	06	횡성, 횡성, 영영포	15
18	용인, 원삼, 사암	15	07	양양, 현북, 하광정	14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08	고성 거진 송정	15	05-05	보은 보은 성주	15
09	영월 서면 웅정	15	06	진천 초평 진암	15
10	양구 남 가오작	15	07	보은 보은 수정	15
11	삼척 삼척 적노	15	08	창원 북일 초정	15
12	춘성 동 안천 3	15	09	음성 감곡 단평	15
13	평창 대화 개수 2	15	10	증원 신니 회석	15
14	명주 옥계 낙풍	15	11	괴산 감불 오창	15
15	홍천 두출 철정	15	12	영동 용산 가곡	15
16	정선 정선 용탄 2	15	13	음성 맹동 신돈	15
17	철원 서 와수 5	15	14	옥천 이원 평기	15
18	화천 간동 구만	15	15	진천 초평 용정	15
19	인제 남 부평	15	16	옥천 청산 대성	15
			17	영동 상촌 임산	15
계	19 개 지구	285호	18	증원 신니 문탁	15
			19	단양 가곡 향산	15
충 북		15	20	제천 봉양 명암	15
05-01	괴산 증평 덕상	15	계	20 개 지구	
02	청주 금천	15			
03	제천 봉양 주포	15			
04	단양 가곡 덕천	15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충 남			06-20	청양 청양 학당	15
06-01	연기 조치원 상	14	21	공주 계룡 금대	15
02	당진 우강 창	15	22	금산 복수 수영	15
03	예산 고덕 석곡	15	23	아산 염치 쌍죽	16
04	" 지곡	14	24	청약 적곡 미당	15
05	천원 성환 매주	15	25	대덕 산내 하소	16
06	부여 임천 칠산	15	26	논산 두마 부남	15
07	공주 우성 대성	15	27	천원 성환 울금	15
08	서천 서천 태월	15			
09	부여 임천 단사	15	계	27 개 지구	405호
10	당진 순천 광천	15			
11	보령 청소 장곡	15	전 북		
12	아산 염치 석두	15	01	부안 부안 동중	15
13	서천 서천 화성	15	02	임실 임실 이도	15
14	서산 태안 장산	15	03	완주 조촌 고광	15
15	서산 성연 명천	15	04	정읍 이평 두전	15
16	홍성 장곡 천태	15	05	익산 오산 오산	15
17	홍성 홍동 신기	15	06	완주 이서 남계	15
18	논산 두마 광석	15	07	부안 보안 하임석	15
19	금산 금성 화담	15	08	남원 구생 제천	15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07-09	김제 죽산 홍산	15	전 남		
10	고창 신태 송암	15	08-01	광주 상무	15
11	익산 용안 용두	15	02	보성 별교 봉림	15
12	김제 만경 송상	15	03	함평 월야 정산	15
13	순창 복형 농암	15	04	해남 문내 동의	15
14	옥구 임피 읍내	15	05	강진 강진 목회	15
15	고창 해리 고성	15	06	구례 광의 대산	15
16	옥구 임피 보석	15	07	승주 별량 운산	15
17	장수 계내 금곡	15	08	영광 염산 반안	15
18	남원 보절 서치	15	09	장흥 장흥 향양	15
19	고창 해리 사만	15	10	광산 동곡 송대	15
20	순창 인계 도룡	15	11	목포 이로	15
21	임실 임실 감성	15	12	함평 학교 석정	15
22	무주 적상 삼유	15	13	나주 봉황 유곡	15
23	정읍 산내 예탁2	15	14	영광 군남 설매	15
24	전안 정천 모정	15	15	무안 현경 가입	15
25	장수 계내 명덕	15	16	담양 봉산 제월	15
26	진안 정천 월평	15	17	고흥 포두 남촌	15
			18	여천 소라 현천	15
계	26 개 지구	390호	19	해남 옥천 송잔	15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08-20	화순 남면 사평	15	09-03	월성 만강 양월 2	15
21	장성 진원 선적	15	04	영천 영천 조교	15
22	나주 남평 풍림	15	05	영천 영천 화룡	15
23	강진 성전 영흥	15	06	상주 상주 낙상	15
24	화순 이서 창랑	15	07	금릉 개령 신룡	15
25	무안 청계 청수	15	08	상주 상주 도남	15
26	담양 창평 오강	15	09	경산 남산 하대	15
27	장흥 부산 토계	15	10	선산 해평 괴곡	15
28	광양 옥룡 읍촌	15	11	영일 기계 내단	15
29	보성 도동 명봉	15	12	의성 금성 초전	15
30	영양 영암 개신	14	13	예천 보문 가곡	15
31	여천 삼일 적량	15	14	안동 풍산 신양	15
32	곡성 죽곡 봉정	15	15	안동 풍산 마애	15
33	진도 임회 석교	15	16	달성 성서 장동	15
			17	영양 입암 홍구	15
계	33 개 지구	495 호	18	고령 덕곡 성룡	15
경 북			19	월성 의동 석계	15
			20	영수 부석 감곡	15
09-01	포항 용흥	15	21	울진 울진 봉평	15
02	청송 청송 월막	15	22	칠곡 가산 학하	15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09-23	의성 봉양 신평	15		김해 대저 사덕 신평	15
24	성주 벽진 외기	15		남해 절천 진목 고사	15
25	봉화 물야 개안	15		통영 광도 노산 본촌	15
26	울진 북면 부구	15		사천 서포 구평 대포	15
27	경산 남산 평기	15		남해 설천 진목	15
28	청도 금천 동곡	15		밀양 하남 명례 해동	15
29	영덕 창수 인량	15		함양 안의 이전 율림	15
30	군위 소보 평호	15		창원 북 외산 명촌	15
31	청송 현동 도평	15		창령 대합 신당	15
32	영덕 창수 수동	15		거창 거창 서면 모곡	15
33	문경 문경 평천	15		김해 진례 송정 산월	15
				고성 영오 성곡 금산	15
계	33 개 지구	495호		산청 산청 부리	15
경 남				창녕 대합 퇴산 월계	15
				진양 수곡 원내	15
10-01	울산 학성	15		하동 양보 운암 진암	15
02	거제 거제 서상	15		하동 옥중 양구	15
03	마산 가포	15		양산 물금 조리	15
04	함안 가야 말산 동동	15		의령 대의 하촌	15
05	밀양 하남 양도 도야	15		함양 안의 율림 황대	15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지 구 번 호	지 구 명	표 본 농 가 수
10-26	울주 웅촌 집단	15	11-04	북제주군 조천 조천	15
27	통영 광도 안정 상촌	15	05	남제주군 중문 강정	15
28	합천 울곡 본천 3	15	06	" 안덕 화순	15
29	거창 북상 월성 내계	15	07	" " 사계	15
			08	" 대정 하포	15
계	29 개 지구	435호	09	북제주군 애월 수단	15
제 주			10	제주시 아라 1 동	15
11-01	제주 이도 이동	15	11	북제주군 구좌 하도	15
02	남제주군 서지 하효	15	12	" " 평대	15
03	북제주군 한림 옹포	15	계	12 개 지구	180 호

5. 全数調査

農林漁業資産의 全数調査業種 및 規模의 範圍는 다음과 같은 原則下에 選定하였다.

가. 政策資料에 크게 이바지되는 主要業種과 規模

나. 資産額面으로 보아 比重이 크며 事業体數가 적은것.

다. 標本調査로서는 推定이 困難한것 따라서 農業資産調査의 全数調査業種 및 規模의 範圍는 主穀農業外에 畜産, 果樹, 蚕業등의 經

當規模가 큰 企業農에 限하여 全數調査키로 다음과 같이 그 規模를 決定하였다. 다만 全數調査規模 以下는 標本調査에서 포착되도록 하였다.

農業全數調査 對象業種 및 規模

○ 動物

소 40 頭以上 (한우, 유우, 육우)

닭 3,000 首以上

돼지 100 頭以上

○ 植物

果樹 30 ha 以上

桑田 20 ha 以上

양송이 전 재배 농가 (법인 제외)

動物全數調査數

한 우 79 가구

젖 소 223 ♫

고기소 4 ♫

돼 지 578 ♫

닭 2,515 ♫

계 3,399 ♫

植物全數 調査數

사 과 961 ♫

감 92 ♫

배 293 가 구

감 꺾 167 "

복숭아 36 "

상 전 161 "

포 도 27 "

양송이 534 "

계 2,271 "

漁業部門標本設計

1. 標本設計의 基本條件

本 調査를 위한 標本設計는 다음 基本條件을 고려하였다.

가. 漁業基本 통계 標本調査區와 同一 地域으로 110 조사구중 42 조사구로 하였다.

나. 漁業基本 통계조사시 식별된 經營者 家口 20,460 호중 409 호를 標本數로 하여 추출율 $1/50$, 全体經營者家口의 約 $1/300$ 이 되도록 추출하였다.

다. 市道別 漁業別 층화는 漁業基本 統計調査時 식별된 市道別 漁業別 家口數에 比例하였다.

2. 推 定 式

$$\hat{X} = \sum r X X \quad 300$$

說 明

$$\hat{X} = \text{국부통계 總資産額}$$

$$r = \text{基本統計調査區內的 推出된 國부 統計 標本体}$$

$$X = \text{國부 統計標本体의 資産額}$$

3. 國부統計 調査標本 選定

가. 市道別 標本

1) 標本調査

市 道 別	標本家口数	$\sqrt{N}$	配分比率	標 本
釜 山	120	10.9	2.8	12
京 畿	1,635	40.4	10.2	42
江 原	4,442	66.6	16.8	69
忠 南	2,195	46.9	11.8	48
全 北	908	30.1	7.6	31
全 南	5,576	74.7	18.8	77
慶 北	2,847	53.4	13.5	55
慶 南	1,765	42.0	10.6	43
濟 州	972	31.2	7.9	32
計	20,460	396.2	100 %	409

2) 全 数 調 査

市 道 別	計	漁 業 規 模	
		80 ㄴ 以 上	内 水 面
서 울	23	7	16
釜 山	189	184	5
京 畿	35	18	17
江 原	10	6	4
忠 南	24	-	24
忠 北	8	-	8
全 北	32	-	32
全 南	45	20	25
慶 北	9	1	8
慶 南	42	22	20
濟 州	1	-	1
計	418	258	160

4. 표본오차

$$C.V(X) = Cx \sqrt{\left(\frac{1}{n} - \frac{1}{N}\right) (1 + B^2 - 2\rho_{xy} B)}$$

5. 분산식

$$V = N^2 \sigma_x^2 \left(\frac{1}{n} - \frac{1}{N}\right) (1 + B^2 - 2\rho_{xy} B)$$

6. 漁業全數調査業種 및 規模

- 연근해漁業 : 80 t 級 以上の 선박이 있는 家口 및 事業体
- 内水面漁業 : 養殖業을 主로 하는 家口 및 事業体

期待抽出誤差 (Sampling error)

$$C.V(x) = cx \sqrt{\left(\frac{1}{n} - \frac{1}{N}\right) (1 + B^2 - 2pxy B)}$$

x = 推定漁家数

N = 調査区数

n = 標本調査区数

$$B = \frac{cy}{cx}$$

$$cx = \frac{\sigma x \rightarrow 71 \quad (xk^2)}{x \rightarrow 72 \text{ 年 12 月 標本調査区分 総漁家数 (가정)}}$$

$$cy = \frac{\sigma y \rightarrow 70 \text{ 年 標本調査区 家口数 } y^2}{\bar{y} \rightarrow 70 \text{ 年 12 月 標本調査区分 総漁家数}}$$

xk 72 年 12 月 漁家口数 (가정)

yk 70 年 12 月 漁家口数

$$pxy = \frac{\Sigma xk yk - n\bar{x}\bar{y}}{\sqrt{(\Sigma x^2 - n\bar{x}^2) (\Sigma y^2 - n\bar{y}^2)}}$$

林業標本設計

1. 対象業体の 極小로 全数調査로 함.
2. 國稅庁에서 發行한 영림업許可를 所持하고 事業을 經營하는 全
家口 및 事業체를 調査対象으로 한다.

林業全数 調査数

양 묘 업	132	가 구
육 립 업	527	〃
표 고 버섯	884	〃
벌 목 업	52	〃
計	1,595	〃

(별첨 1-2)

個人企業部門 (非農林漁業) 標本設計 (案)

- 中小企業銀行 -

1. 조사범위 및 대상

가. 業 種

1977.12.31 現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건설업, 전기 gas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형태의
전사업체

나. 지 역

전 국

다. 자 산

유형 고정 자산 및 재고 자산

라. 소유주체

자기소유 자산 및 사용 자산

2. 모집단 (Population)

가. 각종 Census 리스트

① 종업원 1인 ~ 4인 규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제조업, 광업)

②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중개업, 무역업, 연초소매업, 구내식당등
일부 업종이 제외되고 있음.

③ 작성후 2년정도 경과함에 따라 폐업, 이전, 신설등 유고업

체가 많음.

④ 반면 종업원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수를 알 수 있음.

나. 국세청 개인 사업체 Master File 1977년 12월 31일 현재
개인 기업형태의 全事業체를 電算테이프로 만들어 조사본부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1) 종업원 1인~4인 규모의 사업체를 포함한 가장 광범위하
고 포괄적인 최신의 자료이며 (수록내용: 別添参照)

2) 산업 분류가 세분되어 있어 Sampling 方法여하에 따라서는
推定の 精度도 상당히 提高시킬 수 있음.

3) 業能, 種目分類가 標準産業分類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일부업종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으나 이의 조정이 가능함.

다. 센서스 사업체수와 국세청 사업체수와의 비교

	국세청 (77.12.31.)	센 서 스
광 업	2,142	1,768(73.12.31)
제 조 업	91,861	84,325(73.12.31)
전기 gas 수도사 업	5	-
건 설	4,109	1,982(76.12.31)
도·소매및 음식숙박	606,164	528,497(76.12.31)
계	704,381	

라. 母集團確定

國稅庁 電算데이터內에 수록된 개인사업체 목록을 모집단으로 한다.

3. 조사방법

가. 당행 상주조사원 47명과 임시조사원 약 250명을 통한 面接式 他計主義 調査方法에 의한다.

나. 全數調査와 標本調査를 병행한다.

다. 全數調査部門과 標本調査部門

全數調査 및 標本調査業體

전 수 조 사		표 본 조 사	
업 종 부 문	사업체수	업 종 부 문	사업체수
2. 광 업 석 탄 금 속 광 업	442	2. 광 업 (기 타 광 업)	1,700
3. 제 조 업 ① 종업원규모 50 인 이상 (단, 섬유제 조업, 기타제조업 등은 종업원 100 人 이상)		3. 제 조 업 (전수조사부분을 제외한다)	90,608

전 수 조 사		표 본 조 사	
업 종 부 문	사업체수	업 종 부 문	사업체수
② 사업체와 수입액 30,000 천이상	1,253		
③ 기타 특수업종			
4. 전기가스및수도사업	5개		
5. 건 설 업		5. 건 설 업	4,109
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호텔, 관광호텔, 슈퍼마켓)	929	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05,235
계	2,629	계	701,652

4. 과거 國富統計調査 標本設計例

1968 년도 우리나라 국부통계조사시 개인기업 部門調査에서 採
 択했던 標本抽出方法과 1970 년도 日本의 國富統計調査方法을 概觀
 해 본후 금번에 採択코자 하는 標本設計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
 다.

가. 1968 년도 우리나라가 採択했던 Sampling 방법

1) 조사범위

개인기업형태의 全事業體

2) 조사방법

㉑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他計式 面接調査

㉒ 표본추출방법 : 層化二段集落抽出法

3) 모집단과약

Census 자료 국세청 사업체목록 정부산하기관, 협회

4) 층 화

산업분류별 층화 (32), 市道別層化 (11)

사업체수층화 (8)

事業体数層化의 基準

층 번호	층의분류번호	층 의 기 준
1 층	0 1	1 ~ 5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동·읍·면
2 층	0 2	6 ~ 9 " "
3 층	1 3	10 ~ 19 " "
4 층	1 4	20 ~ 49 " "
5 층	1 5	50 ~ 89 " "
6 층	1 6	90 ~ 199 " "
7 층	2 7	200 ~ 499 " "
8 층	2 8	500 ~ " "

5) 集 落

原則的으로 行政洞 邑面을 母集落으로 하여 여기서 제 1차 추출단위인 標本 洞·邑面을 선정하고 다시 제 2차 추출단위인 標本事業體를 선정하였다.

6) 標本抽出

(1) 第一次抽出單位

표본설계의 특성 xi ($i = 1, 2, \dots, 32$)의 각각에 대하여 独立的으로 만든 xi 를 갖는 洞, 邑面 集團層內 事業體數層에서 배정된 수만큼의 동·읍·면을 独立的으로 뽑고 Zerounit 층에 대하여는 표본을 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표본은 각 xi 에서 独立的으로 뽑은 標本洞·邑·面의 합이 된다.

(2) 二次抽出單位

標本洞·邑·面의 사업체조사에서 얻은 사업체명부를 다시 道別 事業體數層別로 정리한 다음 이틀 틀(fame)로하여 이 틀에서 배정된 표본사업체수만큼 임의로 추출하였다.

7) 推 定

전국총계

$$X' = \sum_{h=1}^{32} \sum_{i=1}^{11} \sum_{j=1}^8 \frac{Mhij}{mhij} \sum_k \frac{Nhi jk}{nhij k} \sum_e \times hijke$$

여기서

$Mhij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 층내 모집
락수

$mhi j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 층내 표본집락 수

$Nhi j k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층 k - 표본집락내의 사업체수

$nhi j k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층 k - 표본집락내의 표본사업체수

$Xhi j k e \dots \dots h$ - 중분류 i - 도 j - 사업체수층 k - 표본집락내의 표본사업체수 e - 표본사업체 특성치

8) 標本誤差

算出하지 않았음

나. 1970 년 日本의 國富統計調査 標本設計方案

個人企業部門을 크게 農林 水産業과 非農林 水産業으로 分類하여 별도 Sampling을 行하였는바 여기에서는 当行과 關聯이 있는 非農林 水産業의 Sampling 方法에 대해서만 그 概要를 要約한다.

1) 9 개 地域으로 層化

2) 調査区層化 및 P·S·U 선정

제조업 60 % 以上 (D_1) $\rightarrow \frac{1}{3}$
 “ 30 ~ 60 % (D_2) $\rightarrow \frac{1}{15}$
 “ 30 % 未滿 (D_3) $\rightarrow \frac{1}{100}$

※ 동정도는 여기에 다시 넣을 승함.

3) PSU 内 個人事業体区分

E : 鉱業 金融 不動産 운수 통신 1

E₂ : 건설 제조 도·소매 서비스 $\frac{1}{5}$

4) 추계方法 : ① 逆수를 單純擴大

② 모집단 지역별 제조업층별 (D₁, D₂, D₃) 산업
대분류별 (E₁, E₂)을 모집단으로 하고

③ 層内모집단수 $\frac{69 \text{ 년도사업 계수} + 72 \text{ 년}}{2}$

5) 標本誤差. 10 개 資産에 대해서만 標本誤差를 算出하였음.

5. 標本設計(案)

本標本設計案에서는 上記 略述한 諸与件과 1969 년도 우리나라
가 採択한 標本抽出方法을 参照하여 全數調査와 標本調査方法을 併
行 採択하여 鉱業, 製造業, 建設業, 都売業, 宿泊業에 대해서는
Stratified random Sampling 方法을 採하고 一般小売 및 飲食店
業에 대해서는 Stratified two stage cluster sampling 方法을
採하고 한다.

全數調査部門은 前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標本調査分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가. 기본조건

Sample Design 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事項은 대략 다음

과 같다.

- ① 全体調査対象業体数：約 12,000 개 以内
- ② 精度의 提高
- ③ 모집단 자료 利用의 容易度 및 그 信賴性
- ④ 結果報告書의 内容 및 集計能力所要時間
- ⑤ 作業의 單純化 (표본추출 推定의 차계산)
- ⑥ 特異한 資産의 추정

나. 製造業 標本設計 (案)

製造業 鉦業 建設業 都売業 宿泊業에 대한 標本抽出은 層化 單純任意抽出法에 따르고자 한다.

1) 層 化

産業細分類別 層化

11 개 市道別 層化

2) 標本數 決定

a. 標準産業分類別 標本數

全体 標本數 12,000 事業体中 全數調査業体 2,600 을 除外한 9,400 개를 다음과 같이 割当한다.

産業分類別 標本數

산업분류	표본수	추출율	1968년 우리나라	1970년 일본
광업	138	1 15	전수조사	
제조업	4,008	1 15	1 13	
일부		1 30		
건설업	272	1 15	전수조사	$\frac{1}{15} \sim \frac{1}{500}$
도매업	1,250	1 30	1 11	
숙박업	420	1 50	1 50	
일반소매	2,162	1 170	1 50	
음식점업	680	1 150		
계	8,930			

b. 地域別 標本數

一律的으로 事業體數에 比例하여 割當한다.

3) 標本事業體 確認調査

선정된 標本業體에 대해 従業員規模別分布를 調査하여 各種 Census 자료의 従業員規模別 指標를 参照하여 特定規模에 標本이 偏重되는가 여부를 調査한다. 동시에 有故与否 전화번호 標本으로서의 適合性 등도 調査하여 本調査가 円滑히 수행되도록 한다.

4) 推 定

가) 結 果 表

I. 全 國

(所有資産)

- ① 산업소분류, 자산소분류, 자산액 (Gross Net)
- ② 산업소분류, 자산항목, 종업원규모별 (Gross Net)
- ③ 산업소분류 자산의 취득년차 자산항목분류 (Gross Net)
- ④ 산업중분류 자기사용 대여 자산중분류 (Gross Net)
- ⑤ 산업소분류, 자산액규모별 유형 고정 자산액 및 채고 자산액 (Gross Net)

(使用資産)

- ⑥ 산업소분류, 자기소유, 임차 자산소분류별 유형 고정 자산액

II. 地 域

(所有資産)

- ⑦ 산업소분류 자산중분류 (Gross Net) 11 개 市道別

(使用資産)

- ⑧ 산업소분류 자기소유 임차자산중분류별 유형 고정 자산액 (Gross, Net)

나. 推 定

- 1) 推定은 層別로 다음 各 Code 中 結果表집계에 필요한 것

을 選定하여 推計한다.

2) 추계에 필요한 Code

層 Code (산업세분류 및 지역) 종업원규모 Code 사업체
추출형 (전수조사 표본조사區別) 확대승수 Code 자산분류 (6단위)
내용년수 Code 취득년도 물가배율 취득가격 상품가격 시가 자기
소유사용 대여 임차별 Code 新古의 区分 Code

3) 전체 자산액은 Ownership Base에 依해 推計하며 全國의
純資産額 (Net)와 總資産額 (Gross)은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1) 純資産額 (Net)

$$X_a^N = \sum_i \sum_0 x_{rij} \frac{N_i}{n_i} + A \frac{N}{a}$$

① X_a^N : a 라는 資産額 (資産小分類)의 全國 合計

② X_{aij} : i 층 j 번째 표본사업체의 a 라는 資産의 再調

達価額

$$X_{aij} = \sum_{\beta} X_{\beta ij} \cdot P_t^{\beta \rightarrow 77} r_{77}^L - t$$

$X_{\beta ij}$: i 층 j 번째 표본사업체의 β 라는 資産 (6 Code)

의 取得価額

$P_t^{\beta \rightarrow 77}$: β 라는 資産의 물가배율

t : 取扱年度

$r_{77}^L - t$: 耐用年數 L 年 取扱後 ($77 - t$)년 경과한 資

産의 잔가율

③ $\frac{N_i}{n_i}$: i 층의 확대승수

④ 新品 中古品区别없이 적용방법은 同一함.

⑤ A 는 全数調査分

ii) 總資産額 (Gross)

$$X_a^G = \sum_i \sum_j X_{aij} \frac{N_i}{n_i} + A_a^G \quad \text{但 } X_{aij}: \text{再取得価額}$$

a) 新品取得일때

$$X_{aij} = \sum_{\beta} X_{\beta ij} \cdot P_t^{\beta} \rightarrow \pi (X_{\beta ij}: i \text{ 층 } j \text{ 번째 표 본사업}$$

체의 β 라는 자산의 取得価額)

b) 中古品取得일때

$$X_{aij} = \sum_{\beta} X_{\beta ij} \cdot P_t^{\beta} \rightarrow \pi \times \frac{1}{0.3161}$$

다) 標本誤差

1) 자산小分類 및 전체자산액 총계에 대해서만 標本誤差를 計算해 보고자 한다.

2) 자기소유 자기사용자산만을 가지고 계산한다.

3) α 자산의 精度 (a)는 다음과 같다.

$$a_{\alpha}^G = \frac{\sqrt{\frac{1}{N^2} \sum_{i=1}^N N_i (N_i - n_i) \frac{\sigma_i^2}{n_i}}}{\frac{1}{N} \sum N_i \bar{X}_i}$$

$$\sigma_{\alpha}^2 = \frac{1}{n_i - 1} \sum_{j=1}^{n-i} (X_{ij} - \bar{X}_i)^2$$

$$X = \frac{\sum_{j=1}^n X_{ij}}{ni}$$

i : 層

다. 小壳業 및 飲食宿泊業標本設計案

1) 概 要

Stratified two stage cluster sampling 方法을 採하고
자 한다.

製造業과 同一하게 Stratified random sampling 을 하게 되면
精度面에서는 보다 眞實에 近사한 推定値를 求할 수 있겠으나 標
本事業체가 地域적으로 너무 広範圍하게 分散되어 実査管理가 어려
워지고 非標本誤差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小壳 및 飲食宿泊業에
대해서는 精度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Cluster sampling 方法을 採
하고자 한다.

다만 層化抽出法の 精度提高라는 長點과 集落抽出의 努力 費用
절감이라는 長點을 살리기 위해 일단 産業別(一般小壳業 飲食店業)
地域別(11개 行政市道), 事業체數別로 層化를 行한 다음 各各의
層內 洞 邑面을 母集落으로 하여 二段 集落抽出을 行하고자 한다.

2) 層 化

a) 産業別 層化(一般小壳業과 宿泊業)

b) 地域別 層化(11個市道)

c) 事業체數別 層化

사업체수 층화의 기준

1	층	1 ~ 5 개 사업체
2	층	6 ~ 9
3	층	10 ~ 19
4	층	20 ~ 49
5	층	50 ~ 99
6	층	100 ~ 199
7	층	200 ~ 299
8	층	300 ~ 499
9	층	500 이 상

3) Frame 作成

標本設計의 대상이 되는 産業分類를 X_i ($i = 1, 2$)라고 할때

i) 全國 洞·邑面을 洞·邑·面內 X_i 의 사업체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고

ii) 事業체가 있는 집단에 대하여 市·道別로 層化

iii) 다음 市·道 各各에 대하여 事業체數에 依한 層化作業을 한다.

iv) 이와 같은 作業을 $i = 1, 2$ 에 대해 各各 独立的으로

行하고

v) 層化作業이 끝난후 市・道別 事業体数 層別로 「第一次 抽出單位一覽表」를 作成하고 그에 따른 「總標本洞邑面 및 事業体数 現況表」를 作成한다.

4) 1차 추출을 및 2차 추출을은 다음 表에 따르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지방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크게 하였다.

抽 出 率 表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6 층	7 층	8 층	9 층
1 차추출율	$\frac{1}{8}$	$\frac{1}{8}$	$\frac{1}{10}$	$\frac{1}{10}$	$\frac{1}{10}$	$\frac{1}{15}$	$\frac{1}{10}$	$\frac{1}{7}$	$\frac{1}{4}$
2 차추출율	$\frac{1}{2}$	$\frac{1}{3}$	$\frac{1}{5}$	$\frac{1}{10}$	$\frac{1}{10}$	$\frac{1}{20}$	$\frac{1}{20}$	$\frac{1}{40}$	$\frac{1}{50}$

5) 標本事業体 確認調査

省略한다.

6) 推 定

가) 結果表

製造業과 同一

나) 推計에 必要한 Code

製造業과 同一하나 다만 層Code에 事業体数層이 追加됨

다) 全体 資産額은 Ownership Base에 의해 推計하며 純資

産額과 總資産額は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i) 純資産額 (Net)

$$X_{\alpha}^N = \sum_i \frac{Mi}{mi} \cdot \frac{mi}{nij} \sum_k X_{aijk} + A_{\alpha}^N$$

(1) X_{aijk} : i 층 j 번째 표본집락내 k 번째 표본사업체의

α 라는 資産의 再調査価額

$$X_{aijk} = \sum_{\beta} X_{\beta ijk} \cdot P_t^{\beta} \rightarrow \pi \cdot \gamma_{\pi}^L - t$$

(모든 기호 표시는 製造業과 同一함)

(2) $\frac{Mi}{mi}$: 제 2 차 확대승수

(3) $\frac{Nij}{nij}$: 제 1 차 확대승수

ii) 總資産額 (Gross)

$$X_{\alpha}^G = \sum_i \frac{Mi}{mi} \cdot \frac{mi}{j} \cdot \frac{Nij}{nij} \sum_k X_{aijk} + A_{\alpha}^G$$

(1) 新品取得 $X_{aijk} = \sum_{\beta} X_{\beta ijk} \cdot P_t^{\beta} \rightarrow \pi$

(2) 中古取得 $X_{aijk} = \sum_{\beta} X_{\beta ijk} \cdot P_t^{\beta} \rightarrow \pi \times \frac{1}{0.3161}$

iii) 기타는 제조업 추계방법과 同一함.

라) 標本誤差

① 資産小分類, Gross Net 별로 표본오차를 집계한다.

$$② V_x = \sum_i \frac{Mi (Mi - mi)}{mi} S_{1\cap}^2 + \sum_i \frac{Mi}{mi} \sum \frac{Nij^2}{nij}$$

$$\frac{N_{ij} - n_{ij}}{N_{ij}} S_{2ij}^2$$

$$S_{1i}^2 = \frac{\sum m_i (X_{aij} - \bar{X}_{ai})^2}{m_i - 1}$$

$$S_{2ij}^2 = \frac{\sum n_{ij} (X_{aijk} - \bar{X}_{aij})^2}{n_{ij} - 1}$$

$$X_{ai} = \frac{X_{ai}}{m_i}$$

$$X_{aij} = \frac{X_{aij}}{n_{ij}} \quad i \text{ 층 } j \text{ 번째 標本集落}$$

의 크기 n_{ij}

라. 参 考 表

① Multiple - Card layout Form

納稅番號 (10 자리)	주소 (45 자리)	성명 (13)
주민번호 (13)	주소지 Code (3)	교부년월일 (6)
영업장 (30)	상호 (30)	개업년월일 (6)
업태 코드 (2)	종목 Code (4)	Page (3)
File (3)	과 (2) 세무서 (3)	Filler ()

1 Record = 180 CH

② 集 落 및 標 本 事 業 体 数 表

층	일 반 소 매 업			음 식 점 업		
	모 집 략 수	표 본 집 략 수	표 본 수	모 집 략 수	표 본 집 략 수	표 본 수
1 層	33	13		199	29	
2 層	65	20		191	27	
3 層	128	24		302	34	
4 層	306	38		718	70	
5 層	424	46		610	63	
6 層	664	52		224	32	
7 層	332	42		13	7	
8 層	258	43		1	1	
9 層	63	17				
計	2,273	295		2,258	263	

③ 종업원규모 자산액규모 취득년차 내역표

종업원규모	자산액규모	취득년차
4인이하	500천미만	1950년 이전 1951 ~ 1961년
5인이상 ~ 9인이하	500 ~ 1,000천미만	1961 ~ 1966년 1967 ~ 1968년
10 ~ 19	1,000 ~ 3,000	1969년 1970년
20 ~ 49	3,000 ~ 5,000	1971년 1972년
50 ~ 99	5,000 ~ 10,000	1973년
100 ~ 199		1974년
200 ~ 299	10,000 ~ 30,000	1975년 1976년
300 ~ 499	30,000천원이상	1977년
500인이상		

(별첨 1-3)

個人企業部門 (非農林漁業) 標本設計 (案)

- 國民銀行 -

一. 모집단 파악

1. 모집단의 정의

국부통계조사 제 3 지부 개인기업자산부문의 모집단은 1977.

12.31.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 (비법인 단체포함) 에 한함.

2. 모집단에 관한 사정 정보 자료

당지부의 모집단 파악에 기초가 된 자료는

- 1) 국세청 MASTER FILE 에 의한 개인사업체 명부
- 2) 행정기관이나 협회 및 조합으로부터 얻은 자료임.

3. 모집단 파악 과정

- 1) 국세청 MASTER FILE 에 의한 개인사업체 명부 이용

가) 국세청 MASTER FILE 을 당행 전산부에서 TAPE TO TAPE COPY 에 의해 개인사업체 명부를 확보하고

나) 국세청의 소득 표준율표상의 업종 CODE 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산업소분류별 업종을 MATCH 시켜 업종별 CODE 를 확정하고

다) 전국의 11 개 시도별, 산업소분류별 모집단 사업체수 분포

를 파악하였음.

2) 행정기관이나 협회 및 조합으로부터 얻은 개인사업체 자료 이용

가) 산업 세세분류표상의 업종별 개인사업체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중앙 행정기관과 협회 및 조합을 방문하였음.

나) 여기서 얻은 자료에 의거 11개 시도별 행정기관과 협회 및 조합 명부를 작성하였음.

다) 작성된 명부에 의해 당부 직원이 전국 11개 시도 행정기관, 협회 및 조합을 방문하여 업종별 개인사업체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업종이 허가, 등록, 지역 특성등을 조사하였음

3) 각 자료 이용상의 문제점

국세청 자료와 행정기관 및 협회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산업소분류별 시도별 모집단 사업체수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완전한 모집단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

업 종	국세청 자료	행정기관및 협 회 자 료	비 고
세 택 업 부 동 산 임 대 업	파 악 가 능	파 악 불 가 능	국세청 자료이용
교육서비스업 부 동 산 중 개 업	파 악 불 가 능	파 악 가 능	행정기관및 협회자료이용
기 타 업 종	파 악 가 능	파 악 가 능	두 자료를 비교 채택

일례로 당부 직원이 충남 미용사협회에서 얻은 자료를 보면 도지부가 대전시 문화동 소재 미용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동내 12개 미용업소중 협회나 행정기관 및 관할 세무서에 등록 및 허가된 업소는 5개 업소뿐이며 나머지 7개는 무허가 업소였음.

이와 같이 당지부 해당사업체 중에는

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이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으며

나) 허가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음. 이런 업종들이, 당지부 모집단 파악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모집단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음.

이 상과 같이 상기 자료는 지역별 업종별 모집단 확장 및 표본사업체 추출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미흡할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종업원규모에 관한 정보 혹은 명부를 구할 수 없었음.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에 필요한 모집단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 조사구에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조사구내의 전사업체 명부를 작성하는 제2차 시험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표본조사구내 업종별 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하여 국세청의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수 분포와 지역별 표본조사구내의 업종별 사업체수 분포와의 비율에 의하여 전국의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수를 추정하는 한편 표본조사구내의 업종별 규모별 분

포 비율에 따라 전국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수를 추정기로 함.

二. 표본조사구내 사업체 전수조사

1. FRAME 작성

국세청의 전국 CODE 표에 의거 1,779 개의 조사구를 설정함
(표 1)

2. 조사구의 총화 및 표본조사구 추출

1) 조사구의 총화

조사구내의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조사구를 9 개로 총화하고
각층별로 조사구 명부를 작성함.

2) 표본조사구 추출

각층내의 조사구를 시도별로 정리한후 일련번호를 주어 각
층별로 부여한 추출율에 의거 203 개의 표본조사구를 계통추출함.
(표 2)

(표 1) 조사구의 층화 및 층별표본조사구수 현황

층번호	내 용	조 사 구 수	추 출율	표 본 조사구수
S_1	사업체기 없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층	111	1/10	9
S_2	1 - 5 개의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층	256	1/10	22
S_3	6-10	160	1/10	13
S_4	11-20	272	1/10	24
S_5	21-50	442	1/10	40
S_6	51-100	316	1/ 5	57
S_7	101-200	164	1/ 5	29
S_8	201-300	39	1/ 5	7
S_9	300 개 이상의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층	19	1/ 2	7
	계	1,779		208

단, 서울지역은 각층별로 1/2 배수하여 표본 조사구를 재조정함.

(표 2)

시·도별 표본 조사구 명부

시·도	표 본 조 사 구 명
서울	오곡동, 도곡동, 신교동, 신정동, 은수동, 정동, 누상동, 상수동, 양평동 2 가, 공평동, 영등포 1 가, 구파발동, 원남동, 신대방동, 홍제 1 동, 금호동 4 가, 신문로 2 가, 용산동, 상도 3 동, 방화동, 불광 1 동, 묵정동, 와룡동, 한남동, 남가좌 2 동, 송정동, 응암 1 동, 관철동, 정능동, 동소문동, 봉래동 2 가 (계 : 32 계)
부산	국제시장 5 공구, 광복동 3 가, 남포동 2 가, 국제시장 2 공구, 동광동 1 가, 토성동, 신선동 3 가, 사직동, 충무동 1 가, 조정동, 봉래동 3 가, 전포 3 동, 학장동, 우동, 광복동 2 가 감천 2 동, 범진동, 부암동, 수만동, 반송동, 괴정 1 동, 수정 2 동, 문현동, 동상동, 대인동, 부전 1 동 (계 : 26 개)
경기	인천시 : 공촌동, 관동, 송림 1 동, 익곡, 괴인동, 창영동, 경동, 송현 2 동, 심곡 1 동, 선화동, 송림 3 동, 해안동, 송의 2 동 수원시 : 평동, 파정동, 인계동 기 타 : 남면, 구리읍, 의정부 3 동, 안양 2 동, 송탄읍, 강화읍, 안성읍, 용인면, 김포읍 (계 : 24 개)
강원	춘천 : 소양로 2 가, 퇴계동, 소양로 1 가 속초 : 도문동, 영광동, 금호동

시·도

표 본 조 사 구 명

강 원

원주 : 개운동

강릉 : 옥천동, 남문동

기타 : 북평읍, 홍천읍, 방림면 (평창군)

(계 : 12 개)

충 북

청주 : 석고동, 탑동, 북문로 2 가, 남문로 2 가

충주 : 용산동, 성서동

기타 : 제천읍, 영동읍

(계 : 8 개)

충 남

대전 : 천동, 효동, 목동, 가정동, 오정동, 문창동, 괴정동, 대동, 안영동, 삼성동

기타 : 부여읍, 강경읍, 연무읍, 성거읍

(계 : 14 개)

전 북

전주 : 전미동, 서노송동, 금암동

군산 : 라운동, 개정동, 삼학동, 신흥동

이리 : 동산동, 포현동, 중앙동

기타 : 부안읍, 신태인읍, 김제읍, 남원읍

(계 : 14 개)

전 남

광주 : 삼소동, 유덕동, 남동, 구동, 서석동, 동운동, 신용동,

목포 : 무안동, 서산동, 용당동

시·도	표 본 조 사 구 명
전 남	여수 : 덕충동, 고소동, 중앙동, 관문동 순천 : 행금동, 장천동 기타 : 장성읍, 영광읍, 나주읍, 별고읍 (계 : 20 개)
경 북	대구 : 동변동, 조아동, 신선동 2구, 비신동 4구, 고성동 2, 3가, 봉산동 1구, 신임동 2구, 비산동 3구, 칠성동 1가, 태평로 3가, 남산동 2구, 침산동 2구, 대명동 3구, 대현동 2가, 대명동 6구 경주 : 성동동, 중앙동 포항 : 학산동, 대흥동, 재철동 김천 : 교동, 평화 2동 안동 : 명명륜동, 중구동 기타 : 풍기읍, 경산읍, 구미읍, 영천읍, 의성읍, 안심읍, 영주읍 (계 : 31 개)
경 남	마산 : 현동, 웅남 2동, 의창 2동, 중성동, 합성동, 여좌동 1가, 서성동 울산 : 일산동, 임포동, 옥교동 진주 : 향촌동, 봉래동, 대방동, 옥봉동 충무 : 태 평 동 기타 : 장승포읍, 삼랑진읍, 거제읍, 하동읍, 대저읍, 거창읍, 밀양읍 (계 22 개)

시·도	표 본 조 사 구 명
제 주	제주 : 1도동, 건입동 기타 : 대정읍, 서귀읍, 한림읍 (계 : 5개)

3. 모집단 사업체수의 추정

표본조사구를 전수 조사하여 시도별 업종별 층별 사업체수를 얻고 이에 의거 시도별 업종별 층별 모집단을 추정함.

$$\text{공식 : } M_{hij} = \frac{m_{hij}}{m_{hi}} M_{hi}$$

단 : M_{hij} = 시도별 업종별 층별 모집단 추정치

m_{hij} = 표본조사구 전수조사에 의한 시도별 업종별 층별 사업체수

m_{hi} = 국세청 자료에 의한 표본조사구의 시도별 업종별 층별 사업체수

M_{hi} = 국세청 자료에 의한 시도별 업종별 층별 모집단 수

h : 도 i : 업종 j : 층 (사업체수 규모)

4.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수의 추정

표본조사구내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에 의해 모집단의 업종별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를 추정함.

$$\text{공식 : } A_{ij} = \frac{m_{ij}}{m_i} \times A_i$$

단 : m_i = 표본조사구내 사업체수

m_{ij} = 표본조사구내 층별 사업체수

A_i =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A_{ij} = 업종별 층별 모집단 사업체수

i : 업종 j : 층 (종업원 규모)

三. 표본설계

1. 개요

표본추출의 방법은 조사구 및 표본조사구내 개인사업체를 각각 제1차 추출단위 및 제2차 추출단위로 하는 층화 2단 추출법 (STRATIFIED TWO-STAGE SAMPLING)에 따름

2.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대상업체의 구분

당지부의 조사는 표본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한다.

1) 사업체수가 적은 업종 (전국적으로 500개 이하)

(위생 및 유시 서어비스업, 기타 사회 서어비스업)

2) 육성운수업의 경우 비법인인 개인회사 형태의 택시나 화물 자동차업체 자산 규모는 차주 1인당 1대의 개인 택시에 비해 상당히 크므로 육성운수업 전체를 표본조사 한다면 많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 형태의 화물 자동차나 택시 업

체는 전수 조사한다.

3) 국세청 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4,000만원 이상인 업체

3. 총 화

1) 지역의 총화

개인사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다음의 11개 지역으로 분할함.

기 호	지 역	조 사 구 수	표본조사구수	비 고
D_1	서 울	497	32	
D_2	부 산	199	26	
D_3	경 기	186	24	
D_4	강 원	99	12	
D_5	충 북	57	8	
D_6	충 남	109	14	
D_7	전 북	86	14	
D_8	전 남	158	20	
D_9	경 북	203	31	
D_{10}	경 남	174	22	
D_{11}	제 주	11	5	
계		1,779	208	

2) 조사구의 층화

각 지역내의 조사구는 “국세청의 전국세무서동별코드”에 의거 설정된 조사구를 각 조사구내 소재한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9개의 층으로 구분함.

층 번호	내 용	조 사 구 수
S ₁	사업체가 없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층	111
	사업체 1 ~ 5 개 소재하고 있는 조사구로 이루어진 층	256
S ₂		
S ₃	사업체 6-10 개	160
S ₄	사업체 11 -20 개	272
S ₅	사업체 21 - 50 개	442
S ₆	사업체 51 -100 개	316
S ₇	사업체 101 -200 개	164
S ₈	사업체 201 -300 개	39
S ₉	사업체 300 개 이상	19
계		1,779

3) 조사구내 개인 사업체의 층화

표본조사구내 사업체의 시도별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을 작성한후 업종별로 층화한다.

4. 추출 단위와 틀

1) 추출단위

가) 1차 추출단위

조사구를 동·읍·면 단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지부의 편의상 국세청의 전국 세무서 동별 코드표에 의해 행정구역 단위 (동·읍·면)를 1차 추출단위로 함.

나) 2차 추출단위

1차 추출단위의 틀로부터 1차 표본 조사구를 추출한 후 표본조사구 내의 사업체를 2차 추출 단위로 함.

2) 틀

가) 1차 추출단위의 틀

국세청의 전국 세무서 동별 코드에 의한 전국 행정구역 명부를 1차 추출단위의 틀로 함.

나) 2차 추출단위의 틀

표본조사구의 업종별 사업체 명부를 2차 추출 단위의 틀로 함

5. 표본의 크기

당지부의 주어진 여건 (비용, 시간, 인원등)을 고려하여 표본사업체수를 약 12,000 개로 정하고 이를 시도별 업종별 규모별로 배정함.

6. 표본 추출

1) 제 1차 추출 단위의 추출

11개 시도별 업종별 사업체수 규모별로 2차 추출단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추출율을 주어 계통 추출함.

2) 제 2차 단위의 추출

표본 조사구의 사업체를 도별 업종별 일련번호를 주어 계통추출함.

추출 단위와 틀

	추출 단위	틀	추출방법
1차 추출단위 (표본조사구)	코드번호	전국세무서 동별 코드표	계통추출
2차 추출단위 (표본사업체)	사업체	표본으로 뽑힌 조사구내의 사업체명부	"

四. 추 계

자산액 추계는 소유자 주의에 의거 추계하며 자산액은 순자산액 (NET ASSETS) 총자산액 (GROSS ASSETS)의 2가지 개념으로 구분 추계함.

1. 전수조사 업종

$$\chi = \sum \chi_i \quad (\text{전수조사 대상 사업체의 자산액 합계})$$

단 i : 사업체수

2. 표본조사 업종

$$\chi = \sum_h \sum_i \sum_j \frac{M_{hij}}{m_{hij}} \sum \frac{N_{hijk}}{n_{hijk}} \sum n_{hijke}$$

단, h = 도

i = 업종

j = 층

k = 사업체수

e = 특성치

M_{hij} = 층내 조사구수

m_{hij} = 층내 표본 조사구

N_{hijk} = 표본조사구내 사업체수

n_{hijk} = 표본조사구내 표본사업체수

χ_{hijke} = 표본사업체의 자산액

3.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한 업종

$$\chi = \text{전수조사부문 자산액} + \text{표본조사부문 자산액}$$

五. 표본오차

$$\sigma = \sqrt{\sum_{hi j} [Mhi j (\frac{Mhi j}{mhi j} - 1) S_1^2 + \frac{Mhi j}{mhi j}$$

$$\sqrt{\sum_m Nhi jm (\frac{Nhi jm}{nhi jm} - 1) S_2^2}$$

$$S_1^2 = \frac{\sum_m (yhi jm - yhi j)^2}{mhi j - 1} \quad : 1 \text{ 차 추출단위 (표본조사구) 평균}$$

치값에 대한 분산

$$S_2^2 = \frac{\sum_{mk} (yhi jke - yhi jm)}{mhi j (nhi jk - 1)} \quad : 1 \text{ 차 추출단위내 요소들 (표본사}$$

업체) 분산

(별첨 3)

한 우 평 가

종류	출생년도		시 도				
	년령	출생년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1세	1977년생	205	178	205	192	207
	2세	1976 "	319	276	319	275	323
	3세	1975 "	412	347	412	386	397
	4세	1974 "	479	407	479	425	479
	5세	1973 "	526	448	526	461	526
	6세	1972 "	546	469	546	481	546
	7세	1971 "	534	481	534	477	546
	8세	1970 "	522	478	522	476	534
	9세	1969 "	511	452	511	452	513
	10세 이상	1968년 이전	488	447	488	446	498
	1세	1977	205	178	205	192	207
	2세	1976	415	363	415	369	401
	3세	1975	517	488	517	491	508
	4세	1974	587	556	587	528	582
	5세	1973	644	581	644	630	649
	6세	1972	637	595	637	555	672
	7세	1971	615	603	615	539	641
	8세	1970	609	594	609	538	625
	9세	1969	577	561	577	524	577
	10세 이상	1968년 이전	577	561	577	524	577

- 산출근거 : 1) 각 도 농수산물통계 출장소 (139 개) 에서 시군별
 2) 서울은 경기도 가격이며 부산은 경남 가격임.
 3) 1,000 단위에서 절상하였음.

기 준 표

(단위 : 천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7	125	176	200	178	170
322	277	308	307	276	264
412	378	367	397	347	337
479	434	409	443	407	392
526	464	445	470	448	431
546	456	452	488	469	447
548	475	451	494	481	447
534	464	439	491	478	437
513	447	421	475	452	420
498	434	407	470	447	407
207	185	176	200	178	170
419	356	371	290	363	343
506	461	438	489	488	417
571	507	491	542	556	500
619	544	543	587	581	610
645	555	553	594	595	678
641	539	539	576	603	659
631	501	539	587	594	659
577	514	472	564	561	677
527	473	472	564	561	677

우시장의 77년 12월중 가격임.

젓 소 . 고 기 소 . 말 평

종류	품 목 별		젓 소	고 기 소
	연령	출생 년도		
암 컷	1 세	1977 년생	321	342
	2	1976	760	511
	3	1975	951	695
	4	1974	1,057	807
	5	1973	1,060	804
	6	1972	1,017	759
	7	1971	941	734
	8	1970	854	710
	9	1969	791	679
	10 이상	1968년 이전	669	646
수 컷	1 세	1977 년생	191	458
	2	1976	443	655
	3	1975	535	807
	4	1974	586	897
	5	1973	616	894
	6	1972	641	881
	7	1971	626	866
	8	1970	612	837
	9	1969	563	804
	10 이상	1968년 이전	552	770

산출근기 : (1) 젓소 . 고기소 . 가격은 77.12 월 중
 (2) 경주용 말은 "한국마사회"에서 제
 (3) 사역용 말은 제주도에서 조사한
 (4) 1,000 단위에서 절상하였음.

개기준표

(단위 : 선원)

말		
경주용 말	나역용 말	
773	30	
1,253	59	
1,814	72	
1,019	90	
573	104	
322	110	
181	105	
102	102	
100	89	
100	79	
(암숫구별없이 가격숨)		
	36	
	71	
	88	
	119	
	139	
	155	
	159	
	145	
	129	
	119	

평균가격임.

공한 가격임

77. 12 월중 가격임.

기 타 동 물

품목 연령별	배 출 지			토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0 개월미만	10개월이상	6 개월미만
전국평균가격	23,375	58,095	103,814	1,268
품목 연령별	염 소		젖 산 양	
	10 개월미만	10 개월이상	10 개월미만	10 개월이상
전국평균가격	18,089	31,257	25,995	49,650

- 산출근기 : (1) 각도 농축산 통계출장소 (139) 에서
 (2) 각도 가격의 차이가 없고 면양, 젖산양은
 많아 전국 평균가격을 산출하였음.

평 가 기 준 표

원

끼		육		산 란 용 닭	
6 개월이상	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 903	1, 307	2, 031	1, 525	2, 312	
면		양		집 오 리	
10 개월미만	10 개월이상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21, 683	59, 117	1, 307	2, 031		

군별 가축시장의 77 년 12 월중 가격임.

특정지역에만 사육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 형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육성년차별	종 류 품 종 적 용 범 위 육 성 년 수	사	과	배	포	도	감	복	승	아	살구. 자두.	앵두	뽕 나 무 (낮 추 베 기)	뽕 나 무 (중 간 베 기)	뽕 나 무 (높 이 베 기)	호	프	감	귤	밤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10	9	5	8	7	6	3	4	4											3	4	10							
제 1 년	111,404	101,141	134,667	49,405	71,067	41,903	131,804	111,518	101,471	459,844	105,490	36,669																		
2	257,443	205,605	214,671	93,637	135,083	79,157	214,429	194,143	184,096	864,255	197,490	65,638																		
3	358,533	305,650	298,048	134,132	204,031	114,425	298,860	278,574	268,527	1,279,549	291,280	93,468																		
4	560,890	433,981	409,032	193,164	295,382	168,009		360,761	350,714		388,650	122,839																		
5	690,476	560,468	515,414	253,767	291,908	220,531					492,010	153,201																		
6	944,608	725,209		333,271	403,861	286,813					600,700	183,687																		
7	1,111,853	868,737		409,884	520,892						714,340	214,173																		
8	1,301,498	1,050,575		494,570							836,730	244,659																		
9	1,482,542	1,229,351										275,145																		
10	1,667,205											305,631																		
10 a 당 주 수	50	25	130	33	33	33	740	347	154	300	33	40																		
주 당 면 적 (10 a)	0.20	0.40	0.077	0.3	0.3	0.30	0.013	0.929	0.065	0.01	0.30	0.25																		
내용년수	25	20	10	3.5	12	15	15	15	15	20	35	25																		
정 율	11.3	14.0	25.9	18.2	22.1	18.1	18.1	18.1	18.1	14.0	18.2	11.3																		
육성년수	1,667,205	1,229,351	515,414	494,570	520,892	286,813	298,860	360,761	350,714	1,279,549	836,730	305,631																		
1	1,478,978	1,058,348	381,973	454,015	405,827	234,900	244,766	295,463	287,235	1,101,564	768,118	271,125																		
2	1,311,924	911,072	283,117	416,774	316,181	192,365	200,445	241,962	235,224	948,274	705,112	240,501																		
3	1,163,709	784,326	209,825	382,550	246,330	157,546	164,164	198,166	192,647	816,352	647,211	213,330																		
4	1,032,333	675,283	155,500	351,194	191,897	129,008	134,427	162,270	157,751	702,856	594,162	189,247																		
5	915,796	581,360	115,247	322,361	149,496	105,662	110,100	132,904	129,203	605,099	545,381	167,883																		
6	812,429	500,469	85,404	295,951	116,471	86,531	90,166	108,842	105,810	520,904	500,699	148,934																		
7	720,566	430,888	63,293	271,667	90,739	70,871	73,848	89,144	86,661	448,482	459,616	132,094																		
8	639,206	370,895	46,903	249,362	70,685	58,051	60,489	73,018	70,985	386,040	421,879	117,179																		
9	567,016	319,262	34,790	228,936	55,058	47,525	49,521	59,778	58,113	332,299	387,322	103,945																		
10	502,996	274,883	25,771	210,143	42,922	38,921	40,555	48,955	47,592	286,107	355,527	92,209																		
11	446,144	236,650	19,122	192,882	33,441	31,894	33,233	40,117	38,999	246,313	326,325	81,787																		
12	395,794	203,703	14,174	177,056	26,045	26,100	27,196	32,829	31,915	212,021	299,549	72,557																		
13	351,113	175,428	10,514	162,565	20,315	21,368	22,265	26,877	26,128	182,592	275,033	64,366																		
14	311,434	150,964	7,783	149,212	15,783	17,524	18,260	22,042	21,429	157,129	252,441	57,092																		
15	276,256	129,942	5,773	136,996	12,293	14,341	14,943	18,038	17,536	135,248	231,774	50,643																		
16	245,079	111,871		125,720	9,584	11,731	12,223	14,755	14,344	116,439	212,697	44,928																		
17	217,404	96,381		115,433	7,501	9,608	10,012	12,085	11,749	100,317	195,293	39,854																		
18	192,896	82,981		105,937	5,834	7,887	8,219	9,921	9,645	86,370	179,228	35,362																		
19	171,055	71,425		97,282		6,453	6,724	8,117	7,891	74,342	164,585	31,358																		
20	151,716	61,468		89,270		5,277	5,499	6,630	6,453	63,977	151,030	27,812																		
21	134,543	52,862		81,950		4,331	4,513	5,447	5,296	55,021	138,646	24,664																		
22	119,372	45,609		75,224		3,556	3,706	4,473	4,349	47,471	127,267	21,883																		
23	105,868	39,216		69,042		2,897	3,018	3,644	3,542	40,818	116,808	19,408																		
24	94,030	33,807		63,404						35,188	107,269	17,238																		
25	83,360	29,013		58,211						30,197	98,483	15,282																		
26	74,024	25,079		53,414						26,103	90,367	13,570																		
27	65,521	21,514		49,061						22,392	83,004	12,011																		
28	58,185	18,563		45,006						19,321	76,142	10,667																		
29	51,683	15,982		41,346						16,634	69,951	9,475																		
30	45,848	13,769		37,934						14,331	64,177	8,405																		
31	40,680			34,818							58,906	7,457																		
32	36,012			31,949							54,053	6,602																		
33	32,010			29,328							49,618	5,868																		
34	28,342			26,954							45,602	5,196																		
35	25,175			24,729							41,837	4,615																		
36	22,341			22,701							38,406																			
37				20,821							35,226																			
38				19,140							32,381																			
39				17,557							29,754																			
40				16,123							27,277																			

〈 별첨 4 〉 物価倍率表 및 建物評価基準表 作成方法 (案)

I. 物価倍率表 作成方法

1. 算式

가. 第1回 国富統計調査時에 扞한 原価倍率表에 依하여 物価倍率을 구함.

나. 原価倍率 算式

$$TTot = \frac{\sum_{i=1}^n Wio \cdot pio}{\sum_{i=1}^n Wit \cdot pit}$$

TTot	:	原価倍率
Wio	:	取価年度の 原価要素 構成比
Wit	:	取得年度
Pio	:	評価年度の 原価要素 価格
Pit	:	取得年度

2. 作成過程

- (1) 物価倍率 部門의 設定
- (2) 物価倍率部門에 對한 原価要素 構成部門의 設定 및 構成比의 算出
- (3) 物価倍率部門別 原価要素 価格指數 算出

(4) 物価倍率部門別 原価要素 構成比와 原価要素 価格指數를 곱하여 物価倍率의 算出

가. 物価倍率部門 設定

(1) 物価倍率部門은 大體로 1968 年度와 類似하게 設定하였으나 機械 및 裝置部門은 1968 年度の 1 個部門에서 27 個部門으로 大幅 細分함.

나. 原価要素部門 設定 및 構成比의 算出

(1) 原価要素部門 設定

ㄱ) 物価倍率部門의 原価要素部門數는 1975 年 産業聯関表의 60 個 統合部門을 参酌하여 23 個部門(1968 年の 경우 10 個部門)으로 拡大 設定함.

ㄴ) 附加価値는 被傭者 報酬와 其他의 附加価値로 区分 設定함.

(2) 原価要素 構成比 算出

ㄱ) 物価倍率部門을 1975 年 産業聯関表의 基本部門(部門數 392 個) 과 連結시킴

ㄴ) 原価要素의 投入構成比는 1975 年 産業聯関表의 「購買者價格評價表」를 利用하여 算出함.

ㄷ) 物価倍率部門과 連結시킬 産業聯関表의 基本部門이 없는 一部 構築物部門의 投入構成比는 物価倍率部門이 投入의 一部로 包含되어 있는 各 基本部門의 投入 構成比를 調整하여 算出함.

ㄹ) 機械 및 裝置部門의 投入構成比는 標本業體의 設備別

構成比를 調査하여 上記 方法에 따라 算出함.

다. 投入部門別 價格指數 算出

(1) 附加價值 以外의 投入部門 價格指數는 韓國銀行의 「全國 都売物價格指數」資料를 利用하여 다음과 같이 算出함.

ㄱ) 物價倍率 部門別 23 個 投入部門을 1975 年 産業聯 関表의 164 個 統合部門으로 細分하여 都売物價調査 対象品目과 連結시킴.

ㄴ) 164 個 統合部門中 都売物價格指數의 中分類 및 細分類 指數와 直接 連結이 되는 部門은 該當 指數를 그대로 使用하며, 直接 連結이 되지 않는 部門은 品目別 價格指數를 利用하여 算出 함.

ㄷ) 物價倍率部門別 附加價值以外의 投入部門 價格指數는 以 上과 같이 하여 算出된 164 個 統合部門 價格指數를 1975 年 産業聯関表의 164 個 統合部門別 生産額 構成比를 求한 後 該當 部門에 加重 平均하여 算出함.

(2) 被傭者 報酬部門의 價格指數는 다음과 같이 算出함.

ㄱ) 機械 및 裝置部門에 對하여는 勞働庁의 「鉦工業 常傭 從業員 平均 賃金水準」을 指數化하여 該當部門別로 利用함.

ㄴ) 機械 및 裝置部門以外의 其他部門에 對하여는 韓國銀行 의 GNP 推計 基礎資料를 利用함.

(3) 其他 附加價值部門의 價格指數는 GNP Deflator 資料를 利用하여 算出함.

라. 物価倍率의 算出

(1) 物価倍率部門別로 以上の 投入構成比와 価格指數를 곱하여 1968 - 1977 年間の 物価倍率表를 作成함.

(2) 1918 - 1968 年間の 物価倍率表는 1968 年度에 既作成된 1968 年 物価倍率을 1977 年度 基準으로 算出한 後 接續하여 作成함.

3. 1968 年度 物価倍率表와의 比較

가. 物価倍率部門

資 産 分 類	物 価 倍 率 部 門	
	1968 年 度	1977 年 度
建 物	1. 住 居 用 鉄 骨 造	1. 住 居 用 鉄筋「콘크리트」造
	2. " 煉瓦 石 造	2. " 煉瓦 石 造
	3. " 木 造	3. " 木 造
	4. " 農 家	4. " 其 他
	5. " 其 他	
	6. 非住居用 鉄 骨 造	5. 非住居用 鉄筋「콘크리트」造
	7. " 煉瓦 石 造	6. " 煉瓦 石 造
	8. " 木 造	7. " 木 造
	9. " 其 他	8. " 其 他
		9. 建物附属設備

⑦ 機械및 同製品 ⑧ 電力 ⑨ 勞賃 ⑩ 其他

2. 1977 年度 原価要素 構成部門

① 林産物 ② 石炭 ③ 非金属鉱石 ④ 製材및 合板 ⑤ 無機基礎化学製品 ⑥ 合成樹脂, 合成고무및 化学纖維 ⑦ 其他化学製品 (塗料및 火薬類等) ⑧ 石油製品 ⑨ 고무製品 ⑩ 非金属鉱物製品 ⑪ 製鉄및 製鋼 ⑫ 鉄鋼一次製品 ⑬ 非鉄金屬塊및 同一次製品 ⑭ 金屬製品 ⑮ 一般機械 ⑯ 電氣機械 ⑰ 電子및 通信機械 ⑱ 輸送用機械 ⑲ 精密機械및 光学機械 ⑳ 電力및 都市「개스」 ㉑ 被傭者報酬 ㉒ 其他附加価値 ㉓ 其他

Ⅱ. 建物評價基準表 作成方法

1. 建物の 分類

建物は 1975 年度 産業聯関表의 部門分類에 따라 構造및 用途別로 72 個 種類로 分類함.

2. 1977 年度 建物の 坪当價格 算出

1977 年度의 建物の 坪当價格은 1975 年 産業聯関表 作成의 基礎資料로 使用하기 위하여 算出한 1975 年度 建築坪当 工事費 ($\frac{\text{總工事費}}{\text{建築延面積}}$) 에 1975 ~ 1977 年間の 物価倍率을 곱하여 算出함.

資 産 分 類	物 価 倍 率 部 門	
	1968 年 度	1977 年 年
車 輛 及 運 搬 具	21. 軌道車輛 22. 自動車 23. 其 他	24. 軌道車輛 25. 自動車 26. 其 他
工 具 及 器 具	24. 工具，器具及備品	27. 工 具 28. 器具及備品
機 械 及 装 置	25. 機械及裝置	29. 農業狩獵業及林業 30. 漁 業 31. 石炭鉦業 32. 其他 鉦業 33. 飲食料品 製造業 34. 담 배 35. 纖維衣服 및 가죽産業 36. 나무 및 나무製品製造業 37. 종이 및 종이製品 38. 印刷出版 및 關聯産業 39. 産業用化学物 및 其他化学製品 製造業 40. 石油 및 石炭製品製造業 41. 고무製品 42. 비금속 광물제품

資産分類	物 価 倍 率 部 門	
	1968 年 度	1977 年 度
機 械 및 裝 置		43. 제 1 차 금속산업 44. 組立金屬製品및機械製造業 45. 電氣機械器具製造業 46. 運輸裝備 47. 精密器機 48. 其 他 49. 電氣「개스」및水道事業 50. 建設業 51. 都小売및飲食宿泊業 52. 運輸및倉庫業 53. 通信業 54. 金融，保險，不動産및用役業 55. 社会，個人「서어비스」業 및其他

4. 原価要素 構成部門

1. 1968 年度 原価要素 構成部門

- ① 非金屬鉱物 ② 製材및同製品 ③ 化学製品 ④ 石炭鉱物
및 石油，石炭製品 ⑤ 窯業및土石製品 ⑥ 金属및同製品

資 產 分 類	物 價 倍 率 部 門	
	1968 年 度	1977 年 度
構 築 物	10. 軌道施設 11. 橋梁施設 12. 「터널」 13. 発電施設 14. 送配電施設 15. 業務用 電気施設 16. 鉄骨造水利, 治水 및 給排水 施設 17. 其 他 18. 其 他 構築物	10. 鐵道 및 軌道施設 11. 橋梁施設 12. 「터널」 13. 発電施設 14. 送配電施設 15. 業務用 電気施設 16. 鉄筋「콘크리트」造水利 治水 및 給排水施設 17. 其 他 18. 放送通信施設 19. 競技場, 学校遊園地用 및 庭 園施設 20. 其他鉄筋「콘크리트」造 施設 21. 鉄筋「콘크리트」造 以外 의 其他施設
船 舶	19. 鋼 船 20 木 船	22. 鋼 船 23. 木造 및 其他船舶

3. 1977 年度建物坪当基準価格表

用途別	構造別	鉄筋 「콘크리트」造	煉瓦石造	木 造	其 他
1. 单独住宅					
2. 共同住宅					
3. 産業住居兼用住宅					
4. 事務所					
5. 店 舗					
6. 市 場					
7. 工場作業場					
8. 倉 庫					
9. 車 庫					
10. 旅館, 宿泊所					
11. 沐浴場					
12. 劇場, 映画館					
13. 料理, 飲食店					
14. 公務用建築					
15. 文教用建築					
16. 医療用建築					
17. 宗教用建築					
18. 其他産業用建築					

- 註 1) 鉄筋 「콘크리트」造는 鉄筋「콘크리트」造, 鉄骨鉄筋「콘크리트」造, 鉄骨造를 包含함
- 2) 煉瓦石造는 煉瓦造, 石造, 「블럭」造를 包含함.
- 3) 木造, 木骨, 木骨「물탈」造, 簡易木造, 簡易木骨, 木骨「물탈」造를 包含함.
- 4) 其他는 土壁造를 包含함.

〈 제 6 3 차 〉

1978. 6. 1

1. 각종 평가기준표 검토

78. 6. 9 개최 예정인 국부통계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아래와 같은 안건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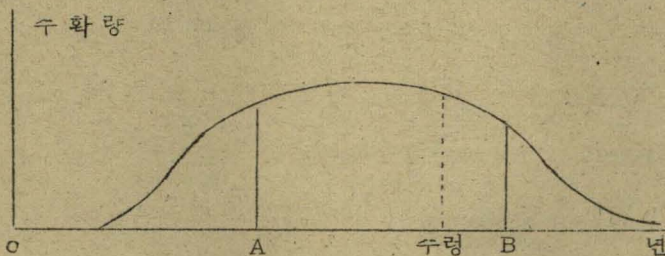
가. 잔가율표(안)

원안과 같이 상정하기로 함 (별첨 1 참조)

나. 대동식물 평가기준표(안) (별첨 2 참조)

(1) 식물 평가기준표

용어정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 도표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음.



OA = 육성년수 (재고자산)

AB = 내용년수 (유형고정자산)

수령 - 육성년수 = 경과년수

(2) 동물 평가기준표

원안과 같이 상정하기로 함.

다. 개인기업부문 표본 설계(안)

원안과 같이 상정하기로 하였음. (별첨 3 참조)

단, 국민은행의 전수조사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중소기업은행과 통일하여 수입금액 4,000 만원이상 사업체(약 400 개)를 수입금액 3,000 만원 이상 사업체(약 700 개)로 수정하였음.

라. 물가배율표 및 전물평가기준표

한국은행에서 동 평가기준표의 작성지침을 6. 2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상정하기로 하였음.

2. 기타 사항

가. 각부문별로 본조사부터 사후조사까지의 세부업무 추진 일정을 6. 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기로 하였음.

나. 제 5차 책임자 회의결과에 따라 7. 11 부터 시작되는 법인, 개인기업부문의 본 조사를 위하여 제 2차 제몹선전의 일환으로 철도열차 (92 개)에서 방송할 방송문(안)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각각 작성하여 6. 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첨부 ; 1. 잔가율표요약(안)

2.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요약(안)

3.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 요약(안)

〈 별첨 1 〉 잔가율표 개요

1.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잔가율표는 1977년 국부통제조사의 집계사무용으로 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보통의 유형고정자산의 제조달 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잔가율을 책정한 것임.

2. 잔가율의 산출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년수별 상가율을 적용하여 다음 공식에 의거 경과년수별로 잔가율을 계산하고 소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r = (1 - d)^n$$

r : 잔가율

d : 상가율

n : 경과년수

3. 내용년수 2년이상 60년까지의 잔존율을 경과년수별로 계산하였으며 잔가의 한도는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부터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2배에 도달할 때의 잔가율을 1%로 하였음.

4. 잔가율표를 이용하여 잔존가액을 산출할 경우에는 다음공식을 적용하면 됨.

$$S = C \cdot r$$

S : 잔존가액

C : 취득가액

$r = (1 - d)^n$: 잔가율

〈 별첨 2 〉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개요

1. 요약

농업용 동물 및 식물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유형고정자산처럼 취득가격과 물가배율을 이용하여 평가액을 산출할 수 없음.

그러므로 동물 및 식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취득가격(시가)을 평가액으로 하며 정확한 재취득가격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대동식물 평가기준표를 이용하여 평가함.

2. 평가기준표 작성방법

가. 식물평가기준표

(1) 원예시험장, 잠업시험장, 산림청, 임업시험장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성원(成園)까지 육성년수별 육성가액을 작성하였음.

(2) 식물자산의 잔가한도는 성원시부터 경과년수가 내육년수에 도달한 때의 잔가율을 성원육성가의 5%로 하고 다음공식에 의거 잔존가액을 산출 하였음.

$$S = C \cdot \gamma$$

S : 잔존가액

C : 육성가액

γ : 잔가율 $= (1 - d)^n$

d : 상각율

나. 동물 평가기준표

1977년 12월중 전국 139개 시, 읍, 면의 5일장날
(각 6회)에 형성된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3. 평가기준표 이용 방법

가.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분

(1) 유형고정자산

㉠ 식물자산 : 성원된 식물

㉡ 동물자산

○ 역용우(농우), 젖소 암컷, 종마 : 2세이상

○ 종돈, 유산양(암컷), 면양 : 10개월이상

○ 산란용닭 : 6개월 이상

(2) 재고자산

미성숙 동식물 및 고기용 가축

단. ① 1년이하의 육성으로 수확 또는 수확하는 동식물은
제외

② 닭은 부화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외

나. 식물자산 평가방법

(1) 수령(樹令) 이 육성년수이하인 경우는 해당 육성년수
년의 가격을 평가액으로 함.

(2) 수령이 육성년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공식에 의거
경과년수를 산출하여 해당결과 년수년의 가격을 평가액으로함.

$$\text{수령} - \text{육성년수} = \text{경과년수}$$

(3) 식물자산 평가기준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에 대하여는 시가로 평가함.

다. 동물자산 평가방법

(1) 동물의 종류, 연령등과 조사표에 기재된 소재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적용표준액을 결정함.

(2) 연령이 평가기준에 기재된 연령을 초과할 때에는 최고 연령의 수치를 적용함.

(3) 동물평가기준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에 대하여는 시가로 평가함.

4. 68년도 기준표와의 비교

	1977년도 기 준 표	1968년도 기 준 표	비 고
1. 식물자산평가기준표			
가. 종 류	14 종	12 종	제외 : 홍다, 자연 교목뽕나무 추가 : 밤, 살구, 자두, 앵두
나. 육성년수			영농기술의 발달로
b 감 굴	8 년	11년	• 육성년수의 단축
, 호 프	3 년	2년	(감굴, 뽕나무)
c 높이배기뽕나무	4 년	5년	o 생산량의증대 (호 프)

	1977년도 기 준 표	1968년도 기 준 표	비 고
다. 내용년수 경과후의 잔 가울	5 %	10 %	○ 내용년수 경과 후면 잡목에 준함. ○ 일본의 경우 동일
라. 내용년수 (호프)	20년	8 년	68년 도 기준 표가 착오
마. 10 a 당 주수			
● 사 과	50	12	○ 영농기술의 발달
○ 감 귤	33	100	○ 재배법의 변경
○ 배	25	24	○ 품종의 개량
○ 감	33	36	
○ 복숭아	33	24	
○ 포 도	130	50	
○ 호 프	300	360	
○ 뽕나무 (낮추)	740	720	
○ " (중간)	347	450	
● " (높이)	154	310	
2. 동물자산평가기준표			
가. 종 류	12 종	8 종	추가 : 고기소, 말, 육제, 면양

	1977년도 기 준 표	1968년도 기 준 표	비 고
나. 연형별 가격	전품종에적용.	한우, 유우 돼지에만 적용	○ 유형고정 자산과 재고자산의 명 확한분류가 가 능 ○ 시가에 접근
다. 암수의 구분	한우, 젖소, 고기소 사 육용말	한 우	
라. 지역(시, 도) 별가 격	한우, 암수 별에만적용	전품종에 적용	○ 중동물의 경우 지역별 가격차 가극소 ○ 젖소, 말, 면양, 젖산양등은일부 특정지역에서 주로사육

〈 별첨 3 〉 개인기업부문조사의

표 본 설 계 개 요

1. 기본조건

가. 주어진 예산규모내에서 최대의 정도를 얻도록 하였으며

나. 예산, 작업량, 조사원의 자질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구를 설정 하였으며,

다. 결과표를 도별, 산업소분류별, 자산액 규모별등 제표원칙에 따라 제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표본조사대상 범위

가. 개인기업 전부문

단. 대규모사업체와 사업체수가 극소한 업종등은 전수조사 함.

나. 전수조사 대상부문

업종	전수조사부문	담당기관
1) 농림어업	① 다음규모 이상의 사업체 ○ 소 40 두 ○ 닭 3,000 수 ○ 돼지 100 두 ○ 과수 3 ha ○ 잠업 2 ha ② 양송이 재배 사업체 ③ 임업사업체 ④ 총톤수 80 톤이상 어선 보유사업체 및 내수면 사업체	농수산부
2) 광업	석탄 및 금속광업 사업체	중 소
3) 제조업	① 종업원규모 50 인이상 사업체 (단, 섬유 및 기타제조업은 100 인이상) ② 수입금액 3 천만원 이상 ③ 사업체가 극소한업종	기업은행

3. 표본 추출법

업종	표본추출법	담당기관
1) 농업및 어업	층화 3 단 추출법 (재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농업 및 어업경영자 가구추출)	농수산부
2) 광, 제조, 건 설도매, 숙박 업	층화단순임의 추출법 (산업세분류별, 시도별층화)	중 소 기업은행
3) 소매, 음식점 업	층화 2 단 집락추출법 (산업별, 시도별, 사업체수별 층화) (각층의 읍면동을 모집락으로 표본지역 추출)	
4)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용역사회 및개인서비스 업	층화 2 단추출법(재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 사업체 추출) (산업소분류별, 시도별, 사업체수변층화)	국민은행

업종	전수조사부문	담당기관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전부	중소 기업은행
5) 건설업	-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호텔, 슈퍼마켓	
7) 운수창고 및 통 선업	① 육상운수업(개인택시제외)사업체 ② 수입금액 3천만원이상 사업체 수입금액 3천만원이상 사업체	국민은행
8) 금융, 보험, 부 동산및용역업	① 사업체가 극소한 업종	
9) 사회및개인 서비스업	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사회 서비스업 ② 수입금액 4천만원이상 사업체	

〈제 6 4 차〉

1978. 6. 16

1. 물가배율표 작성(안) 검토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물가배율표 작성지침(안)을 검토하고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자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가. 물가배율표 작성부문 50 개 부문중 기계 및 장치부문의 46. 전기개스 수도사업 및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설비, 47. 운수, 금융 서어비스업 부문 설비에 있어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설비, 금융서어비스업 설비자산은 극소할 뿐만아니라 설비성질이 상이하므로 이를 전기개스 수도사업 운수설비: 부문에서 분리하도록 하였음.

나. 투입 구성부문이 68 년도 10 개에 비하여 50 개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나 곡물, 공예작물등이 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비하므로 이를 기타 투입 부문으로 통합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자료처리상 문제점 검토

가. 자산분류에서 114 (구축물의 기타시설) 152 (공구기구 및 비품의 기구 및 비품)의 세목자산이 9 개를 초과하여 자산 분류 번호 6 자리 수만으로는 자료 처리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산분류 번호를 수정 통일하기로 하였음.

115101 → 114 × 01

153001 → 152 × 01

115102 → 114 × 02

153002 → 152 × 02

115201 → 114 Y 01

153101 → 152 Y 01

나. 결과표 작성시 각지부에서 조사본부에 제출할 자료가 수록된 tape 는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지부별로 기본표 2 - 3 개를 작성하여 error check 를 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조사본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부문별 결과표와 종합편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3. 자문위원 및 지부장 공동실사지도 확인

제 8 차 지부장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 및 개인 기업부문 본조사시에 실사상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조사 결과 분석시 참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과 지부장 공동 현지 출장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동 소요 경비는 각 지부별로 분담하기로 하고 각지부(은행)에서 분담할 자문위원 명단(1 - 2명)을 6. 17 까지 조사본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음.

가. 일 시 : 7월중순(5 - 7일간)

나. 장 소 : 추후 결정

다. 인 원 : 조사통제국 국장급 4명, 자문위원 7명,
각지부장 5명(조사통제국 제외)

(16 명을 4 개조로 편성)

4. 2차 계몽선전

가. 92개 열차에서 방송할 문안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작성하여 6. 17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음.

나. 각지부 건물 전면에 1차 계몽선전시 부착한 현수막을 7. 1 - 7. 30 기간동안 재설치 하기로 하였음.

〈제 6 5 차〉

1978. 6. 22

1. 2 차 계몽선전

2 차 계몽선전 계획의 일환으로 철도열차(92 개)에서 방송할 문안을 별첨과 같이 작성 하였음. (별첨참조)

2. 자문위원 및 조사부장 합동 출장 계획

64 차 본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출장계획에 따라 국부통계자문위원이 요청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으며 해당지부에서는 본 조사의 추진상황, 담당부문에 대한 자문내용등을 동기간동안의 자문위원 및 조사지부장의 세부일정 계획을 세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3.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물가배율표 및 건물평가기준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 7 차 자문위원회를 6. 20 경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동 기준표의 시산표 작성이 늦어져 7 월초에 개최하기로 각지부에서는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동 기준표를 이용하기로 하였음.

첨부 ; 철도 열차 방송문안

〈별첨〉 방 송 문 (안)

정부에서는 현재 1977 년말을 기준으로 국부통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국부통제조사는 경제기획원이 주관하고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참여하게 되며, 국부통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의 총량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직접 이용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 국부통제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나라 살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6 6 차〉

1978. 7. 4

1. 법인 및 개인 기업부문의 조사표 및 요령서 검토

78. 7. 11 부터 실시하는 법인 및 개인기업(농림어업부문 제외) 부문의 인쇄된 조사표와 요령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가. 종업원 규모

종업원에는 상용, 임시 및 가족종사자가 있으며 종업원 규모별 분류는 전 종업원수에 의함.

나. 대동식물 평가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대동식물 평가기준표는 주요동식물에 한하였으므로 기타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는 실사때 평가액을 직접 조사함.

다. 1917 년 이전 취득자산

물가배율표가 1918 년부터 1977 년 60 년간의 물가변동만 산출되었으므로 1917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물가배율 적용이 곤란함.

이때 그 자산이 건물의 경우 재평가 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하던가 재평가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건물평가 기준표의 가격을 재취득 가격으로 하고, 경과년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여 재조달 가격을 산출함.

또한 건물의 (구축물등)의 경우 재평가된 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함. (재평가 되지 않은 품목은 사실상 전무함)

2. 기타사항

가. 자문위원 및 지부장 합동회의 (78. 7. 6 개최 예정) 시 각 지부에서는 대리 참석을 피하고, 각지부별로 자문위원 및 지부장 합동출장에 따른 일정표를 7. 6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나. 국부통제 본조사가 끝나는 78. 8 월말까지 각 조사지부에서는 국부통제를 위한 각종 유인물을 정리하여 1 질씩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 제 67 차 〉

1978. 7. 19

1. 건물평가 기준표 이용

한국은행 김 수 기 조사역이 작성한 건물평가 기준표(별첨)를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이용토록 하였음.

가. 건물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법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취득시기, 취득가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동 기준표를 이용하여 건물 자산을 평가하기로 함(가계부문 제외)

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방법, 이용범위를 명시하기로 함.

다. 가계부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 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구조별 분류를 세분하는 문제는 필요한 경우 자체내에서 세분하여 건물자산을 평가하기로 함.

2. Editing 요령서 작성

실사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각지부별로 Editing 요령서를 작성 조사본부에서 이를 종합하여 조사표 심사때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음. (78. 8. 17 경 검토후 종합예정)

첨부: 건물평가기준표

〈 별첨 〉

1. 建物 評價 基準表

단위 : 원

用途別		構造別 鉄筋 「콘크리트」 造	煉瓦石造	木 造	其 他
住居用	单独 住宅	203,058	155,995	153,031	153,031
	共同 住宅	194,654	147,442	153,031	153,031
	産業住居兼 用 住 宅	175,229	143,503	137,186	137,186
	旅館宿泊所	234,469	183,043	173,224	173,224
	事 務 所	197,629	138,138	127,487	126,107
	店 舖	180,298	130,088	112,536	111,693
	非 市 場	148,538	112,855	103,508	102,388
	工場作業場	160,007	113,564	95,849	94,811
	居 倉 庫	143,928	99,577	87,368	86,422
	用 車 庫	138,850	89,681	80,307	79,437
	沐 浴 場	184,545	153,119	148,663	147,053
	劇場映画館	223,903	164,710	167,825	166,008
	料理飲食店	221,019	165,789	173,271	171,395
	公務用建築	205,174	151,907	142,098	140,560
	文教用建築	203,846	125,574	116,537	115,275
	医療用建築	244,609	171,724	148,642	147,033

用途別	構造別	鉄筋 「콘크리트」造	煉瓦石造	木造	其他
宗教用建築		170,148	139,590	134,780	133,320
其他 産業用建築		163,547	147,674	134,557	133,100

(1) 鉄筋「콘크리트」造는 鉄筋「콘크리트」造, 鉄骨鉄筋「콘크리트」造, 鉄骨造를 包含함.

(2) 煉瓦石造는 煉瓦造, 石造, 「블럭」造를 包含함.

(3) 木造는 木造, 木骨, 木骨「물탈」造, 簡易木造, 簡易木骨, 木骨「물탈」造를 包含함.

(4) 其他는 土壁造를 包含함.

(資産分類表上의) 对比表 (建物評價基準表上의)

細	目	構造 및 用途
1	一般住宅	单独住宅
2	「아파트」用建物	共同住宅
3	簡易木造 또는 簡易木骨, 木骨「골 달」造	单独住宅
4	觀光「호텔」	旅館, 宿泊所
5	旅館	旅館, 宿泊所
6	一般「호텔」	旅館, 宿泊所
7	料理店	料理 飲食店
8	寄宿舍및 이와類似한 合宿所	共同住宅
9	事務所	事務所
10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店舖
11	貸席	劇場 映画館
12	劇場	劇場 映画館
13	映画館	劇場 映画館
14	舞蹈場	劇場 映画館
15	病院	医療用 建築
16	学校	文教用 建築
17	體育場	文教用 建築
18	映画製作用「스테이지」	劇場 映画館

細	目	構 造 및 用 途
19	室内「스케이트」場	文教用 建築
20	漁市場 및 車庫用建物	市 場
21	變電所	工場 作業場
22	發電所	工場 作業場
23	工場	工場 作業場
24	倉庫	倉庫
25	停車場 및 車庫用建物	車庫
26	劇藥 化工藥品등을 使用하는工場 으로서 腐蝕하기 쉬운 建物	工場 作業場
27	倉庫事業의 倉庫用建物	倉庫
28	其他	其他産業用 建築
29	公衆沐浴湯用 建物	沐浴場

〈제 68 차〉

1978. 8. 3

1. 국부통제 잠정추계 결과 작성방법 강구

국부통제조사표 집계과정의 오류 발견이 용이하고 부문별 자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조사담당기관별로 조사표 회수가 끝나는대로 조사 항목중 시가, 재평가액의 집계 또는 전조사표중 일부(표본)집계등에 의한 잠정추계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2. Editing Programe 작성

각지부별 조사표 실사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동일한 기준하에 조정하기 위하여 각지부별로 보정 작업 기준을 설정하고 본 실무자회의에서 이를 검토 종합하여 각지부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3. 79 년도 국부통제조사 예산

각지부별로 79 년도 국부통제 자료처리 및 보고서 발간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조사본부에서 관계기관(재무부)에 협조요청하기로 하였음.

4. 기 타 사 항

가. 제 2 차 계몽선전(78. 7. 1 - 7. 31)에 따른 경비를

조속히 조사본부에 납부토록 촉구 하였음.

나. 각지부에서는 7월분 업무 추진 실적을 기간내(8.7
까지)에 송부 하도록 강조 하였음.

< 제 69 차 >

1978. 8. 24

1. 잠정추계

국부통계조사 결과의 수준측정, 조사자료 집계에서의 Editing 작업에 활용을 위한 잠정추계 방법은 아래와 같이 2 가지로 대별됨. 따라서 이를 각각 작성 서로 비교 검토 하기로 하였음.

가. 간접자료를 이용 잠정추계하는 방법

한국은행에서 간접자료 (68 년도 국부통계결과, 연도별 국민소득추계 자료등)를 이용하여 간접 추계 하기로 하였음.

나. 조사표를 이용 잠정추계 하는 방법

각 기관별로 조사표를 이용 잠정추계하는 방법 및 작성 가능한 기간은 아래와 같음.

따라서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추계방법 및 기간을 결정 하기로 하였음.

(1) 집계방법 및 기간

담당기관	집계방법	기간
한국은행	취득원가법에 의한 수집 방법	78. 12
한국산업은행	"	79. 3

담당기관	집계방법	기간
농수산부	시가에 의한 수집 방법	78. 9
	취득원가법에 의한 기계집계방법	79. 3
중소기업은행	시가에 의한 수집 방법	78. 12
"	취득원가법에 의한 기계집계방법	79. 3
국민은행	"	79. 3

(2) 수집제와 기계집계의 장단점

수집제 : 장점 - 작은 error 도 발견할 수 있음.

단점 - 자료처리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

기계집계 : 장점 -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음.

단점 - 현저한 error 이외에는 포착하기 어려

음.

2. 심사요령서 작성

각부문의 통일된 기준하에 조사표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조사 담당기관별로 부문별 심사요령서(안)를 9. 5까지 (한국산업은행 9. 16까지) 작성 본 실무자회의에서 이를 검토 종합하여 9. 21부터 각 부문별로 이용 하기로 하였음.

3. 기타사항

가. 자산 분류표 중 기계장치 부문은 표준산업소분류(제조

업 경우) 별로 세분되어 있으나 356 (기타 프라스틱 제조업)업
종은 누락되어 있어 타업종의 유사한 기계장치로 분류하기가 어려
움. 따라서 자산분류표 작성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이를 검토후
통일하여 분류하기로 하였음.

나. 자산분류표의 소분류 번호와 자산분류번호가 아래와 같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나 현서점에서 이
를 조정하는 문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료 처리할 때 이문제를
감안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음.

예) 기계및장치 (12)	→	소분류	자산분류번호
		290	122401
			122402

다. 각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산처리 요원이 Programme
업무를 통일된 기준하에 수행할수 있도록 각기관별 전산처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라. 해방전에 취득한 건물자산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건물 평가기준표를 이용 역산하여 취득가격을 파악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마.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물가배율표를 조속히 각기관에 배부
하여 동 기준표를 이용하기로 하였음.

바. 제 70 차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개최

- (1) 일 자 : 1978. 8. 25
- (2) 장 소 : 조사통제국 회의실
- (3) 안 건 : 잠정추제방안

< 제 70 차 >

1978. 8. 25

1. 잠정추계

제 69 차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국부통계 잠정추계에 대한 작업 일정은 각기관별로 실정에 따라 79. 3 월까지 작성완료 하기로 하였음.

단. 이외는 별도로 한국은행은 자료가 허용되는 범위하에서 간접자료를 이용하여 78. 10 월까지 잠정추계(안)을 작성 본 실무자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2.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

가. 토지 및 산림자산에 대한 평가는 업무의 방대성, 난이성, 기존자료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담당기관인 농수산부, 산림청, 한국산업은행만으로는 동 자산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실무자회의에서 지침을 작성 각 담당기관에 종합지침을 시달하기로 하였음.

나. 본 실무자 요원은 각지부의 책임사급이므로 부문별조사표 심사요령 기준설정, 결과표 양식 확정등을 시급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토지 및 산림자산추계를 위한 종합지침은 본실무자회의를 10 월초부터 연속회의를 개최 작성하기로 하였음

3. 결과표 작성

각부문별 결과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각기관별로 분류표의 종류 보고서의 부피 결과표의 합리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안을 작성 내주중에 개최예정인 실무자회의 부터 검토 조정하기로 하였음.

4. 기타 사항

가. 개인기업부문의 보고서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기업부문 담당기관인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간에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다음 사항을 확정시행하기 위하여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1) 78. 8. 20 까지의 추진사항 보고

(2) 잠정집계

(3) 심사요령 기준성 및 결과표 완성

(4)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 지침 설정을 위한 국부통제 실무요원 동원

< 제 71 차 >

1978. 8. 31

1. 지부장회의 안건 검토

68 - 70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결과에 따라 조사본부에
서 작성한 아래와 같은 지부장회의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별첨과
같이 일부 수정 보완하여 9월초에 개최 예정인 지부장회의에 상
정 하기로 하였음. (별첨 참조)

가. 1977 년 국부통계조사 추진현황 보고

나. 1977 년 국부통계 잠정집계

다. 조사표 심사요령서 작성 및 결과표 양식 보완

라.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지침 설정을 위한 국부통계 실무
요원 활용

2. 결과표 양식 보완

제 61 차 통계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는 결과표 양식을 각
부문별로 기재집계 작업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78. 9. 4 에 개최예정인 본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첨부 ; 지부장회의 자료

(별첨) 지 부 장 회 의 안 건

I. 1977 년 국 부 통계 조 사 추 진 현 황 보 고

1. 추진현황

(별첨참조)

2. 본조사 실시현황(78. 8. 31 현재)

부 문	조 사 대 상	조사기간	추진실적 (조사표 회수율)	비 고
1. 정부부문	보관청 단위이상 1,215 기관 전수	78. 6 - 78. 7	99%	78. 9. 10까지 완 료예정
2. 법인부문	18539 법인 전수	78. 7. - 78. 8	96%	"
3. 개인기업부문				
가. 농림어업	11572 표본사업체	78. 7. - 78. 8	100%	시도별검토중
나. 광, 제조도 소매업	11600 표본사업체	"	95%	78. 9. 10까지 완료예정(벽지 조사표미회수)
다. 운수, 금융 기타서비스업	10039 표본사업체	"	99%	"
4. 가계부문	10,500표본가구	78. 3 - 78. 4	100%	보완조사 및 사 후조사완료

부 문	조 사 대 상	조 사 기 간	추진실적 (조사표 회수율)	비 고
5. 대외순자산	기존자료이용추제	78.7 - 78.12		준비작업진행중
6. 토지및 산림	1) 기존자료이용추제 2) 필요사표본조사병 행	78.4 - 78.7		1) 기본제 획수 림 2) 78.10월 부 터 평가지침 작성

3. 부문별 문제점 및 해결방법

부 문	문 제 점	해 결 방 법
1. 정부부문	보안상 이유로 조사가 곤란한 기관 발생	경제기획원 한국은행과 관제기관이 협 의중
2. 법인부문	불응사업체 발생 (서울의 경우 36 개법인)	전국에 걸쳐 전불응사업체 명단이 밝혀 진후 관제행정기관을 거쳐 협조요청예정
3. 개인기업 부문	1950 년이전자산(주구 건물)의 정확한 취득 가격조사가 곤란	조사표 심사과정에서 건물평가 기준표 를 이용하여 검토 또는 역제산으로 보완
4. 가계 부문	-	-
5. 대외순자산	-	-
6. 토지및산 림	법인및개인기업부문본조 사실시로요원투입곤란	법인및 개인기업부문 조사표 접수 및 심사요령 확정후 요원(각지부실무자) 활용으로 평가지침서 작성예정(78.10월중)

I. 1977 년 국부통계 잠정 집계

1. 목 적 (필요성)

가. 국부통계조사 결과의 수준측정

나. 조사자료 집계 과정에서의 Editing 작업에 활용

2. 기존자료에 의한 간접추계

가. 담당기관

한국은행 조사제 2 부

나. 추계방법

기존자료 (1969 년 국부통계 조사결과, 년도별 GNP 자료, 각종 서스 자료등) 를 이용하여 1977 년 국부총액 추정

다. 작업기간

1978. 9. 1 - 11. 30 (3 개월간)

2. 조사표에 의한 간접집계

가. 담당기관

조사담당기관에서 집계하여 조사본부에서 취합

나. 집계방법

(1) 취득가격에 의한 수집계 또는 기계집계

(2) 표본조사의 경우 단순불편 추정법 적용

다. 분 류

(1) 부문분류 : 소유주체별 분류 (7 부문)

○ 일반정부

- 정부기업
- 정부관리 기업
- 법인
- 개인기업 및 비법인 단체
- 일반가구
- 대외순자산

(2)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3) 자산분류 : 유형고정자산은 중분류, 재고자산은 대부류

라. 결과표

(1) 부문별, 자산별 순자산액

(2) 기업부문 업종별 자산별 순자산액

(3) 기업부문 업종별 자본 계수

마. 부문별 집계방법 및 작업기간

부 문	집 제 방 법	작 업 기 간
(1). 정부부문	취득가격에 의한 수집제 취득가격에 의한 기계집제	79. 3월 말까 지
(2). 법인부문	"	"
(3) 개인기업부문	취득가격에 의한 기계집제	"
(4) 가계부문	"	"
(5) 대외순자산	기존자료에 의한 추제	78. 12 "

Ⅱ. 조사표 심사요령서 작성 및 결과표 양식보완

1. 조사표 심사요령서 작성

가. 목 적

각부문간의 통일된 심사기준 적용

나. 추진일정

(1) 각조사담당기관별로 부문별 심사요령서(안)작성(78. 9. 10 까지)

(2) 국부통계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후 종합심사 요령서 작성(78. 9. 20 까지)

(3) 종합심사요령서를 각부문에 공동이용(78. 9. 21 부터)

2. 결과표 양식 보완

가. 목 적

확정된 결과표 양식에 따라 기계집계 준비작업을 조속히 수행토록 하고자함.

나. 경 위

(1) 각부문별 결과표 양식(시안)을 국부통계 실무자회의에서 검토

(2) 지부장회의(78. 4. 7)에서 검토

(3) 제 61 차 통계위원회(78. 4. 20)에서 심의

다. 추진일정

(1)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및 자료 처리 실무자회의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수정, 보완 (78. 9. 20 까지)

(2) 부문별 프로그램 작성에 이용 (78. 9. 21 부터)

3. 조사표 심사요령서 작성 및 결과도 양식보완작업방법

가. 조사본부 요원인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및 자료처리 실무자회의 구성요원이 본 작업에 직접 참여토록 하며 필요시 매일 연속회의를 개최함.

나. 실무자회의에서 최종 주장된 사항은 본 지부장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함.

Ⅳ.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지침설정을

위한 국부통계 실무요원 활용

1.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 일정

가. 기본계획 수립 (78. 5. 1)

나. 기초자료 수집 (78. 5 - 78. 9)

다. 평가지침서 작성 (78. 9 - 78. 10)

라. 기존자료 보완 (78. 11 - 79. 4)

마. 평가작업 (79. 5 - 79. 7)

바. 분석 (79. 8)

2. 준비현황

가. 기본계획 수립

(1) 작업기간 : 78. 4 - 79. 8 (17 개월간)

(2) 평가대상 : 토지자산 및 산림자산

(3) 작업기관

○ 조사통제국 : 총괄 (전부문 종합)

○ 농수산부 :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 포함)

○ 산림청 : 산림 (임야지 포함)

○ 한국산업은행 : 농경지, 임야지를 제외한 전토지

(4) 결과공표 : 1977 년 국부통제조사 종합편에 수록 공표

나. 기존자료 수집

(1) 일본의 토지자산 추계방법

(2) 지적통제 (내무부)

(3) 토지등급별 가격통제 (내무부)

(4) 지가조사 결과 (감정원)

(5) 지가조사 결과 (농협중앙회)

(6) 정부 및 법인부문 장부상 토지가액조사

(7) 농업기본통계 (농수산부)

(8)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등

3. 추계지침 설정

가. 필요성

(1) 본 추계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임.

(2) 4 개 기간이 분담하여 추계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계획

(1) 78. 9 월부터 본 추계지침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1977년 국부통계조사 본 조사관계로 각자부 실무요원의 동원이 불가능하므로

(2) 각부문별 심사요령서 및 결과표 양식이 확정(78. 9. 20)된 후 집중적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3) 따라서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한 실무자회의(국부통계 실무요원 전원 포함)를 78. 10. 4 부터 연속 개최하여 본 작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1977 年 国富統計 調査推進現況

事業内容	日程	推進現況
1. 調査準備		
1) 調査計劃樹立	~ 77. 8	①部門別 基本計劃 確立 (77, 6. 29) ②一部補完 (78. 1. 26)
2) 綜合指針書作成	~ 77. 8	①調査및 評價指針書 確立 (77. 8. 31) ②一部補完 (78. 1. 26)
3) 人員및 豫算確保	~77. 12	6 個調査担当 機關이 ①人員 51 名 ②豫算 4 億 5 千萬원 確保
4) 各国의 資料蒐集 및 研究	77. 9~77. 12	2 次에 걸쳐 先進各国의 現況을 把握하여 다음事項遂行 ①基本計劃및 綜合指針補完 ②資本係數에 關한 研究 ③国民貸借对照表作成研究
5) 調査対象처把握	77. 9~78. 3	各種 서스資料, 行政資料, 稅務資料等을 利用하여 対象事業體把握

事業內容	日程	推進現況
		①政府部門：約 16,000 機關 ②法人部門：約 20,000 法人 ③個人部門：約 300 萬事業體 (250 萬農林・漁業・經營者家包含) ④家計部門：約 750 萬家口
6) 試驗調查實施	77. 11~78. 2	部門別로 各 2 回에 걸쳐實施
7) 各種樣式作成	77. 10~78. 6	①部門別調查票類樣式確定 (78. 4. 20) 施行 ②部門別結果表類樣式 最終案作成 (78. 4. 20)
8) 各種基準表作成	77. 12~78. 6	다음基準表를 作成하여 利用中 ①資産分類및 耐用年數表 (78. 1. 26) ②殘價率表 (78. 6. 9) ③大動植物評價基準表 (78. 6. 9) ④物價倍率表 (78. 7. 6) ⑤建物評價基準表 (78. 7. 6)
9) 標本設計	78. 2 ~78. 5	個人企業部門의 標本抽出作業完了 (78. 6. 9) 後本調查實施

事業内容	日程	推進現況
10) 弘報実施		①調査担当機関長 共同名義로 公告및 記事化 (77. 12. 19~12. 30) ②1次弘報: 総理談話文発表. 実施公告. TV 放送対談. 街頭 宣伝 (서울) 記事化 (78. 3) ③2次弘報: 鉄道放送. 街頭宣伝 (全国) (78. 7)
2. 部門別調査実施		
1) 家計部門	78. 3 ~ 78. 7	10,500 標本家口調査 ①本調査 (78. 3. 11~4. 10)完了 ②補完調査 (78. 5. 7~6. 17) ③事後調査 (78. 6. 29~7. 20)
2) 政府部門	78. 6 ~ 78. 10	国有財産. 保管庁以上 1,215 個機関全数調査 ①本調査 (78. 6. 1 ~ 8. 31)進行中 ②補完調査 (78. 9. 1~9. 30) ③事後調査 (78. 10. 1~10. 31)
3) 法人部門	78. 7 ~ 78. 12	約 20,000 法人 全数調査 ①本調査 (78. 7. 11~8. 31)進行中 ②補完調査 (78. 10. ~ 78. 11)

事業內容	日程	推進現況
4) 個人企業部門	78. 7 ~78. 10	③事後調査(78. 12) 約4萬標本事業體調査 ①本調査(78. 7. 11~8. 31) 進行中 ②補完調査(78. 9. 1~9. 30) ③事後調査(78. 9 ~78. 10)
5) 對外純資産	78. 7 ~78. 12	既存資料에 依한間接推計 ①準備(78. 7~78. 9)進行中 ②計算作業(78. 10~78. 12)
6) 土地및 山林資産	78. 4 ~79. 8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農水産部 山林庁. 韓國産業銀行이 다음作業 遂行 ①基本計劃樹立(78. 5. 1) ②既存資料蒐集(78. 5~78. 9) 進行中 ③評價指針書作成(78. 9~78. 10) ④既存資料補完(78. 11~79. 4) ⑤評價作業(79. 5 ~79. 7) ⑥分 析(79. 8)

事業内容	日程	推進現況
3. 資料処理		
1) 基本計劃樹立	78. 4 ~ 78. 5	①部門別資料処理日程確定 (78. 4. 7) ②部門別 Tape を一括管理 (調査統計局)
2) 暫定集計	78. 9 ~ 79. 3	①既存資料에 依한間接推計 (78. 9 ~ 78. 11) ②調査票에 依한 暫定集計 (78. 9 ~ 79. 3)
3) 部門別調査票検討	78. 5 ~ 79. 3	部門別 接受된 調査票検討中
4) 部門別 Tape 収録 및 審査	78. 9 ~ 79. 6	
5) 部門別製表	79. 2 ~ 79. 7	
4. 分析 및 報告書発刊		
1) 部門別 分析	79. 4 ~ 79. 9	
2) 部門別報告書発刊	79. 7 ~ 79. 11	
3) 綜合結果報告書 発刊	79. 11 ~ 79. 12	

(제 72 차)

1. 제 61 차 통계위원회 (78.11.20) 의 심의를 거친 국부통계 결과
표 양식 최종안중 한국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보완
한 정부부문 결과표 양식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별첨
참조)

	77 한 국	68 한 국	70 일 본	비 고
1. 총 면 수	270	269	159	
2. 통 계 표	130	134	64	
	(48)	(49)	(40)	
3. 본 문	70	65	28	
	(26)	(25)	(17)	
4. 부 속 자 료	70	70	67	
	(26)	(26)	(43)	

가.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자산 분류별 정부자산액 (1-1,2)
- 자산분류별 소유주체별 정부자산액 및 구성비 (6-1,2 7-1,2)
- 자산분류별 회계별 정부자산액 (8-1,2)
- 자산분류별 신품, 중고품별 정부 유형고정 자산액 (16-1,2)
- 자산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균내용년수와 평균 경과년수
(20-1,2)

- 자산분류별 산업소분류별 정부자산평가액 (29-1,2)

나. 수정 및 보완사항

- 자산분류별 관리기관별 정부 자산액 및 구성비 (2-1,2 3-1,2)

중앙정부 자산에 정부 기업자산을 포함시키고 별도로 공공단체 자산도 포함하여 정부부문 전체 자산 결과표를 작성함. 따라서 제독도 자산분류별 관리기관별 자산액 및 구성비로 수정함.

- 자산분류별 재산종류별 정부 자산액 (4-1,2)

- 자산분류별 재산종류별 정부자산 구성비 (5-1,2)

물품자산은 재산 종류별인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등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물품자산 항목을 삭제함.

- 자산분류별 취득년도별 정부 유형고정자산액 및 구성비 (9-1,2 10-1,2)

일부 사회간접자본 및 물품자산은 77년말 현재의 자산을 평가하므로 취득년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따라서 분류불능 항목에 동 자산을 포함하기로 하고 주를 달기로 함,

- 자산항목별 소재지역별 정부자산액 및 구성비 (11-1,2 12-1,2)

분류불능 자산항목은 삭제하기로 하고 해외자산은 관리기관 소재지 자산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 자산분류별 자기 소유 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 (17-1,2)

- 자산별 자기사용 대여별 유형고정자산액 (18-1,2)

동 결과표 내용에 따라 제독을 ①자산분류별, 자기사용자산(소

유자산(사용, 대여)별 정부기업의 자산액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소득창출과 무관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자본계수산출, 종합편 결과표 작성시 반영시키기 위하여 정부기업에 한하여 사용자주의에 입각한 업종별 유형고정자산액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소득지역별 소유주체별 유형고정 자산액(19-1, 2)

사회간접자본 항목을 공공단체 항목으로 대체함. 따라서 제목도 소재지역별 관리주체별 유형고정자산액으로 수정함.

- 자산분류별, 국공립학교, 종류별 자산액 및 구성비(24-1, 2 25-1, 2)

공민학교, 기술학교를 기타에 포함하¹ 삭제함.

다. 삭제사항

- 자산분류별, 정부부처별 정부자산액(13-1, 2)
- 자산분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부자산액 및 구성비(14-1, 2 15-1, 2)

이표는 일본의 예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도에 비하여 별도의 표로 독립시킬 가치가 적음.

- 사회간접자본 구성비(21)
- 도별도로평가액(22)
- 도로 종류별 평가액(23)

이유 : 사회간접자본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순자산액 산출방법도 fifty percent method를 적용하므로 원래의

Net 평가방법과는 거리가 있음.

- 자산분류별 정부자산 구조의 변화 (26-1, 2)
- 재산 종류별 정부자산 구조의 변화 (27-1, 2)
- 소재 지역별 정부자산 구조의 변화 (28-1, 2)

이유 : 분석편에 게재하기로 함.

- 자산항목별 공공단체 자산액 (30-1, 2)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9개 공공단체 자산을 전 공공체 자산으로 간주하기에는 곤란함.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9개 공공단체 자산을 한국산업은행에 이관하여 비영리 법인에 포함시켜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하였음.

첨부 : 정부부문 결과표 (안)

(별첨)

정부자산부문결과표(안)

1. 자산분류별 자산액 및 구성비
2. 자산분류별 관리기관별 자산액
3. 자산분류별 관리기관별 자산구성비
4. 자산분류별 자산종류별 정부자산액
5. 자산분류별 자산종류별 정부자산구성비
6. 자산분류별 소유주체별 정부자산액
7. 자산분류별 소유주체별 정부자산구성비
8. 자산분류별 회계별 정부자산액
9. 자산분류별 취득년도별 정부유형고정자산액
10. 자산분류별 취득년도별 정부자산구성비
11. 자산분류별 소재지역별 정부자산액
12. 자산분류별 소재지역별 정부자산구성비
13. 자산분류별 신품, 중고품별 정부유형고정자산액
14. 자산분류별 정부기업의 유형고정자산액(사용자산)
15. 자산분류별 정부기업의 유형고정자산액(소유자산)
16. 소재지역별 관리주체별 유형고정자산액
17. 자산분류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균내용년수와 평균경년수
18. 자산분류별 산업종류별 자산액
19. 자산분류별 국·공립학교 종류별 자산액
20. 자산분류별 국·공립학교 종류별 자산구성비

<표 1-1> 자산분류별 자산액
1-2

총 액	자 산 액	대분류별구 성비(%)
A. 유형 고정 자산		
1. 건 물		
11 주거용 건물		
12 비주거용 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 축 물		
21 교 통 시 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급수시설		
24 기 타 시 설		
3. 기 계 및 장 치		
4. 선 박		
41 강 선		
42 목 선		
43 기 타 선 박		
5. 차 량 운 반 구		
51 궤 도 차 량		
52 자 동 차		
53 항 공 기		
54 기타차량운반구		
6. 공구기구및비품		
61 공 구		
62 기구및비품		
7. 건 설 가 계 정		
8. 대 동 식 물		
81 동 물		
82 식 물		
B. 재 고 자 산		

주: 29개 공공단체 자산포함 (00 페이지 포함)

및 구성비 (종자산액)
(순자산액)

(단위:)

중분류별 구성비 (%)	소분류별 구성비 (%)

$\begin{matrix} 2 \\ < \text{표} \end{matrix} - \begin{matrix} 1 \\ 2 \end{matrix} >$ 자산분류별 관리기관별
 $\begin{matrix} 2 \\ 3 \\ < \text{표} \end{matrix} - \begin{matrix} 2 \\ 2 \\ 3 \end{matrix} >$ 자산분류별 관리기관별

	합 계	중 앙 정	
		소 계	일반정부
총 액			
A. 유 형 고 정 자 산			
1. 건 물			
11 주 거 용 건 물			
12 비 주 거 용 건 물			
13 건 물 부 속 설 비			
2. 구 축 물			
21 교 통 시 설			
22 발전 및 송 배 전 시 설			
23 수 리 및 급 수 시 설			
24 기 타 시 설			
3. 기 계 및 장 치			
4. 선 박			
41 강 선			
42 목 선			
43 기 타 선 박			
5. 차 량 운 반 구			
51 궤 도 차 량			
52 자 동 차			
53 항 공 기			
54 기 타 차 량 운 반 구			

< 표 4-1 > 자산분류별 자산종류별

< 표 5-1 > 자산분류별 자산종류별

	합 계	중 앙 정 부				
		행 정 재 산				보존재산
		소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총 액						
A. 유형고정 자산						
1. 건물						
11. 주거용 건물						
12. 비주거용 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 급수시설						
24. 기타 시설						
3. 기계 및 장치						
4. 선박						
41. 강선						
42. 목선						
43. 기타 선박						
5. 차량운반구						
51. 궤도 차량						
52. 자동차						
53. 항공기						
54. 기타 차량운반구						
6. 공구기구 및 비품						

< 표 6-1 > 자산분류별 소유주체별

< 표 7-1 > 자산분류별 소유주체별

	합	중 앙 정 부
총 액		
A. 유 형 고 정 자 산		
1. 건 물		
11. 주 거 용 건 물		
12. 비 주 거 용 건 물		
13. 건 물 부 속 설 비		
2. 구 축 물		
21. 교 통 시 설		
22. 발 전 및 송 배 전 시 설		
23. 수 리 및 급 수 시 설		
24. 기 타 시 설		
3. 기 계 및 장 치		
4. 선 박		
41. 강 선		
42. 목 선		
43. 기 타 선 박		
5. 차 량 운 반 구		
51. 궤 도 차 량		
52. 자 동 차		
53. 항 공 기		
54. 기 타 차 량 운 반 구		
6. 공 구 기 구 및 비 품		

< 표 8-1 > 자산 분류별,
8-2

	합 계				증 양		
	일 회	반 계	특 회	별 계	소 계	일 회	반 계
총 액							
A 유형 고정 자산							
1. 전 물							
11 주거용 건물							
12 비주거용 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급수시설							
24 기타시설							
3. 기계 및 장비							
4. 선박							
41 강선							
42 목선							
43 기타선박							
5. 차량 및 운반구							
51 궤도차량							
52 자동차							
53 항공기							
54 기타차량운반구							
6. 공구기구 및 비품							

회계별 정부 자산액 (총 자산액, 순 자산액)

[illegible]

< 표 9-1 > 자산분류별 취득년도별

< 표 10-1 > 자산분류별 취득년도별

	합 계	1950년 이 전	1951 ~ 1961	1962 ~ 1966	1967 ~ 1968	1969
총 액						
A 유형 고정 자산						
1. 전 물						
11 주거용 건물						
12 비주거용 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급수시설						
24 기타시설						
3. 기계 및 장치						
4. 선박						
41 강선						
42 목선						
43 기타선박						
5. 차량 운반구						
51 궤도차량						
52 자동차						
53 항공기						
54 기타차량운반비						
6. 공구기구및비품						

주 : 일부사회간접자본 및 물품 (00 페이지 참조)

<표 11-1> 자산분류별 소재 지역 별
11-2

<표 12-1> 자산분류별 소재 지역 별
12-2

	합	서울	부산	경기
총 액				
A 유형고정자산				
1. 건물				
11 주거용건물				
12 비주거용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급수시설				
24 기타시설				
3. 기계및장치				
4. 선박				
41 강선				
42 목선				
43 기타선박				
5. 차량운반구				
51 궤도차량				
52 자동차				
53 항공기				
54 기타차량운반구				
6. 공구기구및비품				

(종자산액)
(순자산액)

비 (총자산액)
(순자산액)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해 외

<표 13-1 > 자 산 분 류 별 신 품 중 고 품 별

	합 계	신 품 자산액	구성비 %
유형고정자산 총액 1. 건 물 11 주거용 건물 12 비주거용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 축 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 송배 전시설 23 수리및 급수시설 24 기타시설 3. 기계 및 장치 4. 선 박 41 강 선 42 목 선 43 기타선박 5. 차량및운반구 51 궤도차량 52 자 동 차 53 항 공 기 54 기타차량운반구 6. 공구기구및비품 7. 대동식물 8. 건설가계정			100

정 부 유 형 고 정 자 산 액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중고품자산액	구 성 비 (%)	신 품 합 계 $\times 100 (\%)$
	100	

< 표 14-1
14-2 > 자산 분류별 정부기업의

		합 계			
		총 액	자기사용	임 차	$\frac{\text{임 차}}{\text{자산액}} \times 100(\%)$
유형고정자산 총액					
1. 건 물					
11.주 거 용 건 물					
12.비 주 거 용 건물					
13.건물부속설비					
2. 구 축 물					
21.교 통 시 설					
22.발전및 송배전시설					
23.수리및급수시설					
24.기 타 시 설					
3. 기 계 및 장 치					
4. 선 박					
41.강 선					
42.목 선					
43.기 타 선 박					
5. 차 량 및 운 반 구					
51.궤 도 차 량					
52.자 동 차					
53.항 공 기					
54.기타차량운반구					
6. 공 구 기 구 및 비 품					

유형고정자산액 (사용자산) (총자산액)
(순자산액)

전 매 청				채 신 청	철 도 청	조 달 청
자 산 액	자 기 사 용	임 차	$\frac{\text{임 차}}{\text{자산액}} \times 100\%$			

유형고정자산액 (소유자산) (총자산액)
(순자산액)

전 매 청				채 신 청	철 도 청	조 달 청
자 산 액	자 기 사 용	대 여	$\frac{\text{대 여}}{\text{자산액}} \times 100\%$			

<표 16 - 1 > 소재 지역 별 소유 주 체 별
16 - 2

	합	제	중 앙 정 부
전 국			
유 형 고 정 자 산 총 액			
1. 전 물			
2. 구 축 물			
3. 기 계 및 장 치			
4. 선 박			
5. 차 량 및 운 반 구			
6. 공 구 기 구 및 비 품			
7. 대 동 식 품			
8. 전 설 가 제 정			
서 울			
유 형 고 정 자 산 총 액			
1. 전 물			
2. 구 축 물			
3. 기 계 및 장 치			
4. 선 박			
5. 차 량 및 운 반 구			
6. 공 구 기 구 및 비 품			
7. 대 동 식 물			
8. 전 설 가 제 정			
경 기 도			
강 원 도			
제 주 도			

유형고정자산액 < 총자산액 >
 < 순자산액 >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 17 > 자산분류별 유형 고정자산의 평균

	합		계	중
	평균내용년수 (년)	평균경과년수 (년)	$\frac{\text{평균경과년수}}{\text{평균내용년수}} \times 100$ (%)	평균내용년수 (년)
유형고정자산총계				
1. 전 물				
11 전 물				
12 비거용 건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급수시설				
24 기타시설				
3. 기계 및 장치				
4. 선박				
41 강선				
42 목선				
43 기타선박				
5. 차량 및 운반구				
51 궤도차량				
52 자동차				
53 항공기				
54 기타차량운반구				

내용년수와 평균경과년수

양 정 부		지 방 정 부			
평균경과년수 (년)	$\frac{\text{평균경과년수}}{\text{평균내용년수}} \times 100$ (%)	평균내용년수 (년)	평균경과년수 (년)	$\frac{\text{평균경과년수}}{\text{평균경과년수}} \times 100$ (%)	

18-1
<표 18-2> 자산분류별 산업별

	전 산 업	농업수련업임업및어업				광	
		계	직물생산업	축산업		계	석탄광업
유형 고정 자산 총 계							
1 . 건 물							
11 주 거 용 건 물							
12 비 주 거 용 건 물							
13 건물부속 설비							
2 . 구 축 물							
21 교 통 시 설							
22 발전및송배전시설							
23 수리및급수시설							
24 기 타 시 설							
3 . 기 계 및 장 치							
4 . 선 박							
41 강 선							
42 목 선							
43 기 타 선 박							
5 . 차 량 및 운 반 구							
51 궤 도 차 량							
52 자 동 차							
53 항 공 기							
54 기타차량운반구							
○ 공공단체, 포함							

분류별 자산액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업	제 조 업	분 류 불 능
원유 및 천연가스업	계	분 류 불 능

<표 19-1> 자 산 분 류 별 국 · 공 립 학 교
19-2

<표 20-1> 자 산 분 류 별 국 · 공 립 학 교
20-2

	합 계	국민 학교	중 학 교
총 액			
A 유형 고정 자산			
1. 건 물			
11 주거 용건 물			
13 건물부속설비			
2. 구 축 물			
21 교통시설			
22 발전및 송배전시설			
23 수리및 급수시설			
24 기타시설			
3. 기계및 장치			
4. 선 박			
41 강 선			
42 목 선			
43 기타선박			
5. 차량운반구			
51 궤도차량			
52 자 동 차			
53 함 공 기			
54 기타차량운반구			
6. 공구기구및비품			

종 류 별 자 산 액 (총 자산액)
 (순자산액)

종 류 별 자 산 구 성 비 (총자산액)
 (순자산액)

고 등 학 교	초 급 대 학	대 학 교	기 타

(제 73 차)

1. 제 61 차 통계위원회 (78.4.20) 심의를 거친 국부통계 결과표 양식 최종안중 가계부문 결과표 양식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별첨 참조)

가. 공통수정 및 보완사항

- 1) 표측의 품목분류는 1.5를 제외하고는 52개 항목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중요품목에 한하여 추가하여 수록함.
- 2)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조사가 구수와 모수추정 가구수를 들다 수록하기로 함.
- 3) 건물자산의 평가방법은 취득원가법, 건물평가기준표를 이용하는 방법중 개인기업부문과 평가방법을 통일하여 결정함.

나.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가계자산 총괄 (1)
 - 가구 인원수별 가계자산 (3)
 - 가구 연령 계층별 가계자산 (4)
 - 가구 인원수별 주요 가계의 소유량 (12)
- 위의 공통사항을 참조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함.

단. 가계자산 총괄표 (1)은

가계부문 표본설계가 시도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므로 시도별 자산은 간접추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다. 수정보완사항

- 연간소득계층별 가계자산 (2)
- 연간 소득계층별 주요가재의 소유량 (1)

근로자 가구를 제외한 비농가와 농가의 소득은 조사결과와

정도에 문제가 있음으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계층별 결과표만 작성하기로 함.

○ 가구주 직업별 가계자산 (5)

○ 가구주 직업별 주요 가재의 소유량 (13)

근로자 가구의 직업 구분은 사무직종사자, 생산직 종사자로 구분하기로 하고 가구주 직업별 가계자산 (5) 표는 표측의 품목분류를 320 개 품목분류 (가계자산 전 품목을 품질, 규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함.

○ 주거형태별 가계자산 (6)

표제 「주거형태별」은 「주택의 형태별」로 바꾸고 표두의 「주택의」의 항목은 주택의 소유형태와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로 수정하기로 하고 주를 달기로 함.

○ 시도별 가계자산 (7)

삭제하기로 함.

○ 지역별 가계자산 (8)

표제들 「지역별」에서 「시부군부별」로 변경함.

○ 취득시기별 주요가계자산 (9)

○ 취득시기별 주요가재의 소유량 (11)

가계부분의 취득시기별 자산분류를 타부분과의 일관성 유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타부분의 자산취득연도별 구성비를 이용하여 가계부분의 취득시기 구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가계자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편 종합편에 수록할 취득시기별 분류에 가계자산을 포함할 실익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함.

첨부 : 가계부분 결과표(안)

(별첨) 가계자산 부문 결과표 (안)

1 . 가 계 자

	합 계	주 택	가 재	가 구
	총 자 산 액			
조사가구수				
자 산 총 액				
농 가				
비 농 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 기 도				
강 원 도				
.....				
	순 자 산 액			
조사가구수				
자 산 총 액				
농 가				
비 농 가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 기 도				
강 원 도				
.....				

산 종 팔

가정용 기구	교량오락 기구	파 복	수송용 기기	기 타

2. 근로자가구 연간소득

(총자산, 순자산, 가구

	합 계	360천원 미 만	360천원 600천원	600천원 840천원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계층별 가계 자산

당총 자산, 가구당 순자산)

	5,400 천 원 — 6,000 천 원	6,000 천 원 이 상	비 상
--	-----------------------------	------------------	-----

소득 계층 분류

	~	360 천 원
360 천 원	~	600 "
600 "	~	840 "
840 "	~	1,080 "
1,080 "	~	1,320 "
1,320 "	~	1,560 "
1,560 "	~	1,800 "
1,800 "	~	2,040 "
2,040 "	~	2,280 "
2,280 "	~	2,520 "
2,520 "	~	2,760 "
2,760 "	~	3,000 "
3,000 "	~	3,240 "
3,240 "	~	3,480 "
3,480 "	~	3,720 "
3,720 "	~	3,960 "
3,960 "	~	4,200 "
4,200 "	~	4,800 "
4,800 "	~	5,400 "
5,400 "	~	6,000 "
6,000		

3 . 가 구 인 원
(종자산, 순자산,

	합 계	1 인	2 인	3 인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전 가 구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농 가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비 농 가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근로자가구			

수 별 가 계 자 산

가구당총자산, 가구당순자산)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이 상

4. 가구주연령

(총자산, 순자산,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전 가 구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농 가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비 농 가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			근로자가구	

5. 가 구 주 직 업

(총자산·순자산·

	합 계	농 립 어 업	비 농 립 어 업	근 로 자 가 구	사 무 직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3 2 0 개)					

가구당총자산 · 가구당순자산)

-173-

6. 주택의 소유

(총자산, 순자산,

	합 계	자 가	판 공 사 택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자 산 합 계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농 가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비 농 가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근 로 자 가 구

형 태 별 가 계 자 산

가구당총자산, 가구당순자산)

전 세	월 세	기 타

8. 시 부 군 부 별

(총 자산, 순자산, 가구당총)

	합 계	시 부	서 을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5			

가 계 자 산

자산, 가구당 순자산)

			군 부
부	산	도청 소재지	기 타 도 시

9. 취 득 시 기 별

(총자산, 순자산, 가구당

	합 계	61 년이 전	62~66	67~71	72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			전 가 구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			농 가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			배 농 가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			근 로 자 가 구		

주요가계자산

(총자산, 가구당순자산)

73	74	75	76	77	미상

10. 근로자기구의 연간소득계층별

	평 균	360 천원 미 만	360 천원 ~ 600 천원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S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S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주요가재의 소유수량 (100 가구당)

600 천 원 ~ 840 천 원		5,400 천원 ~ 6,000 천원	6,000 이상 이 상	미 상
-------------------------	-------	---------------------------	-----------------	-----

소득 계 층 분 류

			360 천원
360 천원	~	600 "	
600 "	~	840 "	
840 "	~	1,080 "	
1,080 "	~	1,320 "	
1,320 "	~	1,560 "	
1,560 "	~	1,800 "	
1,800 "	~	2,040 "	
2,040 "	~	2,280 "	
2,280 "	~	2,520 "	
2,520 "	~	2,760 "	
2,760 "	~	3,000 "	
3,000 "	~	3,240 "	
3,240 "	~	3,480 "	
3,480 "	~	3,720 "	
3,720 "	~	3,960 "	
3,960 "	~	4,200 "	
4,200 "	~	4,800 "	
4,800 "	~	5,400 "	
5,400 "	~	6,000 "	
6,000 "		천원 이상	

11. 취득시기별주요자재의

	평 균	61년이전	62~66년	67~71년	72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S	전 가 구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S	농 가				
조사가구수 품목서류 S	비 농 가				
조사가구수 품목분류 S	근로자가구				

[illegible]

12. 가구 인원 수별

	평 균	1 인	2 인	3 인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전 가 구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농 가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비 농 가	
조 사 가 구 수 품 목 분 류 S			근 로 자 가 구	

주요가재의 소유수량 (100 가구당)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이상

안하여 총화하지 않았으므로 20-29, 30 인 이상을 한때 묶어 20 인 이상으로 변경함.

○ 자산분류별 경지규모별 시도별 농어부문 자산액

농수산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업 기본통계조사와 분류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경지규모별 분류(ha)를 0.1-0.2, 0.2-0.3 → 0.1-0.3, 0.5-0.7 0.7-1.0 → 0.5-1.0 2.0-2.5 2.5-3.0 → 2.0-3.0 으로 조정함.

○ 자산분류별 어선 톤급 규모별 시도별 어업부문 자산액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일부 내수면어업, 양식업을 2t 미만에 포함하기로 하고 어업부문의 자산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불대 시도별로 결과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 일부 시도에만 자산이 편중 될것이 예상되므로 표두의 시도별 분류를 동해안, 남해안,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담당기관인 농수산부에서 검토 결정하기로 하였음.

○ 자산분류별 자기사용자산(소유, 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

○ 자산분류별 자기소유자산(사용, 대여)별 유형고정자산액

타부문과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고 업종별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 자산소분류, 산업소분류별로 결과표를 작성기로 함.

2. 기타사항

가. 농수산부에서 개인기업(농림어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므로 농림어업 부문의 주거용 주택자산이 전무할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보완 조사, 사후조사 조사표 Editing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나. 제 72 차 국무통계실무자 회의에서 결정한 정부부문 결과표(4, 5, 6 표) 표두의 물품 항목을 삭제하였으나 물품자산을 공용재산, 기업용재산등에 포함시킬 수 없고 별도의 물품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자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물품" 항목을 추가하였음.

(제 74 차)

1. 개인기업 (농림어업) 부문 결과표 검토

제 61 차 통계위원회 (78.4.20) 심의를 거친 국부통계 결과표 양식 최종안중 농수산부에서 일부 수정 보완한 개인기업 (농림어업) 부문결과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75 차회의 결과 참조)

가. 공통수정 보완사항

○ 농림어업 부문의 산업분류를 제 6 차 지부장회의 (78.1.26) 결과에 따라 「 111 농업 」 을 「 111 작물생산업 」 , 「 112 축산업 」 으로 구분하여 결과표를 작성함.

○ 재고자산의 자산분류를 농림어업 부문의 자산특성에 따라 미성숙등 식물, 기타 재고자산으로 분류함.

나.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자산분류별 산업중분류별 농림어업 자산액 총괄표

○ 자산분류별 산업소분류별 자산취득년도별 농림어업 부문 유형고정자산액

위의 공통사항을 참조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함.

다. 수정 보완사항

○ 자산분류별, 산업소분류별 농림어업 부문 자산액

○ 자산분류별, 산업소분류별 농림어업 자산액

위의 두표를 한표로 묶고 지역별로 표두로 하여 결과표를 작성함.

○ 자산분류별, 산업소분류별 종업원 규모별 농림어업 부문 유형고정 자산액

개인기업 (농림어업) 부문의 종업원 규모가 영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림어업부문의 사업체 표본설계를 할때 종업원 규모를 감

은행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음.

1) 75.76년도 재물조사의 결과를 이용 그간의 자산 증감비를
시산하여 그 증감비를 77년 재물조사 결과에 적용시키는
방안

2) 77년 재물조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안

나. 위의 두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1) 1안 : 75,76년도의 자산증감비와 77년도 자산증감비가
서로 다를것으로 예상되며 방법론 상 타당한 근거가 없으
므로 이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음.

2) 2안 : 77.6월부터 12월까지의 자산변동상황을 포착할 수
없음.

다. 따라서 물품자산 기준시점 결정은 77년도 재물조사 결과와
78년도 재물조사 결과를 산술 평균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나 78년도 재물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을것이 예상되므로 담당기관인 한국은행에
서는 이용가능한 시기, 작업기간등을 감안 이용가능 여부를 확
인하여 다음과 같이 동 자산을 평가하기로 하였음.

1) 78.6월말 기준 재물조사 자료이용이 늦어질 경우에는 77.
6월말 기준 자료를 이용평가 하고 별도로 77.6월말
기준자료를 이용평가한 재물자산액을 산출하여 국부통제 자
료이용시 참고토록 함.

2) 78.6월말 기준 재물조사 자료이용이 작업기간중에 가능할
경우에는 77년 결과와 산술평균하여 보고서에 수록토록 함.

첨부 : 정부부문, 농림어업부문 결과표

(제 75 차)

1. 정부부문 농림어업 부문 결과표 검토

제 72, 74 차 국무통계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동 결과표를 종합 검토 정리한 결과는 별첨과 같음.

2. 개인기업부문 (농림어업부문) 결과표 검토

가. 개인기업부문 결과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종분류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

1) 산업분류, 자산분류, 종업원규모별 분류등을 최대한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분할 경우 단행본의 보고서에 수록하기가 곤란함.

2) 결과표상에 추계사업체 수도 수록하여야 하나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서 모집단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종업원규모, 자산액 규모를 감안하지 못하였음으므로 업종별 세분함에 따라 정도 유지에 문제가 있음.

나.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각 조사담당기관별로 분류방안을 강구하여 차기 실무자회의 (9.15) 에서 재 검토하기로 하였음.

1) 기본표는 자산소분류, 산업소분류를 원칙으로 함.

2) 보고서 부피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최소분류까지 세분함

3) 종업원규모, 자본금 규모에 관한 분류는

가) 모집단에 관한 분류가 없으므로 기본분류에 따라 가집제한 후 자료의 분포상매를 감안하여 축소 조정함.

나) 법인부문과 개인기업부문의 특성에 따라 법인부문은 대규모에서 세분하고 개인기업부문은 소규모에서 세분함.

3. 정부부문 물품자산 평가기준 결정

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품자산 평가는 조달청에서 매년 6월말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물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기로 되었으나 재물조사 (77.6.30) 와 국무통계조사 (77.12.31) 의 기준시점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한국

<별첨>

개인기업부문 (농림어업) 결과표(안)

1. 자산초분류별 산업중분류별 농림어업자산액총괄표
2. 자산소분류별 산업소분류별 지역별 농림어업부문 자산액
3. 자산소분류별 산업중분류별 자산취득년도별 농림어업부문 유형고정
자산액
4. 자산소분류별 산업중분류별 종업원규모별 농림어업부문 유형고정
자산액 (소유자산)
5. 자산소분류별 경지규모별 시도별 농업부문 자산액
6. 자산소분류별 어업톤수규모별 해안별 어업부문 유형고정자산액
7. 자산소분류별 산업소분류별 소유자산의 자기사용대여별 유형고정
자산액
8. 자산소분류별 산중고품별 농림어업 유형고정자산액

1. 자산소분류별 산업중분류별

	합 계		농 * 업	
	평 가 액	구성비 (%)	평 가 액	구성비 (%)
추 제 사 업 체 수				
자 산 총 액				
1. 유 형 고 정 자 산				
(소분류별)				
2. 재 고 재 산				

농림어업 자산액 총괄표 (총자산액 / 순자산액)

임		어		비	고
평 가 액	구 성 비 (%)	평 가 액	구 성 비 (%)		

2. 자산소분류별 산업소분류별 지역별

합 계	농 업			어	
	계	작물생산업	축산업	계	영 립 업
주계 사업체수					
자 산 총 액					
1. 유형고정자산					
(소분류별)					
2. 재 고 자 산					

농림어업부분 자산액 (총자산액 순자산액)

업 별 목 업	어 업	서 울				
		제	농 소 계	업 작 물 생 산 업	임 축 산 업	소 계

계				농	업	업	
69 년	68-67	66-62	61-51	50 년 이전	계	77 년	76 년

농림어업부문 유형고정자산액 (소유자산) (총자산액 순자산액)

[illegible]

5. 자산소분류별 경지규모별 시도별

	합		계					
	총 액	경지없는 사 업 체	0.1ha 미 만	0.1+0.3	0.3-0.5	0.5-1.0	1.0-1.5	1.5-2.0
총 액								
1. 유형고정자산								
(소분류별)								
2. 재 고 자 산								

농업부문 자산액 (총 자산액 - 순 자산액)

(단위 : 백만원)

[illegible]

6. 자산소분류별 어업톤수규모별 해안별

	합								
	총액	내수면 어업	2t미만	2-5	5-10	10-20	20-30	30-50	5-100
1. 유형고정자산									
(소분류별)									
※양식업포함									

어업부문 유형고정자산액 (총자산액 순자산액)

(단위 : 백만원)

[illegible]

41

卷之四

자기사용대여별 유형고정자산액 (총자산액 순자산액)

(단위 : 백만원)

입			어		
계	자기사용	대 여	계	자기사용	대 여

8. 자산소분류별 신중고품별 농림어업

	합 계			농	
	총 액	신품자산액	중고품자산액	계	신품자산액
1. 유형 고정 자산					
(소 분 류)					
.....					

유형 고정 자산액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업	업	업	업
중고품자산액	계	신품자산액	중고품자산액

(제 76 차)

1. 개인기업부문 결과표 검토

제 75 차 국무통계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개인기업부문의 각종분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에따라 개인기업부문 결과표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별첨 참조)

- 자산분류는 자산소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 및 장치부문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표두의 업종별 분류와 대칭되는 난에만 주로 자료가 나타나게 되므로 사실상 세분에 따른 효과가 없음. 따라서 일본의 결과보고서 업종별 기계장치 부문자산 소유 상태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음.
- 기본표인 자산분류, 산업분류 결과표는 소분류까지 소유자산 사용자자산 결과표를 작성함.
- 규모별 지역별 등의 결과표에서는 산업분류를 대분류로 하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은 중분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으로 구분함. (전부문을 중분류로 하였을 경우 결과보고서의 부피가 과다함) .

가.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 중분류) 자기 사용대여별 유형고정 자산액 (소유자산)
-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 중분류) 신중고품별 유형고정 자산액 (소유자산)
-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중분류) 평균내용년수와 평균경과년수 (소유자산)

-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일부중분류) 자기사용 임차별 자산액(사용자산)

위의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함.

나. 수정보완사항

-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종업원 규모별 자산액(소유자산)
- 자산액규모, 산업대분류 자산대분류별 자산액(소유자산)

사업체 표본설계를 할때 종업원 규모, 자산액 규모를 감안하여 증화하지 않았으므로 산업별 추계종업원수, 자산액의 사업체수를 수록하는데 정도가 문제되므로 산업대분류, 자산대분류(자산액 규모 경우)별로 분류하기로 하고 종업원 규모는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7가지, 자산액 규모는 1000천원이하 1,000-3,000천원, 3,000-5,000천원, 5,000-10,000천원, 10,000-30,000천원, 30,000-50,000천원, 50,000-100,000천원, 100,000천원 이상 8가지로 각각 분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가집계한후 자산의 분포상태를 감안하여 추후 조정하기로 하였음.

- 자산중분류, 산업대분류 취득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
자산중분류별 취득가격 및 총자산액을 수록함.
- 자산중분류 지역 산업대분류(일부중분류)별 자기사용대여별 유형고정 자산액(소유자산)
- 자산중분류, 지역 산업대분류(일부중분류)별 자기소유 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사용자산)

표본설계를 할때 정확한 모집단수를 파악할수 없어 정도 높은 지역별 자산액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자산중 분류별로 결과표를 작성함.

2. 심사요령서 검토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하고 타부문의 심사요령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종합하여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하기로하였음. (별첨 참조)

3. 기타사항

6차 지부장회의 (78.1.26)에서 결정한 조정된 산업분류 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음.

중분류	조정된 소분류	KSIC NO
11. 농업 및 수렵업	111. 작물생산업	1111
	112. 축산업	1112
	113. 농업서비스	112,
	114. 수렵업	113
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321. 방적제사 및 직조업	3211, 3216
	322. 기타섬유 제조업	3212-3215, 3217, 3219
	323. 의복제조업, 신발제조업	322
	324.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의복 제외	323
	325.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제외	324

중분류	조정된소분류	KSIC NO
3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프라 스틱 제품제조업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비료 제조업 제외 352. 비료제조업 353. 기타화학제품제조업 354. 석유 정제업 355.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6. 고무제품 제조업 357.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1, 35125, 35129 3513 35121-35124 352 353 354 355 356
38.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4. 선박 건조 및 수선업 385. 철도장비 제조업 386. 자동차 제조업 387.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 388.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추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3841 3842 3843 3844, 3845, 3849 385
71. 운수 및 창고업	711. 철도운수업 712. 도로운수업 713. 수상운수업 714. 항공운수업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7111 7111-7116 712 713 719

첨부 : 1. 개인기업부문 결과표(안)

2. 조사표 심사요령서

<별첨 1>

개인기업부문(비농림어업)결과표(안)

1. 전 국

(소유자산)

1. 자산소분류 산업소분류별 자산액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2.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종업원규모별 자산액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3. 자산중분류 산업대분류(일부중분류)취득년차별 유형고정자산액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4.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일부중분류)자기사용대여별 유형고정자산액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5.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상품 중고품별 유형고정자산액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6. 자산액규모 산업대분류 자산대분류별 자산액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7.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중분류) 평균내용년수

1. 총자산액

2. 순자산액

(사 용 자 산)

8.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중분류) 자기소유
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

9. 자산소분류, 산업소분류별, 유형고정 자산액

II. 지 역

(소유 자산)

10. 자산중분류, 지역, 산업대분류별 자산액

(사용 자산)

11. 지역내, 자산중분류 산업대분류 자기소유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

III) 農 業 用 資 產

< 1 林 業 >

1. 資 産 分 類 業 種

(總 計)

資 産 分 類	備 註 비 備 註 (備 註)	業 種	計	
			計	31 음식료품
N- 主 體 業 體 數	備 註			
T, 資 産 總 額	備 註			
1. 有 形 固 定 資 産	備 註			
10. 建 物 及 附 屬 設 備				
101. 住 居 用 建 物				
...				
2. 無 形 資 産				
...				

분류별 자산액 (소요 자산)

산액)

조업								
32	33	34	35	36	37	38	39	
-	-	-	-	-	-	-	기타	

2.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총 자)

자산분류	비 농 림 수 산 업							
	계	1-4 人	5-9 人	10-19 人	20-49 人	50-99 人	100-299 人	300人 이상
N 추계 사업체 수								
추계 종업원 수								
T 자 산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101. 주거용 건물								
2. 재 고 자 산								

종업원 규모별 자산액 (소유 자산)

산 액)

광 업								제 조 업							
계	1-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인 이상	계	1-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인 이상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人

3. 자산중분류 산업대분류

자산분류		비 농 림					
		총 액	1977	1976	1975	1974	1973
총 자 산 액	1. 유형고정 자산 (취중 10. 건물및부속설비 (취중						
순 자 산 액	1. 유형고정 자산 (취순 10. 건물및부속설비 (취순						

(일 부 중 분 류) 취 득 년 차 별 유 형 고 정 자 산 액 (소 유 자 산)

수 산 업								광 업
1972	1971	1970	1969	1967 -1968	1961 -1966	1951 -1960	1950 년 이전	

4.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중분류)

(총 자)

자산 분류	제														
	제			광. 업			제			31 음식료품 제 조 업			32 섬유·의복 및가죽공 업제조업		
	제	자기 사용	대여	제	자기 사용	대여	제	자기 사용	대여	제	자기 사용	대여	제	자기 사용	대여
N. 추계사업체수															
T. 자산총액															
1. 유형고정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101. 주거용건물															
172. 식 물															

자기 사용대여별 유형 고정자산액 (소유자산)

산 액)

조			업		
33 제재업나 무제품및 가구제조업			34 종이제품 및인쇄출판업		
35 화학석유 석탄및프라 스틱제조업			36 비금속광 물제품제조업		
37 제1차			38 금속제품 기계및장 비제조업		
제	자기 사용	대여	제	자기 사용	대여

5.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총 자

자 산 분 류	비농림수산업			2. 광 업			3. 제조업		
	계	신품	중고품	"	"	"	"	"	"
11. 추계사업체수									
T 자 산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101.주 거 용 건 물									

산 액)

-225-

6. 자산액 규모 산업대분류

자산액 규모		대 농 립 수 산 업			
		추계사업채수	자 산 액		
			총 액	유형고정자산	재고 자산
총 자 산 액	T. 자 산 총 액				
	0 ~ 1,000 천원 미만				
	1,000 ~ 3,000				
	3,000 ~ 5,000				
	5,000 ~ 10,000				
	10,000 ~ 30,000				
	30,000 ~ 50,000				
	50,000 ~ 100,000				
순 자 산 액	100,000 천원 이상				
	T. 자 산 총 액				
	0 ~ 1,000 천원 미만				
	100,000 천원 이상				

자산대분류별 (소유 자산)

광업			
추계사업체수	자 산 액		
	총 액	유형고정자산	재 고 자산

7.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자산분류	비농림수산업		광업		제		
					계	31 음식료품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N 추제사업체수							
T 자산총액							
1. 유형고정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101. 주거용건물							

(일 부 중 분 류) 평 균 내 용 년 수 평 균 경 과 년 수 (소 유 자 산)

조		업					39	
32	섬유의복 33	34	35	36	37	38	기	타
	및가죽공업 -	-	-	-	-	-	평 균	평 균
							내용년수	경과년수

8. 자산소분류, 산업대분류 (일부중분류)

(총 유행)

자산분류	산업분류			광업			제	
	비농림수산업						제	31 음식료품
	제	지키 소유	임차	제	지키 소유	임차		
N. 추계사업체수								
T.자산총액								
1.유형고정자산								
10.건물및부속설비								
101.주거용건물								
172.식물								

자기 소유임차별 유형고정자산액 (사용 자산)

고 정 자 산 액)

조							업		
32	33	34	35	36	37	38	38 기타		
							제	자기 소유	임차

9. 자산소분류 산업소분류별

자산분류	비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계	31 음식료품
N 추계사업채수				
T 자산총액				
1. 유형고정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101. 주거용건물				
172. 식				
물				

Copyright © 2010 John Wiley & Sons, Ltd.

조		업					
32	33	34	35	36	37	38	39
							기 타

10. 자산중분류 지역

자산분류		전 국									
		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열·차·열	건설업	도·소매·민·숙·박·업	·	·	·	서비스업
총 자산액	N 추계사업체수										
	자 산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물및부속설비										
총 자산액	·										
	·										
총 자산액	T. 자 산 총 계										
	1. 유형 고정 자산										
총 자산액	·										
	·										

산업대분류별 자산액 (소유 자산)

11. 지역내 자산중분류산업대분류

(총. 자

전 국 1. 유형고정 자산 10. 전 물 11. 구 축 물 12. 기 계 장 치 13. 선 박 14. 차 량 운 반 구 15. 공구기구및비품 16. 전 설 가 제 정 17. 대 동 식 물	
서 울	

자기 소유 임차별 유형고정 자산액 (사용 자산)

산 액)

< 별첨 2 >

法人資産部門 調査票 審査要領 (案)

目 次

I. 一般事項	243
II. 内容審査要領	245
(1) 1段階審査	245
(2) 2段階審査	251
(3) 3段階審査	249
III. 調査票の 保管	250
別添：1. 行政区域別 地域番号	250
2. 組織形態別 附号	251
3. 資本金規模別 附号	252
4. 従業員規模別 附号	252
5. 資産額規模別 附号	253

Ⅱ. 一般事項

- (1) 調査票의 審査는 調査指示書 調査票 記入要領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와 審査要領에 의하여 3段階로 나누어
實施한다.
- (2) 調査票 內容을 修正할 때에는 該當部分을 平行 2朱線으로 지
우고 그 上段에 黑色 또는 靑色으로 訂正한다. 捺印은 하지
않는다.
- (3) 調査票의 記載事項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汚損된것은 該當調査票
만 새로 移記 作成한 後 破棄한다.
- (4) 調査票에 記入되는 숫자는 集計에 便利하도록 또박또박 적는다.
- (5) 資本金 1億 원(100,000千圓) 以上 規模의 法人에 대한 調査
票 審査時에는 最近 決算公告등의 資料등을 參考하여 特別 留
意하여야 한다.
- (6) 1段階 審査에서 訂正이 不可能한 調査票는 別途로 分類하여
追加調査條에 넘긴다.
- (7) 各段階의 審査를 完了한 審査者는 該當欄에 記名捺印한다.
- (8) 審査者는 審査結果를 綜合하여 다음 事項을 統轄班에 每日 報告
하여야 한다.
 - ① 審査完了法人數 및 管轄事業體數
 - ② 要追加調査法人 일람표
 - ③ 修正調査票數 및 主修正 項目

(大幅修正 一部修正)

- (9) 其他 審査時에 發生하는 問題는 適宜 處理하지 말고 統轄班에 問議하여 調整하도록 한다.

Ⅱ. 內 容 審 査

內容審査時에는 漏落되는 部分이 없도록 반드시 다음에 의거하여 段階別로 實施하여야 한다.

(1) 1 段階審査

1 段階審査는 各調査票 上段의 基本附号의 確定을 위한 內容審査 및 各法人의 最近 決算書등의 資料와 比較하여 資産額 總括表의 合理性 与否 檢討에 局限하며 그 要領은 다음과 같다. 특히 審査者는 各調査票의 基本附号 (Code)가 機械集計의 경우 調査票內容 못지않게 重要하다는것을 認識하고 基本附号의 確定에 正確을 기해야 한다.

1. 法人 및 事業體地域番号

法人의 登記된 所在地와 事業體의 實所在地에 의하며 別添地域番号에 의한다.

2. 調査区番号 法人番号 事業體番号는 指示한대로 記入되어 있으며 追加指定 및 新規法人의 法人番号는 該當調査区内에서 새로 追加부여하였는지

3. 事業體의 産業分類는 調査票Ⅲ 上段에 기재된 事業內容에 의하여 分類하고 法人産業分類는 管轄事業體 事業收入이 가장 많은 事業體의 産業에 따르며 共히 韓國標準産業分類의 産業小分類番号를 適用한다. 다만 다음의 小分類에 限하여 産業細分類를 適用한다.

産業小分類의細分內訊

分類	調整된 細分類	KSIC 分類記号
11 農 業	111 作物生産業	1111
	112 蓄 産 業	1112
	113 농림서비스	112
321 纖維製造業	321 紡績 製糸 및 織造業	3211, 3216, 3217
	322 其他 纖維製造業	3212, 3215, 3219
351 産業用化学物 製造業	351 産業用化学物製造業 (肥料製造業除外)	3511, 35125 35129 3513
	352 肥料製造業	35121, 35124
384 運輸裝備 製造業	3841 船舶建造 및 製造業	3841
	3842 鐵道裝備 製造業	3842
	3843 自動車製造業	3843
	3844 其他輸送機械製造業	3844, 3845, 3849
711 陸上運輸業	7111 鐵道運輸業	7111
	7112 道路運輸業	7112-7116

4. 組織形態는 調査票 I 의 3 組織形態와 一致하는가를 確認하고 別添 附号表에 따른다.
5. 資本金規模는 調査票 I 의 4 資本金 또는 出資金額에 記載된 資本金에 의하여 確認分類하고 別添附号表에 따른다.
6. 従業員 規模는 管轄事業體의 従業員 總數(事業體는 事業體別, 法人은 各事業體의 合計)에 의하면 別添附号表에 따른다.
7. 調査票 II III IV 의 各中分類別 小計를 計算하여 調査票 I 의 8 資産額總括表 및 9 賃借資産總括表의 그것과 一致하는가를 確認한다.
(臨時職員專担)
8. 調査票上의 모든 金額은 單位에 따라 妥當한지 檢討한다.
9. 各調査區別로 綴해진 調査票枚數가 調査票표지에 記入된 數量과 一致하는가를 確認한다.

(2) 2 段階 審査

1. 段階審査를 完了한 後 1 段階審査에서의 檢討事項을 除外한 모든 內容檢討를 本段階에서 實施하며 다음 要領에 의한다.
 1. 法人의 設立年度의 資産의 取得時期 取得時期와 取得価額을 相互比較檢討하여 合理性 여부를 심사한다.
 2. 1 次貨幣改革(1953.12.17. 100 원→1 환)
2 次貨幣改革(1962.6.10 10 환→1 圓) 以前
年度의 金額은 各各 還算되어 記錄된 것인지
註. 단 1953 年 以前의 取得資産(陳腐化資産 및 取得価額 不

明資産除外)에 대하여는 1且 補完調査토록 措置한다.

3. 構造 및 用途 또는 用途別設備와 細目の 資産分類는 妥當하며 또한 分類番号와 耐用年數는 正確하게 記入되어 있는지

4. 中古의 경우(取得時基準) 經過年數는 記入되었으며 이의 取得年度 耐用年數와 比較하여 不合理하지는 않은지

5. 取得価額(時期) 不明 및 陳腐化 資産의 경우 資産分類는 되어 있으며 取得価額 新品価額時価등이 合理的인지 검토한다.

例 取得価額 > 新品価額 不合理

新品価額 < 時価 不合理

6. 他 項目으로 미루어 보아 土地濶이 過少評價되어 있지는 않은지

7. 中古資産의 경우 그 經過年數가 耐用年數를 超過한것은 없는지 그 경우 取得価額은 合理的으로 把握되어 있는지를 심사한다.

8. 調査票Ⅲ에서 ①資産分類는 되어있고 ②耐用年數는 그대로 기입하였으며 ③新·中古의 区分은 賃借時期를 基準으로 되어 있는가 ④數量 單位는 빠짐없이 記入되었으며 數量은 該當單位에 의하였는가를 심사한다.

9. 調査票Ⅲ에서 新品価額과 時価는 妥當하게 記入 되었으며 特히 建物の 경우 [建物評價基準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法人의 主觀的 評價인지를 区分하고 新品価額 < 時価인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검토

10. 新品価額 時価가 賃借料등으로 잘 못 記入된 것은 없는지

11. 調査票Ⅳ에서 ①資産中分類別 品目名은 分類, 記入되어 있는가
②單位와 數額은 一致하는가 ③數額과 帳簿價額의 關係는 合理的인가를 심사한다.
12. 大動植物 資産의 有形固定資産 또는 在庫資産으로의 分類는 正確하며 業種으로 보아 漏落된것은 없는지 검토하고 其他 部分은 「大動植物評價基準表」에 의거 審査한다.
13. 공구 기구 및 비품은 細目別로 分類되어 있으며 該當外 細目은 記入되어 있지 않으며 主要한 공구 기구 및 비품이 빠지지 않았는지
14. 資産 再評價를 實施하였으면서도 再評價額欄은 省略되지 않았는지
15. 건설가계정 항목은 年度末殘額으로 연속하여 기입하지 않았는지
16. 業種으로 보아 在庫資産이 漏落되지 않았는지
17. 取得年度가 오래된 資産의 경우에는 반드시 物價倍率表에 시작하여 該當資産의 現在價值를 把握한 後 取得價額의 合理性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18. 其他 備考欄의 內容이 調査票 전체의 內容一致하는지를 검토한다.

(3) 3段階審査

本段階는 調査票에 대하여 再檢討를 實施하는 段階이다.

특히 基本的인 記入 項目의 漏落 各項目間의 有機的 關係의 資産分類番号 및 耐用年數의 正誤등을 重點的으로 審査票 全般에 걸친 合理性 여부를 檢討한다.

III. 調 査 票 의 保 管

3 段階까지의 審査가 完了되면 追加 調査條에 넘긴 調査票를 除外한 調査票에 對하여는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綴하여 追後必要時에 利用할 수 있도록 保管한다.

- (1) 法人內에서는 事業體順으로 調査區內에서는 法人番號順(작은番號가 위)으로 綴한다.
- (2) 표지에는 調査客體數(法人數)와 總調査票枚數(內容이 記入된 것에 限하여 綴한다)를 낱장으로 세어 記入하고 其他 必要한 部分에 記名 捺印하고 左面綴한다.
- (3) 위의 모든 事項이 完了되면 調査區 番號順으로 指定된 서류함에 指導區別로 保管한다.

別添 1. 行政區域別地域番號

서울특별시	11	경상북도	37
부산직할시	21	경상남도	38
경기도	31	제주도	39
강원도	32		
충청북도	33		
충청남도	34		
전라북도	35		
전라남도	36		

2. 組織形態別

營利法人	1	非營利法人	2
株式會社	11	學校法人	21
合名會社	12	社會福祉法人	22
合資會社	13	醫療法人	23
有限會社	14	宗教法人	24
		社團法人	25
		財團法人	26
		特殊法人	27
		組合法人	28

※ 特殊法人：일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저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인에의 加入이 강제되어 있는 특수법인과 국가에서 재정적 보조에 의하여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法人이 있음.

公共組合 營造物法人등 公法人과 區別되며 大部分의 特別法에 의한 國營事業體가 여기에 包含됨.

組合法人：각 단행법에 의하여 조직된 조합에서 규약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기하므로 法人格이 취득되는 法人

3. 資本金規模別

5,000	千圓未滿			1
5,000	" 以上	-	10,000 千圓未滿	2
10,000	" "	-	50,000 "	3
50,000	" "	-	100,000 "	4
100,000	" "	-	500,000 "	5
500,000	" "	-	1,000,000 "	6
1,000,000	" "	-	5,000,000 "	7
5,000,000	" "	-	10,000,000 "	8
10,000,000	" 以上			9

4. 従業員規模別

4 人以下		1
5 人	- 9 人	1
10 人	- 19 人	2
20 人	- 49 人	2
50 人	- 99 人	3
100 人	- 199 人	4
200 人	- 299 人	4
300 人	- 499 人	5
500 人 以上		6
1,000 人	"	7

5. 資産額 規模別

5,000 千圓未満			01
5,000 千圓以上	-	10,000 千圓未満	02
10,000 "	-	50,000 "	03
50,000 "	-	100,000 "	04
100,000 "	-	500,000 "	05
500,000 "	-	1,000,000 "	06
1,000,000 "	-	5,000,000 "	07
5,000,000 "	-	10,000,000 "	08
10,000,000 "	-	50,000,000 "	09
50,000,000 "	-	100,000,000 "	10
100,000,000 千圓以上			11

(제 77 차)

1. 법인부문 결과표 검토

제 61 차 통계위원회 (78.4.20) 심의를 거친 국부통제결과표 양식 최종안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일부 수정보완한 법인부문 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보고서 발간시 이용하기로 하였음.

(별첨 참조)

가. 자산분류, 산업분류는 기본표에 한하여 소분류까지 분류함.

1) 타부문과 분류 기준을 원칙적으로 통일함.

2) 종업원 규모, 자본금 규모, 자산액규모 분류는 보고서의 부피를 감안하는 동시에 기본분류에 따라 가집제한후 자산의 분포상태를 감안하여 축소 조정함.

3)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자산액을 총자산액으로 수정함.

2. 조사표 심사요령서 검토

중소기업은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토록 하였음.

가. 소유자산의 경우 취득가격, 취득시기를 파악하여 동자산을 평가하여야 하나 취득 가격의 조사가 불가능하여 신품가격이 조사된 경우 임차자산의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조사된 신품가격을 총자산액으로 간주하고 잔가율을 적용하여 순자산액을 산출하기로 함.

나. 표본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전수조사 업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조사된 경우 동 사업체가 그간의 시차관계로

표본조사대상업체 선정 기준에서 전수조사업체 선정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표본조사 대상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그 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간주함.

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12. 기계 및 장치 또는 15.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분류판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문제를 차기회 외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였음.

3. 기타사항

78 차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개최

- 1) 일 시 : 78.9.27 10:00
 - 2) 장 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 3) 안 건 : 조사심사요령서 검토
- 첨 부 : 법인부문결과표 (안)

<별첨> 법인 자산 부문 결과표 (안)

1. 산업대분류 자산소분류별 취득년도별 자산액 (소유자산)
2. 산업중분류 자산소분류별 종업원규모별 자산액
3. 산업대분류별 자본금 및 자산액 규모별 자산액 (소유자산)
4. 산업중분류 자산소분류별 차가사용 대여별 자산액 (소유자산)
5. 산업대분류별 자본금 규모별 상품·중고품 자산액 (소유자산)
6. 산업대분류별 자산소분류별 평균내용년수 및 평균경과년수
(소유자산)
7. 산업 및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사용자산)
8. 산업 및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9. 산업중분류 자산소분류 자본금계층별 자산액 (소유자산)
10. 산업대분류별 자본금계층별 사용자산액
11. 산업대분류별 자산중분류별 소유 임차별 사용자산액
12. 지역별 산업대분류 자산액 (소유자산)
13. 지역별 산업대분류별 자본금계층별 자산액 (소유자산)
14. 지역별 산업대분류별 자산중분류별 사용자산액
15. 지역별 산업중분류별 법인형태별 소유토지면적
16. 비영리법인의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17. 산업대분류별 자본금계층별 조사표 작성근거
18. 자산분류별 자산액

19. 자산분류별 신품 중고품의 자산액

20. 자산분류별 법인자산구조변화

21. 지역별법인자산구조변화

1. 법인 총괄표 - 법인

자산분류		법인의 종류		총 자산액			
				제	구성비	영리법인	구성비
총	자산	법인	총		100		100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물						
101.	주거용 건물						
102.	비주거용 건물						
103.	전차						
11.	구축물						
111.	교량						
112.	발전 설비						
113.	수리 시설						
114.	기타 시설						
12.	기계						
13.	선박						
131.	강력선박						
132.	기타 선박						
133.	항공기						
14.	차량						
141.	패시저 차량						
142.	자전거						
143.	항공기						
144.	기타 차량						
15.	공구						
151.	공구						
152.	기계						
16.	전선						
17.	대동식						
171.	동식						
172.	식						
2.	재고 자산						
21.	원재료						
22.	반제품						
23.	완제품						
24.	저장품						

산업대분류, 자산소분류별

자산분류 자산취득년도 산업분류		전 산 업			
		총 액	1977	1976	

취득년도별 자산액 (소유자산)

(총 자산액)
(순자산액)

농업 · 수렵업 · 임업 및 어업

경 광

총액

1977

● ● ● ● ● ● ● ● ●

총액

1977

1976

.....

제 5 - 1 표 산업중분류 · 자산소분류 및
5 - 2 자산대분류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자산분류	전 산 업			
	총 액	9 인 이하	10인~49인	

종업원 규모별 차산액

(총 자산액)
(순자산액)

농업 · 수렵업 · 임업 및 어업

제 6 - 1 표 산업대분류별 . 자본금및
6 - 2

자산의 규모		산업분류	전 산 업			
		자산종류	총법인수	자 산 액		
				총 액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총 액	총 액					
	1.5 백만원 미만					
	2.5 백만원~천만원미만					
	...					
5 백 만 원 미 만	총 액					
	1.5 백만원 미만					
	...					
	11 천억원 이상					

자산액 규모별 자산액 (소유 자산) (총 자산액 순 자산액)

농업 · 수렵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총 법인 수	자 산 액			총 법인 수	자 산 액	
	총 액	유형고정 자산	재고 자산		재고 자산	유형고정 자산

제 7-1 표 ; 산업 중 분류 . 자산 소 분류
7-2 표 ; 산업 중 분류 . 자산 소 분류

산업분류 자산구분 자산분류	전 산 업			농 업		
	총 액	자기사용	대 여	총 액		
				총 액	자기사용	대 여

자기 사용 · 대여 별 자산액 (소유 자산)

(총 자산액)
(순자산액)

수렵업 · 임업 및 어업

농업 및 수렵업

○
○

총액

자기 사용

대 여

총액

자기 사용

대 여

제 8 - 1 표
8 - 2

산업대분류 · 자본금규모별 ·

산업분류 자본금규모 신품 · 중고품규모 자산분류	전		
	총		액
	총 액	신 품	중 고 품

신품 · 중고품 자산액 (소유 자산)

(순자산액)

산 업

5 0 0 만 원 미 만

총액

신 품

중고품

제 9 표 ; 산업대분류별 · 자산소분류별

자산분류	산업분류 평 균 경 과 년 수 평 균 내 용 년 수	전 산 업		
		평 균 내 용 년 수	평 균 경 과 년 수	$\frac{\text{평 균 경 과 년 수}}{\text{평 균 내 용 년 수}} \times 100$

제 10 - 1 표
- 2

산업및 자산소분류별

산업분류 자산분류		농업.	
		농업 및	
		총액	작물생산업

자산액 (사용자산) ($\frac{\text{총자산액}}{\text{순자산액}}$)

[illegible]

표 2 - 1 산업 및 자산 소분류별
- 2

산업분류 자산분류	전산업	농업, 수렵업		
		농업 및		
		총액	작물생산업	축산업

자산액 (소유 자산) (총 자산액)
순 자산액

[illegible]

산업종분류 . 자산소분류 .

- 276 -

자본금제총별 자산액 (소유자산) (총 자산액 순 자산액)

[illegible]

산업종분류별 자본금

산업분류 자본금규모 자산분류	전 산 업			농 업	
	총 액	5 백 만 원 미 만		총 액	5 백 만 원 미 만

제 층 별 사 용 자 산 액 (

총 자산액

순자산액

수 렵 업 임 업 및 어 업

액

농업 및 수렵업

○ 〇

.....

총액

5 백 만 원 미 만

● ● ● ● ● ● ● ● ● ●

총액

5 백 만 원 미 만

제 12 표 : 산업대분류별

총 순 자산액	자산분류	산업분류 소유임차구분	전 산 업			농업,
			총 액	자기 소유	임 차	총 액
총 자 산 액						
순 자 산 액						

제 13 - 1
- 2

표 : 지역별 산업

지역별 산업분류 자산분류	전 국		
	전 산 업	농림수산업	광 업

대분류자산액 (소유자산)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서 울 특 별 시

.....

● ● ● ● ● ● ● ●

전 산 업

농림수산업

광업

.....

제 14 - 1
- 2

표 ; 지역별, 산업대분류별,

지역별	산업분류 자본금계층 자산대분류	전 산 업		
		총 액	5 백만원미만	
전 국				
서 울 특 별 시				

제 15 - 1 표 ; 지역별, 산업대분류별,
- 2

지역별 산업분류 자산분류	전 국	서 울 시
전 산 업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 물		
11. 구 축 물		
2. 재 고 자 산		
농림 수 산 업		
1. 유형 고정 자산		

자산 중 분류별 사용 자산액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제 16 표 지역별, 산업중분류별

지역법인형태 산업중분류	총 계		영 리 법 인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총 계 대 지 임 야 답 전 기 타				
1. 농업, 임업, 수렵업및어업 11. 농 업 대 지 임 야				

법인형태별 소유토지면적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총계		영리법인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표 ; 비영리 법인의 자산

-290-

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사 회 복 지	특 수	조 합	기 타	

〈부록 1〉 산업대분류별 자본금

산업별	자본금계층 5 백만원 미만	
장 부 일 부 기 역 기 역 또 는 측 정		
1. 농업임업수렵업및어업		
장 부 일 부 기 역 기 역 또 는 측 장		
2. 광업		
장 부 일 부 기 역 기 역 또 는 측 정		

제충별조사표작성근거

< 부 록 2 >

자 산 분 류

구 성 비 자 산 분 류	자 산 액	대 분 류 별 구 성 비
총 액		100
1. 유 형 고 정 자 산		
1. 전 물		
2. 재 고 자 산		

별 자산액 (총 자산액)
순자산액

중분류별구성비	소분류별구성비
100	100

부록 3 - 1
- 2 > 자산분류별 · 신품 ·

신 · 중고 자산분류	총 액	신품 자산액	구 성 비 (%)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1. 건 물 16. 공구 기구 및 비품			

중고품의 자산액 ($\frac{\text{총 자산액}}{\text{순 자산액}}$)

중고품 자산액	구 성 비 (%)	$\frac{\text{신 품}}{\text{총 액}} \times 100 (\%)$

< 부록 4 - 1 > 자 산 분 류 별 법 인
- 2

자 산 구 조 변 화 (총 자산액
순 자산액)

$\frac{1977}{1968} \times 100 (\%)$	연 증 가 율	1977-1968	증가기여율 (%)

지 역 별 법 인 자 산

총액
서울
부산

구조 자산 (^{총 자산액}
순 자산액)

$\frac{1977}{1968} \times 100 (\%)$	연 증 가 율 (%)

〈 제 78 차 〉

1. 조사표 심사요령서 검토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음. (별첨참조)

가. 77 차 본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중 12 “ 기계 및 장치 ”에 속하는 자산을 기계-및 장치 자산분류중 업종에 구매되지 말고 자산중심으로 해당분류번호 및 내용년수를 적용시키도록 하였음. 또한 기계 및 장치와 공구 기구 및 비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기계 및 장치

- (1) 강성이 있는 물체로 구성되고
- (2) 일정의 한정 운동을 행하고
- (3) 유용한 작업을 한다. 위의 3 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은 “ 기계 ”상기 3 요소중 (2) 또는 (3)의 요소가 빠진 구조를 그의 토대 또는 용기가 되는 것은 “ 장치 ”를 말한다.

공구기구 및 비품

- (1) 공구란 기계에 장치 또는 수공에 의거 물건이 제작 또는 가공에 이용되는 용구로 기계의 기구에 조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주로 생산공정에 쓰인다.

- (2) 기구 비품이란 공구를 제외한 용구 용품을 말한다.

나, 건물을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민은행에서는 사용비율이 큰쪽에 따라 주거용 건물, 또는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 평가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인 기업부문에서는 비주거용 건물 면적만을 파악하여 동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1) 건물을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계부문, 중소기업은행은 이미 사용비율에 따라 주거용, 비주거용의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있음.

(2) 건물을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만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계부문의 결과표에 비주거용 건물이 나타나는 것은 모순이며 그 역도 또한 같음.

다. 건물평가 기준표 활용

(1) 동 기준표를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취득시기가 오래된 건물 자산은 불가배율표, 잔가율표를 적용 취득 가격을 추정하는 방안

(2) 별도의 건물평가 기준표를 작성하는 방안등이 있으나 건물평가 기준표의 건물 가격은 순수한 골조건축비만을 산출한 가격이므로 동 기준표를 이용할 경우 건물자산이 재평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평가기준표 작성기관인 한국은행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첨부 ; 조사표 심사요령서 (안)

(별첨 1-1)

개인기업부문조사표심사요령서 (안) (중소기업은행)

1. 조사표 분류

가. 산업 분류 및 11개 시도 분류의 정당성 확인

주생 산품 사업장 소재지 참조

나. 조사표 분류 및 매수 확인 (78.9.20까지)

11개 시도별

산업 세분류별

사업체 추출형별

종업원 규모별 :

산업소분류별, 층별 집락별 :

2. 보완조사

사업체 명부작성

기 획

확대승수표 작성

3. 조사표 심사

제 1 단계

(1) 조사표와 사업체 명부와와의 대조 (산업분류 :

3	5	1
---	---	---

)

(2) 종업원 규모와 종업원수 합계와의 관계가 정당한가

- (3) 건물기재가 누락된 조사표는 없는가
- (4) 취득가격과 신품가격은 두개중 하나가 조사되었는가.
- (5) 나머지 항목 (소유 상황, 신고, 취득년도 시가)은 모두 기입되었는가.

(6) 표본조사분중에서 전수조사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가? 또 그 역은? 추출 사업체번호 모든 것이 변경되어야 함.

(7) 자동차 자산분류 번호의 통일

일반자동차	142301 (5 년)
화물자동차	142302 (4 년)
승용차	142303 (8 년)
이륜자동차	142304 (4 년)
삼륜자동차	142305 (4 년)
기타의 것	142306 (3 년)으로

기재되었는가

(8) 임차자산난은 전부 기재되었는가

(9) 78년 이후 취득한 것은 없는가

(10) 신규색출업체 번호부번

지점 단위로 : 심사책임자

(11) 시가 합계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가

(12) 자산 중분류별 합계 (부표금액 포함)가 정당한가,

(13) 자산분류번호 기재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제 2 단계

(14) 자산 품목별, 취득액 시가, 취득년도, 신품가격시가 등의 상호 관련사항을 조정 기입한다.

(15) 자산 분류가 정당한가

(16) 356업종의 기계장치는 별도 방법에 의해 조정 기입되었는가.

(17) 발전 및 송배전 시설과 수리 치수 및 급수시설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는 정당했는가.

예 : 자가 화력발전기 건물에 부착된 급수시설 등은 본년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18) 건물평수가 모두 기재되었는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건물평가 기준표에 의해 역산하여 기재할 것.

제 3 단계

1, 2 단계 심사가 끝난 조사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을 한 후 (주로 집계관련 항목) 산업별, 도별, 사업체수를 최종적으로 확인 확대승수를 확정한다.

4. 조사표 관리

a. 일반소매업 (621)과 음식점업 (631)은 산업별, 시도별, 층별, 집락번호별, 사업체번호별로 녹색 표지에 편철 보관하고

b. 이하 산업은 사업체추출형별, 시도별 산업세분류별로 청색 표지에 편철 보관한다.

(별첨 1 - 2)

개인기업부문조사표심사요령서(안) (국민은행)

I . 일 반 사 항

1. 조사표 심사는 개인기업 자산 조사요령서, 표본사업체명부, 심사요령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1 차 심사 : 기본심사

(2) 2 차 심사 : 자산분류 검토

(3) 3 차 심사 : 자산 가격 심사

2. 조사표의 내용을 수정할 때는 해당 부분을 반드시 2 열의 주선으로 말소하고 그 상단에 흑색 또는 청색으로 정정한다.

다만 숫자는 부분 정정을 할 수 없다.

3. 조사표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또박 또박 기재되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 이외로 기재되었거나 판독이 애매한 숫자는 정정 기재한다.

4. 기재 사항에 누락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충 기재가 가능한 것에 한하여 심사자가 보완한다.

5. 결함 사항이 발견된 조사표는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 보완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6. 심사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사표는 심사자가 해당란에 날인한다.

7.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매일 심사일지에 기록한다.

① 심사완료 사업체수 (산업소분류별로 구분)

② 요보완조사 사업체 명단

③ 수정 조사표 수 및 주수정 항목

8. 기타 심사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II. 심 사 요 령

1. 1차심사

1차 심사는 조사표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표본사업체 조사표로서의 틀을 갖추고 있는가를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1) 조사표를 지역별, 산업소분류별, 사업체일련 번호순으로 정리한다.

(2) 사업체 개황 조사표 상의 ①번 지역번호 부터 ⑩번 업종까지의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서 표본사업체 명부와 대조한다.

가. ①번 지역번호는 정확한가?

(지역번호)

지 역 별	기 호	지 역 별	기 호
서울	1 1	강 원	3 2
부산	2 1	충 북	3 3
경기	3 1	충 남	3 4

전역별	기호	지역별	기호
전북	35	경남	38
전남	36	제주	39
경북	37		

나, 2번 산업소분류는 10번 업종난에 조사된 업태와 부합되는가?

(산업분류표)

산업분류	업종	업태
711	육상운수업	택시, 용달차, 화물차, 장의차, 주차장
712	수상운수업	여객선, 화물선, 하역업, 거룻배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여행알선업, 창고업, 화물포장, 하차장
810	금융업	전당포, 사설금융
820	보험업	보험대리점
830	부동산업	복덕방, 부동산임대업
841	용역업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광공업, 사법서사, 행정서사, 공증인사무소, 변리사, 통관사, 집달리, 직업

산업분류	업종	업태
		소개소,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
842	기계및 장비임대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
92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 분료수거 및 처리업
931	교육서비스업	유치원, 공민학교, 기술학교, 전수학교, 사설강습소
933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사원, 수의사, 접골원
939	등록단체	등록단체
941	영화 및 기타 연예서비스업	극장
942	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독서실, 수족관, 미술관, 동식물원
949	기타 오락서비스업	당구장, 탁구장, 기원, 수영장, 정구장, 보링장, 실내사격장, 태권도장, 권투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역도장, 궁중무술, 육체미, 댄스홀
951	달리분류되지 않는수선업	신발 및 가죽제품수선업, 라디오수선업, 자동차수리, 기타차량수리, 배터리수리, 세차장, 시계수리, 가

산업종류	업종	업태
952	세탁 및 염색업	방수선, 자전거수리, 악기수리, 기타수리
959	기타 개인 서어 비스업	세탁소, 염색소, 린넨공급점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예식업, 사진관, DP점, 장의업, 결혼상담소, 수화물보관 소, 솜틀집, 점술가, 운명감정소

다. ③번 규모 구분은 ⑬번 종업수란 합계에 대응하는 다음의
층번호와 일치하는가?

(종업원 규모 구분 층번호)

층번호	종업원수	층번호	종업원수
1	4인 이하	6	100 이상 199 이하
2	5 이상 9 이하	7	200 " 299 "
3	10 이상 19 이하	8	300 " 499 "
4	20 " 49 "	9	500 "
5	50 " 99 "		

라. ⑤번 사업체 번호는 산업소분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
이므로 번호의 누락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마. ⑥번 표본 구분은 정확한가를 검토한다.

(산업 소분류별 표본구분표)

산업소분류	업 종	표본구분	산업소분류	업 종	표본구분
711	회사형태	1	931	유치원	3
〃	개인택시	5		시설강습소	
712	전사업체	1	933	종합병원	1
719	〃	4	〃	기 타	4
810	〃	3	939	전사업체	2
820	〃	2	941	〃	1
830	임대업	5	942	〃	3
〃	소개업	7	949	〃	4
841	전사업체	5	951	〃	6
842	〃	1	952	〃	5
920	〃	1	959	예식업	2
931	학교	1	〃	기 타	6

바. ⑦번 사업체명은 일치하는가?

상이한 경우는 명부상의 사업체 명을 쓰고 신사업체명을
괄호 내서 하였는가?

또 조사대상이 아닌 법인 표시의 사업체명은 아닌가?

예) 명부상이 사업체명 : 한양운수사

신사업체명 : 서울운수사

기재방법 : 한양운수사 (서울운수사)

사. ⑧번 대표자명은 상기「바」번과 같은 요령으로 검토한다.

(3) ⑪번 연간 총매출액 또는 수입금액란은 만원 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었으며, 종업원수나 자산규모로 보아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과소하지 않은가?

(예) 1,000,000 원 오백만원 등과 같이 기재한 것은 잘못이며 100만원, 500만원으로 기재함이 옳음.

(4) ⑫번 사업주 구분은 「1. 단독」, 「2. 공동」, 「3. 비법인단체」중에서 어느 하나의 번호에만 0표를 했는가?

(예) ⑬번 업주 및 가족 종업원수가 1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구분이 「2. 공동」에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임.

* 산업분류 939는 등록 단체인바, 이 업종의 사업주 구분은 「3. 비법인단체」에만 표시 되는 것임.

(5) ⑬번 종업원 수는 합계가 이상없는가?

(합계는 ③번 규모구분과 일치하여야 함.)

또 업주 및 가족 종업원란이 0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6) ⑭번 조사에 관한 사항중 첨부조사매수는 정확한가?

이 숫자는 표지를 포함한 숫자이므로 최저 4매가 되어야 함.

또 「표지→소유자산→임차자산→채고자산」순으로 첨부 되어 있는가?

(7) 첨부된 조사표는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

(예)

2

 -

0	1
---	---

 ,

2

 -

0	2
---	---

3

 -

0	1
---	---

 ,

4

 -

0	1
---	---

2. 2 차 심사

1 차 심사는 조사표의 틀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반해서 2 차 심사는 자산소분류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1) 1 차 심사를 완료한 조사표를 업종별, 지역별, 일련번호순으로 분류 정리한다.

(2)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에 기재 조사된 자산의 품목이 해당 자산소분류 및 자산세분류 범주에 부합되고, 자산분류번호 및 내용년수가 정당하게 기재되었는가를 검토한다.

(3) 업종으로 미루어 볼때 해당 자산이 가계용이 아닌 사업용 자산인가를 검토한다.

(4)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재생산 가능한 유형 고정 자산인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5) 조사요령서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골동품, 예술품 등과 같은 자산은 아닌가?

(6) 수량 및 단위는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은 평단위로만 기재되어 있는가?

(7) 취득시기, 입차시기는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조사기준일 이후의 취득자산이 조사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8) 신·중고의 구분과 사용구분은 해당번호 하나에만 0표를 하였는가?

(9) 건물의 사업용 비율의 누락은 없으며, 수치는 적정한가?

(이 비율이 50% 이상이면 비 거주용 건물이고 50% 미만이면 거주용 건물로 자산 분류를 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정확여부를 검토한다. 또 건물 이외의 자산에 이러한 비율표시는 없는가?)

3. 3차심사

본 심사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 임차가격, 재고자산 가격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격수치 심사 과정이다. 특히 건물은 취득시기가 다양하고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타자산 보다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1) 모든 자산 가격은 천원 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또박 또박 기재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가격은 아닌가?

(2) 건물의 경우 건물 평가 기준표와 비교하여 합당한가. 이때 취득 시기가 오래된 것은 물가 배율과 잔가율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3) 임차자산의 신품 가격은 임차 시기에 관계없이 77년말 현재의 신품가격인바 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4) 각 조사표의 가격합계는 정확한가를 계산한다.

(5) 이상의 심사를 거친 조사표는 조사 항목 상호간의 타당성

을 최종적으로 재검토 한다.

Ⅲ. 결함 조사표의 처리

3차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조사 대상으로 판명된 조사표는 별도로 정리 보관한다.

Ⅳ. 조사표의 관리

심사완료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관 관리한다.

- (1) 지역별, 산업소분류별, 일련번호 순으로 편철한다.
- (2) 각 철은 일백개 사업체 단위로 한다.
- (3) 표지에는 사업체수와 총 조사표 매수를 기입하고 관계자가 기명 날인한다.
- (4) 위의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지정된 장소에 엄중 보관한다.

〈 제 79 차 〉

1. 심사요령서 검토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음. (별첨 참조)

가. 타부문은 중앙에서 국부담당 직원의 지도를 받아 조사표를 심사하는데 반하여 농수산부는 시군 출장소 직원이 조사표를 심사하므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 중앙에서 상세한 지침(자산분류, 업종분류등)을 하달하여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하였음.

나. 제 6차 지부장회의 (78.1.26) 결과에 따라 “ 111 농업 ” 을 작물생산업, 축산업으로 구분하기로 되었으나 실사과정에서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조사된 조사표를 재분류하기로 하였음.

○ 전수고사 사업체는 조사된 조사구 번호에 따라 작물생산업, 축산업으로 분류함.

예) 2111 축산업, 3111 작물생산업

○ 표본 사업체에서 축산업은 극히 미세한 부분을 차지하나 도수 추정할 경우 결과표상에 자산액이 나타나므로 조사된 조사표의 주업종에 따라 작물생산업, 축산업으로 재분류함.

다. 조사표상의 취득 가격의 가격 단위가 1,000 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취득시기가 오래된 건물 자산의 경우 조사표상에서 취득 가격이 나타나지 않으나 77년말까지의 불가 배율을 적용하

라. 농림어업 부문에서 목장의 고용자 가구와 같이 주거용 건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사시 이를 포착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수조사 대상업체에 관하여 경영자 가구의 주택외의 주거용 건물을 보완조사 하기로 하였음.

가, 그간의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 수정 하였던 각 부문의 결과표, 일본의 결과표와 대비표, 심사요령서 등을 정리하여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4319-

(별첨)

個人企業部門 (農林漁業) 調査票審査要領 (案)

1. 審査目的

農林漁業部門의 個人企業資産調査에 있어서 正確한 調査와 資産
評價額 및 調査票上의 記入誤謬를 審査함으로써 國富統計調査의 精
度를 높이는데 있음.

2. 審査方法

가. 各部門別로 調査員이 調査記入한 調査票에 의한 調査記入上의
誤謬를 審査

나. 調査票上 調査対象家口의 事業体概況과 收入項目등을 볼때 資
産調査의 未備와 資産評價額등 이 納得하기 곤란한 調査票에 대한
보관調査審査하는데 있음.

3. 審査節次 및 期間

市郡出張所 : 9.25 ~ 10.10 審査者指定 調査者와 聴取審査 및
再調査

道事務所 : 10.11 ~ 10.25 審査者指定, 調査票標本審査 및 再調
査

中 央 : 10.1 ~ 10.20 審査指導 및 최종심사

4. 調査票提出

1978.11. (追後通報)

5. 審査要領 (調査票審査)

가. 調査対象 農林漁家の 適正与否

○ 調査対象 標本農漁家와 全数対象農林漁家の 名簿와 一致하는가?

○ 全数対象 農林漁家の 飼育 栽培 및 漁業規模 以上으로 調査되어 있는가?

나. 調査票審査

(1) 基本事項

項 目	審 査 内 訳
市·道, 市郡	市道市郡의 記入方法 및 地域分類符號가 正当한가. ※ “ 地域別分類符號 ” 個人企業資産調査要領 (P46 ~ 48 参照)
産 業 分 類	産業名 및 分類符號記入이 正当한가? ※ 農業 (111), 農業서비스業 (112), 수렵업 (113), 營林業 (121), 벌목업 (122), 漁業 (130)
從 業 員 數	“ 事業体概況 ”의 종업원 合計人員數와 一致한다.
農 耕 地	“ 事業体概況 ”의 農耕地 合計坪數와 一致한가
調査区番號	標本調査区番號와 全数調査区番號가 区分되어 있는가

項 目	審 査 内 訳		
	農業標本→“ 個人企業資産調査要領 ” (P49~54 参照) 漁業標本→“ 農林漁業標本 및 全數調査名單 (P159~203 参照) 全數調査의 調査區番號 및 規模 ① 動 物		
	調査區番號	項 目	飼 育 栽 培 規 模
	2111	韓 牛	40 마리 以上
	2112	젓 소	〃
	2113	고 기 소	〃
	2114	돼 지	100 마리以上
	2115	닭	3,000 수 以上
	② 植 物		
	3111	사 과	3.0 ha 以上 栽培豕口
	3112	배	〃
	3113	복 송 아	〃
	3114	포 도	〃
	3115	감	〃
	3116	귤	〃

項 目	審 査 内 訳	
	3 1 1 7 3 1 1 8 3 1 1 9 ③ 林 業 4 1 1 1 4 1 1 2 4 1 1 3 4 1 1 4 ④ 漁 業 5 1 1 1 5 1 1 2	밤및기타과수 3.0 ha 以上 栽培家口 양 종 이 栽培全家口 상 전 2.0 ha 以上 栽培家口 양 묘 업 國稅庁에서 發行한 營業許可 육 립 업 証이 있는 家口 표 고 버 섯 벌 목 업 연근해어업 30 t 以上 船舶이 있는 家口 내수면어업 양식업을 하는 全家口
農林漁家番號	農林漁家番號가 正當하게 記入되어 있는가 農業標本調査家口→農家經濟調査家口番號 漁業標本調査家口→市郡出張所名單作成 一連番號 全數調査家口→調査區別 名單作成 一連番號記入	

(2) 事業体概況

項 目	審 査 内 訳
所 在 地	里洞 番地の 正確한 記入과 經營主姓名 電話番號記入
從 業 員 數	家族從事者와 常時 및 임시 從業員數가 14 歲以上되 는 家口員이나 고용원이 1 年間 60 日以上 農林漁業 에 從事한 人員을 調査記入되어 있는지
農 耕 地	① 農業(農業標本 및 動植物 全數調査)에 限하여 調査記入되어 있는지 ② 特히 植物全數農家は 樹園地面積規模以上 調査記 入 되어 있는지
農林漁業收入	年間 農林漁業의 年間 總租收入与否 檢討

(3) 有形固定資産

가. 調査項目檢討

項 目	審 査 内 訳
構造 및 用途	“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 ” 上的 構造 및 用途의 内訳과 一致 “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 ” 的 細目分類内訳에 合當 한 調査 品目이 記入되어 있으며 共有는 共有表示 되어 있는가.

項 目	審 査 内 訳
数 量	定수로 表示 (例 : 100, 50, 9)
单 位	“ 資産分類 및 耐用年数表 ” 上의 單位表示되어 있는가
資産分類番號	“ ” 上의 資産分類番號와 耐用
및 耐用年数	年数를 記入 一致한가.
取 得 時 期	新築 또는 取得時期的 年度가 正当한가 ※ 取得時期가 不明確할 경우 適用 ○ 해방전 (1945 年) ○ 해방후 ~ 6.25 以前 (1950 年) ○ 6.25 이후 ~ 4.19 以前 (1960 年) ○ 4.19 이후 ~ 5.16 以前 (1961 年)
新品中古区分	新 · 中古의 正当한 分類와 二重 “ 0 ” 表가 없는지
取 得 価 格	1. 取得價格의 過大過少의 評價되지 않았는지 2. 價格單位를 千원以上 記入 確認 3. 共有일 때 → 負擔價格 4. 分割 · 月賦일 때 → 未払 價格의 計上檢討
時 価	77.12.31. 現在 市場價格으로 評價
所 有 狀 況	自己所有와 貸与의 二重 “ 0 ” 가 없는지

나. 資産分類上의 檢討 (所有資産)

項 目	審 査 內 訳
建 物	1. 住居用建物 및 營業用建물이 包含調査되어 있지 않은지? 2. 農林漁業經營에 使用되는 建物の 누락은 없는지? (事務室, 기숙사, 합숙소등) 3. 住宅 一部에 包含되어 있는 事業用 建物の 누락은 없는지? (창고, 헛간, 가축가금 사육장 등) 4. 事業用 建物使用에 必要한 建物附屬施設의 누락은 없는지? 5. 建物로부터 獨立하여 分離된 附屬施設의 누락은 없는지? (전기, 조명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통풍시설등)
構 築 物	1. 家計와 農林漁業事業用 施設의 区分이 正確한가? 2. 農村漁業 生産을 위하여 架設한 交通시설과 林業用 道路가 正確히 파악되었는지? 3. 發電 送配電의 家庭用과 事業用的 区分이 正確한가? (발전기, 변전기, 계량기, 도란스등) 4. 水利施設 및 給水施設의 調査누락은 없는지? (우물, 소류지, 관정, 펌프, 상하수도, 용수시설, 스프링클러, 양만장, 양어장)

項 目	審 査 內 訳
車輛 및 運搬具	5. 構築物 其他施設 資産의 正確한 파악과 記入이 正當한가? (가축가금 사육장, 온상틀, 싸이로 등) 1. 農林漁業用 車輛 및 運搬具가 正確히 調査되었는가? 2. 事業用 車輛運搬具가 使用比率에 따라 調査記入되었는가? (자동차, 추력, 승용차, 오토바이) 3. 農林漁業用 自動車調査가 營業用과 区分되었는가? 4. 其他 車輛運搬具와 調査누락은 없는가? (자전거, 리어카, 우마차)
船 舶	1. 漁業用船舶으로서 선박부속물(기관, 엔진, 장치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선박의 区分(강선, 목선, 기타선박)이 正當한가. 3. 調査基準(t) ……선박법에 의함.
機械 및 裝置	1. 農林漁業用 機械裝置의 누락은 없는가? 2. 農林漁業用 生産工程의 機能을 갖고 있는 機械의 누락은 없는가?
工具機具 및 備品 工具	1. 耐用年數 1年以上의 것으로 調査되었으며 2個 同一 品目の 合計額이 1,000 원以上일때 調査누락은 없는지? 2. 農林漁業用 基本資産으로서의 調査 누락 여부 검

項 目	審 査 內 訳
	토. 機具 및 備品 1. 事業規模에 따라 機具 및 備品の 누락은 없는 지? 2. 農林漁業事業用 50 % 以上 使用分만 調査되었는 지?
建設仮計定	1. 건조중인 건물, 시설, 기계장치등 조사누락은 없 는지? 2. 調査資産의 価額適用이 支出額으로 計算되어 있 는지?
合 計 動 物	資産分類 中分類以上 合計額을 檢討 1. 성숙동물의 年령 적용이 적당한가? ○ 한우, 젓소, 말 (2 歲以上) ○ 돼지, 면양, 유산양 (10 個月以上) ○ 산란용 닭 (6 個月以上) 2. 動物 全數家口의 飼育規模以下の 數가 調査 되었는가? 3. 年齡未滿이라도 임신된 動物의 調査 누락여부?
植 物	1. 資産分類 및 耐用年數表上的 全植物의 調査되었 는지?

項 目	審 查 內 訳
賃 借 資 産	2. 育成年数(植物評価基準表)의 適用이 正當한가? 3. 30 坪以上 集團栽培한 것만 調査되었는지? 4. 表紙의 樹園地 面積과 對備
賃 借 資 産	1. 政府機關, 法人, 個人으로부터 債借資産이 調査되었는지? 2. 調査된 資産의 分類는 “有形固定資産의 所有資産과 같이 적당하게 分類되었는지?
다. 在庫資産	
未 成 熟 動 物	1. 有形固定資産의 年齡 未滿과 除外된 動物이 調査되었는지? 2. 動物評價基準表에 의한 시가 算出이 適正한가?
未 成 熟 植 物	1. 有形固定資産의 育成年数以下の 全植物이 調査되었는지? 2. 30 坪以上 集團栽培한 것만 調査되었는가? 3. 植物評價基準表에 의한 時價算出이 適正한가?
完 製 品	1. 在庫資産의 分類가 (완제품, 저장품, 기타)가 적정한가.

項 目	審 査 內 訳
저 장 품	2. 販売를 目的으로 生産, 製造되고 교환가치 있는 資産으로 완제품이 調査되었는가? 1. 生産 및 製造에 再投資할 보관중인 제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2. 自己 生産된 제품이 調査되었는지?
其 他	1. 再生産을 위하여 使用될 原材料調査

〈 제 80 차 〉

1978. 9. 29.

1.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조사표 심사요령서를 검토한 결과 자산
평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이를 타부문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음. (별첨참조)

가. 취득년도

(1) 취득년도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 자산재평가 년도를 알때

$$\text{취득년도} = \text{자산재평가 년도} - \frac{\text{내용년수}}{2}$$

○ 자산재평가 사실이 없을때

$$\text{취득년도} = 1977 - \frac{\text{내용년수}}{2}$$

위의 방법은 동일한 자산이라도 자산재평가 사실이 있느냐에 따
라서 자산취득년도가 상이한 모순이 있으나 정부, 법인부문은 오래
된 자산에 대하여 거의 모든 자산이 재평가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음.

(2) 1917년 이전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물가배율표도 1918년부터 작성 되었으므로 1918년으로
통일함.

나. 취득가격

(1) 취득 가격이 불명인 경우

○ 취득 가격을 1천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격 = 건물평가 기준표상의 평당가격 × 평수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기타자산)

a. 재평가액 이용

취득가격 = 재평가액 × $\frac{1}{\text{잔가율}}$ × 재평가 년도의 물가배

율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b. 동종자산 평가액 이용 (취득가격, 재평가액, 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유사기관의 동종자산의 평가액을 취득년도 수량등을 참작하여 이용함.

취득 가격을 1천원 미만으로 표시될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 가격을 산출하여 취득 가격이 1천원 미만으로 표시된 경우 자료처리(Punch)가 곤란하므로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Gross 평가액을 1천원으로 나눈 수치가 물가배율과 가장 근사한 년도를 취득년도로 간주함.

단, 이와 같이 취득년도를 조정할 경우 취득년차별 분류에서 본래의 취득년도와 변동이 예상되나 취득 가격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1950년 이전 자산이므로 취득년도별 분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 중고자산

(1) 취득년도의 보정

한국은행에서는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자산이 신품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한 시기를 취득년도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년도를 보정하였으나 이는 소유자 주의에서 볼때는 소유주체가 달라질 경우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구입하였을 경우등)가 발생하므로 추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음.

○ 중고품 사용년수를 알때

$$\text{수정한 취득년도} = \text{기입된 취득년도} - (\text{내용년수} \times 2 / 1)$$

○ 중고품 사용년수를 모를때

$$\text{수정한 취득년도} = \text{기입된 취득년도} - (\text{내용년수} \times 1 / 2)$$

(2) 취득 가격의 보정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중고품의 취득가격 보정방법은 아래와 같으나 중고품 사용년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경과년수가 오래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중고품 사용년수를 파악할 수 없을때 잔가율 0.3161 (내용년수의 1/2이 경과한 후 잔가율)을 적용시키면 평균 개념에 어긋나므로 이 문제를 추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음.

수정한 취득가격 = 기입된 취득가격 $\times \frac{1}{\text{잔가율}}$ $\times$ 기입된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div$ 수정할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라. 동 식 물

동식물의 취득년도는 동식물이 미성숙 동식물에서 유형고정 자산이 되는 시기를 말하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취득시기 = 1977 - (육성년수 - 미성숙 시기)

취득가격 = 동식물 평가기준표의 단위당 가격 $\times$ 수량

단, 일본의 경우는 취득년도를 기준지에서 연령을 뺀 시기(년도)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성숙 시기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숙 기간을 뺀 성숙된 첫회를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기로 함.

첨부 ; 조사표 심사요령서(정부부문)(안)

(별첨)

정 부 자 산 부 문 조 사 표 보 정 지 침 (안)

1. 취득년도

가. 취득년도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보 정 방 법		비 고
취득년도 = $1977 - (\text{내용년수} \times \frac{1}{2})$ < 예 1 > 내용년수가 60 년인 경우의 취득년도 $1977 - (60 \times \frac{1}{2}) = 1947$		
내 용 년 수	취 득 년 도	
60	1947	

나. 1917년 이전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보 정 방 법	비 고
1918년으로 통일	

2. 취득가액

가. 취득가액이 불명인 경우

(1) 취득가액을 1천원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보정방법	비고
(1) 건물 취득가액 = 「건물평가기준표」상의 평당가격 × 평수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예 2> 철근 콘크리트조 사무실 100 평을 1963년에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 평당가격 × 평수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2,857천원 = 200천원 × 100평 ÷ 7 (2) 기타자산 a.) 재평가액 이용 취득가액 = 재평가액 × $\frac{1}{\text{잔가율}}$ × 재평가년 도의 물가배율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 1963년의 물가배 율 7 잔가율의 경과년수 = 재평가년도 - 취득년도

보 정 방 법				비 고
< 예 3 > 아래 자산의 취득가격을 보정할 경우				
자산의구분	내용 년수	취득 년도	취득 가격	재평가년도 및 평가액
수리급수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40	1969		1975년 1,500 천원
취득가격 = 재평가액 × $\frac{1}{\text{잔가율}}$ × 재평가년도의 물가배율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861 천원 = 1,500 천원 × $\frac{1}{0.708}$ × 1.3 ÷ 3.2 b) 「평가기준표」이용 취득가격 = 단위당가격 × 수량 ÷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c) 동종자산 평가액 이용 (취득가격 재평가액 액, 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유사기관의 동종자산의 평가액을 취득년도와 수량등을 참작하여 이용함.				

나. 취득가격이 1천원미만으로 표시될 때

보정 방법	비고										
취득가격 = 1천원 취득년도 = 취득가격이 1천원에 해당되는 년도 < 방법 > 취득가격이 불명인 자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Gross 평가액을 산출하여 동 평가액을 1천원으로 나눈 수치가 물가배율과 가장 근사한 년도를 취득년도로 함. < 예 4 > 철근콘크리트조사무소 · 취득년도 1930년 취득가격 0천원 수 량 25평 < 평당가격 > < 평수 > 200천원 × 25 ÷ 1천원 = 5,000 배 <table> <tr> <td>년도</td> <td>물가배율</td> <td></td> </tr> <tr> <td>1948</td> <td>3,000</td> <td rowspan="3">→ 1947년에 가장 근사함</td> </tr> <tr> <td>1947</td> <td>5,000</td> </tr> <tr> <td>1946</td> <td>13,000</td> </tr> </table> 취득년도 1947년 취득가격 1천원	년도	물가배율		1948	3,000	→ 1947년에 가장 근사함	1947	5,000	1946	13,000	
년도	물가배율										
1948	3,000	→ 1947년에 가장 근사함									
1947	5,000										
1946	13,000										

3. 중고자산

가. 취득년도의 보정

보 정 방 법	비 고
수정할 취득년도 $= \text{기입된 취득년도} - \text{중고품사용년수}$ $= \text{기입된 취득년도} - (\text{내용년수} \times \frac{1}{2})$	중고품 사용년수를 모를 때

나. 취득가격의 보정

보정방법	비고										
수정할 취득가격 $= \text{기입된 취득가격} \times \frac{1}{\text{잔가율}} \times \text{기입된}$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div$ 수정할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 예 5 > 아래자산을 보정할 경우	잔가율의 경과년수 = $\text{기입된 취득년도} - \text{수정할 취득년도} = \text{중고품 사용년수}$										
<table border="1"> <tr> <th>내용년수</th><th>취득년도</th><th>취득가격</th><th>중고품</th><th>사용년수</th></tr> <tr> <td>60</td><td>1968</td><td>177천원</td><td>4</td><td>년</td></tr> </table>	내용년수	취득년도	취득가격	중고품	사용년수	60	1968	177천원	4	년	
내용년수	취득년도	취득가격	중고품	사용년수							
60	1968	177천원	4	년							

보 정 방 법	비 고
수정할 취득년도 = 기입된 취득년도 - 중고품 사용년수 1964 = 1968 - 4 수정할 취득가격 = 기입된 취득가격 $\times \frac{1}{\text{잔가율}}$ $\times$ 기입된 취득년도의 물가배율 $\div$ 수정할 취득 년도 의 물가배율 123 천 원 = 177 천 원 $\times \frac{1}{0.856} \times 3.2 \div 5.4$	내용년수 60 경과년수 4 년의 잔가 율은 0.856 임

4. 동 식 물

보 정 방 법	비 고
가. 취득년도는 (77 - 육성년수)로 함. 나. 취득가격은 「 동식물 평가기준표 」의 단위당가격 $\times$ 수량으로 산출함.	

5. 재평가란의 보정

가. 시가의 이기 (移記)

보정 방법	비고
재평가액 대신 시가난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재평가액 난에 이기하며 이때 재평가년도를 1977년으로 함.	

나. 취득가격의 이기 (移記)

보정 방법	비고
재평가액과 시가난이 모두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액 난에는 취득가격을 재평가년도 난에는 취득년도를 기입함.	

6. 회계명 정부자산의 종류

보정 방법	비고
누락 및 타당성 여부 확인	

7. 대여자산비율

보정방법	비고
1. 대여처의 확인 2. 대여비율의 %이하 절사	일반행정관서 상호간 의 대여는 대여로 간주하지 않음.

〈 제 81 차 〉

1978. 10. 2.

1. 중고품 취득시기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 동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취득시기 결정방법

1 안) 중고품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민경제내에 기여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함.

2 안) 현재의 소유주체가 중고품자산을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함.

나. 이론적 근거

1 안) 1977년말 현재의 극부통계조사는 국민경제내에 Capital Stock가 언제 형성되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자산이 생산 활동에 처음 투입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함.

2 안) 국민경제는 개별경제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Stock의 누적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경제가 소유하고 있는 개별경제의 Stock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중고품 자산이 국민경제내에 신품으로 기여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할 경우 취득년 차별 분류에서 본래의 소유주체와 업종이 달라지는 모순이 있으므로 중고품으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함.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시기를 결정하였음)

다. 결 론

이와 같은 2 가지 방안은 총자산액 (Gross) 개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Gross 개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2. 총자산액 (Gross) 개념

가. 1977 년도 국부통계조사시 총자산액 (Gross) 의 개념

그 재화를 조사기준년도에 신품으로 취득 (구입)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시장가격으로 파악한 가격이며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신품 자산 평가 방법

총국부 = 취득가격 $\times$ 물가배율

순국부 = 취득가격 $\times$ 물가배율 $\times$ 잔가율

2) 중고품 자산 평가 방법

$$\text{총자산액} = P \times \frac{1}{0.3161} \times R$$

(단, 0.3161 은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 이 경과한 후의 잔가율임.)

$$\text{순자산액} = P \times R \times r$$

P = 취득시 가격

R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

r = " " " 잔가율

3) 임차자산 평가방법

총자산액 = 신품가격

(건물의 경우 건물평가기준표에 준한 평가액)

순자산액 = 총자산액 (신품가격) × 잔가율

단, 임차시 중고품의 경우 임차시 경과년수를 내용년수에 $1/2$ 로 하고 임차후 경과년수를 합산한 년수로 한다.

나. 68년도 국부통계조사시 총자산액 (Gross) 개념

그 재화를 1968년에 새로이 취득(구입)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시장가격으로 파악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 재화의 신품가격이다.

총국부 = 취득가격 × 물가배율

순국부 = 취득가격 × 물가배율 × 잔가율

다. 일본의 총자산액 (Gross)의 개념

그 자산을 1970년 가격으로 새로이 취득하면 얼마를 요하는가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단, 가계부문은 신품 가격을 총자산액으로 간주하였음)

가) 소유자산

취득년도별 취득가격 × 물가배율

나) 임차자산

임차수량 × 1970년 평균 가격

라. 총자산액 (Gross)의 개념 설정 근거

1) 77년 우리나라 국조사

가) 취득시 신품, 중고품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

나) 국부는 국민경제내의 자산이므로 자산이 국민경제내에 들어온 시점의 자산상태 (신품, 단, 수입품의 경우 중고품이면 그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다) 취득년도별로 볼때 타부문에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 최초 취득년도 (신품취득년도)가 77년말 현재의 소유에만 한정되고 그 자산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시작한 년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2) 70년 일본 국부통계조사

가) 순자산액 (Net) 평가에서는 동일함.

나) 자산의 평가기준은 생산능력에 입각하는 것이 원칙 (실제 평가에서는 편의상 정율법 적용)이므로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신품과 동일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다)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서 개별경제를 예상하게 되므로 신품 및 중고품 자산에 의한 복합적인 투자 기준설정에 유용

라) 조사 및 기계집계가 용이

마. 이와 같이 중전의 총자산액 (Gross) 개념과는 상반된 이론이 정립될 수 있어 이 문제는 본 국부조사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 관계 참고자료를 연구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제 82. 33차〉

1978. 10. 5. ~ 10. 6.

1.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종합부문 결과표를 일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별첨 참조)

가. 공통 수정보완 사항

1) 표측의 재고자산 자산분류는 농림어업부문(개인기업)의 재고자산(동식물)조사가 연령별, 수령별로 구분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재료, 반제품 및 재고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재고자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고 소동물 및 미성숙 동식물은 기타에 포함하여 제표하기로 함.

2) 표측의 기계 및 장치 자산분류는 산업별 용도에 따라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요부문에 한하여 10개 이내의 범위에서 세분하기로 하고 이를 추후 작성하기로 함.

3) 표수의 용어 정부기업은 정부기업과 정부관리기업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공공기업으로 수정함.

4) 각 결과표의 단위는 10억원으로 결정함.

나.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경제부문별 자산 소분류별 자산액

표수의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은 타부문과 분류기준이 다르므로 삭제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동자산이 공공부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함.

- 정부 민간별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산업소분류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 민간기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 소유주체자산

소분류자산액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 중분류 취득년도별 유형고정 자산액

- 민간 기업 제조업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 소유주체 자산 중분류 취득 년도별 유형고정 자산액

위의 공동 사항을 참조하여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음.

다. 수정 보완사항

- 자산소분류별 국부총액

표두의 용어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구성비, 자산소분류별 구성비를 각각 대분류별 구성비, 중분류별 구성비로 수정함.

- 소유주체 자산 소분류별 자산액

표 4 경제부문별 자산소분류별 자산액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산업소분류별 자산액(소유자산)

타부분과 분류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소유자산 뿐만 아니라 사용자산의 결과표도 산업소분류별로 작성하기로 함.

- 민간 기업의 소유주체 자산세분류별 자산액

표측의 자산분류를 공통자산은 4단위, 기계 및 장치 부문은 6단위까지 작성하기로 함.

첨부: 종합부문 결과표 8 차 회의결과 참조

< 제 84 차 >

1978510.11.

1. 종합부문 결과표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종합부문 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82, 83 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공통사항을 참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별첨참조)

가. 원안과 같이 결정한 사항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상품, 중고품 유형 고정 자산액 단, Gross 개념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중분류별 평균 내용년수 평균 경과년수 및 경과율
- 민간기업제조업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 소유주체 자산 중분류별 평균 내용년수 평균 경과년수 및 경과율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자산중분류 자기사용 대여별 자산액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자산중분류 자기소유 임차별 자산액 (사용자산)
- 지역별 자산대분류별 자산액
- 경제부문 자산중분류 지역별 유형고정 자산액
-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 중분류 지역별 유형 고정 자산액
- 민간기업 산업대분류 자산대분류 종업원별 자산액

나. 추가사항

- 가계부문 가구주 직업별 가계자산
- 근로자 가구의 연간 소득 계층별 가계자산

근로자 가구를 제외한 비농가와 농가의 소득은 조사결과의 정도가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계층별 결과표만 작성하기로 함.

2. Gross 개념 설정

제 81 차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총자산액 (Gross)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따라서 이 문제는 본국부조사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한국은행 김재수 조사역, 국민은행 남규홍 조사역이 각각 이론적인 근거 (타당성)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에 상정 결정하기로 하였음.

가. 신품자산을 취득한 경우

총자산액 = 취득가격 × 불가배율 (신품자산 경우는 동일함)

나. 중고품 자산을 취득한 경우

1 안) 중고품 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민경제내에 기여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위방법에 따라 Gross 를 산출하는 방법 (김재수 조사역 담당)

2 안) 현재의 소유주체가 중고품 자산을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위방법에 따라 Gross 를 산출하는 방법 (남규홍 조사역 담당)

첨부 : 종합부문 결과표 (안)

(별첨)

종합 부문결 과표 (안)

1. 자산소분류별 국부총액 (소유자산)
2. 정부민간별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3. 소유주체 자산 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4. 경제부분자산 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5.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소분류별 자산액 (소유 자산)
6. 산업소분류 자산소분류별 국부총액 (소유자산)
7. 민간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 소유주체자산소분류별 자산액 (소유자산)
8.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자산중분류, 취득년도별 유형고정 자산액 (소유자산)
9. 민간기업제조업,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 소유주체, 자산중분류, 취득년도별 유형 고정자산액 (소유자산)
10.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자산중분류 신품 중고품 유형 고정자산액 (소유자산)
11.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자산 중분류별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및 경과율 (소유자산)
12. 민간기업제조업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 소유주체 자산중분류별 평균 내용년수 평균경과 년수경과율 (소유자산)
13.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자산중분류 자기사용대여업 자산액 (사용자산)
14.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산업 중 분류 자기소유임차별 자산액 (사용자산)
15. 지역별 자산대 분류별 국부총액 (소유자산)
16. 경제부분 자산중분류 지역별 유형 고정 자산액 (소유 자산)
17.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 소유주체 자산중분류 지역별 유형 고정 자산액 (소유자산)
18. 민간기업 산업중분류 자산중분류 종업원 규모별 자산액 (소유자산)

1. 자산소분류별

자 산 분 류	총 자산액	순 자산액	총순비율	총 자
				구 성 · 비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 물				
101주 거 용 건 물				
102비 수 거 용 건 물				
103건 물 부 속 설 비				
11 구 축 물				
111교 통 시 설				
122발 천 및 송 배 전 시 설				
123수 리 및 급 수 시 설				
124기 타 시 설				
2. 재 고 자 산				

2. 정 부 민 간 별 자 산 소

자 산 분 류	총 자 산 액	
	정 부	민 간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 물		
101 주 거 용 건 물		
102 비주 거 용 건 물		
103 건 물 부 속 설 비		
11 구 축 물		
111 교 통 시 설		
122 발전 및 송배 전 시 설		
123 수 리 및 급 수 시 설		
124 기 타 시 설		
2. 재 고 자 산		

주 :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사회간접자본, 정부

분류 별 자 산 액 (소 유 자 산)

(단 위 : 백 만 원)

	순 자 산 액	
	정 부	민 간

기업 정부관리기업 포함 .

3 . 소 유 주 체 자 산 소 분 류 별

자 산 분 류	총 액	정 부				
		합 계	일 반 정 부			
			소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사 회 간접 자본
총 계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 물						
101 주 거 용 건 물						
102 비주 거 용 건 물						
103 전 물 부 속 설 비						
11 구 축 물						
111 교 통 시 설						
122 발 전 및 송 배 전 시 설						
123 수 리 및 급 수 시 설						
124 기 타 시 설						
2. 재 고 자 산						

4 . 경 제 부 문 자 산 소 분 류

(총 자산액)

자 산 분 류	총 액	공 공 부 문			
		합 계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사회 간접자본
총 계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물					
101주거용 건물					
102비주거용 건물					
103건물부속설비					
11 구축물					
111교통시설					
112발전·냉난방·전·신 설					
113수리·및·급수·시설					
114기타 시설					
2. 재고 자산					

별 자산액 (소요 자산)

순자산액)

(단위 : 100 만 원)

[illegible]

5 . 기 업 부 문 의 산 업 대 분 류 소 유 주

(총자산액)

자 산 분 류	전 산 업							합 계
	총 액	정 부 기 업			민 간 기 업			
		제	정 부 기 업	정 부 관 리 기 업	제	법 인	개 인 기 업	
총 액								
1. 유 형 고 정 자 산								
10 건 물								
101 주 거 용 건 물								
102 비 주 거 용 건 물								
103 건 물 부 속 설 비								
11 구 축 물								
111 교 통 시 설								
22 발 전 및 송 배 전 시 설								
23 수 리 및 급 수 시 설								
24 기 타 시 설								
2. 재 고 자 산								

6. 산업소분류 자산소분류별

	전산업	농업수렵			
		합계	농업 및		
			소계	작물생산업	축산업
총액					
1 유형고정자산					
10 건물					
101 주거용건물					
11 구축물					
111 교통시설					
2 재고자산					

국부총액 (총자산액, 순자산액)

(단위 : 백만원)

업		임업 및 어업			
수렵업		임업			어업
농업·수산업	수렵업	소제	영림업	벌목업	어업

7. 민간기업체조업 및 도·소매업의 산업중분

(총 자 산 액

자 산 분 류	제 조 업 체			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총 액	법 인	개인기업	총 액	법 인	개인기업
총 액						
1. 유형 고정 자산						
10 건 물						
101 주 거 용 건 물						
102 비주 거 용 건 물						
103 건물부속 설 비						
11 구 축 물						
111 교 통 시 설						
122 활전및송배전시 설						
123 수리및급수시 설						
124 기 타 시 설						
2. 재 고 자 산						

8.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소유주체자산중분

(총 자 산 액 ,

자산분류취득년도	전 산 업						
	총 액	정 부 기 업			민 간 기 업		
		제	정 기	부 관 리 기 업	제	법 인 기 업	개 인 기 업
1. 유형고정자산							
77년							
76							
75							
74							
73							
72							
71							
70							
69							
67 ~ 68							
62 ~ 66							
51 ~ 61							
50년이전							
10. 건 물							
11. 구 축 물							

9. 민간기업 제조업도소매업의 산업종분류소유주체 자산중

(총 자 산 액 ,

자산분류취득년도	3. 제조업체			3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원		
	총액	법인	개인기업	제.	법인	개인기업
유형 고정자산						
77						
78						
75						
74						
73						
72						
71						
70						
69						
67 ~ 68						
62 ~ 66						
51 ~ 61						
50년이전						
건물						
77						
76						
75						
74						
73						
72						
71						
70						
69						
67 ~ 68						
62 ~ 66						
51 ~ 61						
50년이전						
구축물						

분류취득년도별유형 고정자산액 (소유 자산)

순 자산 액)

(단위 : 백 만 원)

32. 섬유의복및가죽산업			33.
계	법 인	개 인 기 업	

10 . 기업 부문의 산업대분류자산중분류 신

		전								
		총 액			정 부 기 업					
		총 액	신 품	중 고 품	합 계			정 부 기 업		
					계	신 품	중 고 품	계	신 품	중 고 품
총	유형 고정 자산 11 건 물									
순										
총										
순										

11.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소유주체자산중분류별

자 산 분 류	전 산 업						
	총 액	정 부 기 업			민 간 기 업		
		계	정부기업	정부관리 기업	계	법인	개인
1. 유형 고정 자산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경과율(%)							
10. 건 물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경과율(%)							
20. 구 축 물							

12. 민간기업제조업 도·소매업의

산업중분류소유주체자산중분류별평균내용년

자 산 분 류	제 조 업			3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총 액	법인기업	개인기업	계	법인기업	개인기업
1. 유형 고정 자산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경과율(%)						
10. 건 물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경과율(%)						
11. 구 축 물						
.....						

13.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 자산중분

[illegible]

14. 기업부문의 산업대분류자산

	전 산											
	총 액			정 부 기 업								
				총 액			정 부 기 업			정부관리기업		
	총액	자기 소유	임 차	합계	자기 소유	임차	계	자기 소유	임차	계	자기 소유	임차
1. 유형 고정 자산												
10. 전 물												
11 기 계 및 장 치												
12 선 산												
13 차 량 및 운 반 구												
14 공 구 및 가 구 비 품												

중분류 자기소유임차별 (사용자산)

(단위 : 100 만원)

[illegible]

15 지역 별 자산 대분류

지 역 별	순 가 산 액					
	합 계		유 형 고 정 자 산		재 고 자 산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전 서 부 경 장 총 통 전 전 경 경 제 해	국	울 산 기 원 북 남 북 남 주 외				

16. 경제부분 자산중분류지역별

(총 자산액,)

지 역	자 산 분 류	총 액	공 공 부 문			
			소 계	정 부	지방자치 단체	사회 간접 본
전 국	1 유 형 고 정 자 산					
	10 건					
	11 구 축					
	12 기 제 및 장					
	13 선					
	14 차 량 및 운 반					
	15 공 구 기 구 및 비					
	16 전 설 가 계					
서 울	17 대 동 식					
	1 유 형 고 정 자 산					
	10 건					
	11 구 축					
	12 기 제 및 장					
	13 선					
	14 차 량 및 운 반					
	15 공 구 기 구 및 비					
울	16 전 설 가 계					
	17 대 동 식					

17. 기업부분의 산업대분류소유주체자산중

(총 자산액,

지 역	자 산 분 류	전 산 업						
		총 액	정 부 기 업			민 간 기 업		
			제	정 기	부 업 관리기업	제	법인 기업	개인 기업
전 국	1 유 형 고 정 자 산							
	10 건							
	11 구 축							
	12 기 계 및 장 치							
	13 선							
	14 차 량 및 운 반 구							
	15 공 구 기 구 및 비							
	16 전 설 가 제 정							
	17 대 동 식							
서 울	1 유 형 고 정 자 산							
	10 건							
	11 구 축							
	12 기 계 및 장 치							
	13 선							
	14 차 량 및 운 반 구							
	15 공 구 기 구 및 비							
	16 전 설 가 제 정							
	17 대 동 식							

한글서체: 맑고 밝은 느낌의 폰트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순자산액)

(단위 : 100만원)

[illegible]

18. 민간기업산업분류자

종업원수	농림어업 및 수산업						
	총액		법인기업		개인기업		
	유 고 자	형 정 산	재 고 자 산	유 고 자 산	재 고 자 산	유 고 자 산	재 고 자 산
총액							
4인 이상							
5인 이상 ~ 9인 이상							
10 " ~ 19 "							
20 " ~ 49 "							
50 " ~ 99 "							
100 " ~ 199 "							
200 " ~ 299 "							
300 " ~ 499 "							
500인 이상							

산대분류종업원별자산액

[illegible]

< 제 85 차 >

1978. 10. 12

1. 총자산액 (Gross) 개념 설정

제 81 차 본 실무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중고품의 취득시 총자산액 개념을 재 검토한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Gross 평가 방법

1 안) 중고품 자산이 신품으로서 처음 국민경제내에 기여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그 취득 가격에 물가배율을 승하여 Gross 를 산출하는 방법
(우리나라 제 1 회조사시 평가방법 및 제 2 회 조사지침서상의 평가 방법)

2 안) 현재의 소유주체가 중고품 자산을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간주하고 그 취득가격에 물가배율을 승하여 Gross 산출하는 방법 (일본의 1970 년 국부자산 평가방법)

나. 일본의 Gross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

(1) 평가방법

그 자산을 1970 년 가격으로 새로이 취득하면 얼마를 요하는가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단, 가계부문은 신품 가격을 총자산액으로 간주하였음)

㉠ 소유자산

취득년도별 취득가격 $\times$ 물가배율 단, 취득가격은 기업의

구입가격임.

④ 임차자산

임차수량 × 1970 평균가격

(2) 국민은행에서 번역 발간한 일본의 국부조사 (Page 9)에
는 "총자산액은 감가상각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예컨대 기
업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기계중 동종의 기계는 취득년도 가
달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중고품 자산을 일본의 Gross 평가방법에 의거 Gross 를
산출할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
음.

(3) 일본이 가계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1) 항의
2 안으로 Gross 를 평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나 그근거
는 불명함.

㉠ Gross 보다는 Net 평가를 중시

㉡ 중고품자산이 전국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

㉢ 평가방법이 간단함.

㉣ 비교적 경과년수가 오래된 물가배율은 최근년도의 물가
배율보다 정확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다. 투자계획 수립에 이용

(1) 투자 총액은 Gross 와 Net 사이에서 결정됨.

(2) 신규투자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품과 중고품이 복합
적으로 이루어지나 중고품은 국민경제내에 자산증가로 볼수 없고

(단, 수입품의 경우 제외) 국민경제내에 자산 Stock 가 증가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품자산으로 판단됨.

(3)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신품총액 즉 Gross 로 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 론

일본평가 방법의 검토, 투자계획 수립 이용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번 국부통제조사에서는 Gross 개념을 일본과는 달리 제 I 안 방법으로 접근 평가하기로 하였음. 단, 취득시기 결정은 중고품 자산이 신품으로 처음 국민경제에 기여한 시기를 취득시로 간주할 경우 현재의 소유주체, 열종이 달라질 우려가 있고 신품, 중고품별 취득년도별로 분류할 경우 명백할 것이므로 현재의 소유주체가 중고품을 구입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결정함.

2. 기타사항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하여 9. 16. 부더 종합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인바 각지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 하였음.

土地 및 山林資産 推計를 위한
實務者 會議錄編

< 제 36 차 >

1978 5. 19.

1. 기본계획 수립

재생산 불능 자산인 토지 및 산림자산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작업인 만큼 담당기관 뿐만 아니라 군부 통제조사 관계기관도 적극적인 자세로 본 업무에 임하여 주길 당부하였고, 각부문별 기본 계획을 조속히 작성하여 5. 26 개최되는 실무자회의에서 기본계획, 부문별 문제점, 연구가 필요한 분야 등을 검토기로 하였음.

2. 자료수집

가. 국내자료 수집

각부문별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5. 26 까지 파악토록 하였음.

- 한국은행 : 국민대차대조표와 토지 및 산림자산과의 관계

(토 지)

- 농수산부 : 지역별, 지종별 면적, 등급별 가격 (농경지 면적)
- 한국산업은행 : 지역별, 지목별 과세표준액 및 등급 (지적통제)
- 지역별, 등급별 시가 (한국감정원자료)

(산 립)

- 산림청 : 지역별 수종별 면적
- 수종별 육성기 및 임목축적량

나. 해외자료 수집

토지 및 산림자산의 추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존 통계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추계방법을 취득하여 활용함은 물론 구체적인 이론, 방법론등의 습득이 필요할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직접 습득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하였음.

3. 기타사항

가.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각기관별로 확보토록 하되 예산 전용이 필요할 경우 당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음.

나. 토지 및 산림자산의 작업과정중에 내무부, 한국감정원의 자문사항이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의 실무자를 본 회의에 참석시켜 자문토록 하였음.

다. 제 2 차 실무자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5. 26 14:00

(2)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안 건 : 각부문별 기본계획 검토

< 제 87 차 >

1978. 5. 26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국내 자료를 수집하고 동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토 지)

가. 자료현황

토지시가조사 (한국감정원) : 전국 35 개시, 122 개읍, 35 개읍면등을 대상으로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장지대, 농경지대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시가 조사하였음. (매년 4·8 월말 현재)

전국토지시가조사 (농협협동조합) : 전국을 대상으로 동, 읍면까지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장지대, 농경지대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시가조사 하였음. (매년 4, 8 월말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내무부) : 과세지인 모든 토지에 대하여 1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1 - 96 등급으로 구분하였음. (매년 1, 7 월)

비 고 : 가격년액 3·200·000 원 (96 등급) 이상은 200, 000 원 증가할때마다 96 등급에서 각 1 급씩 진급함.

나. 동자료 이용상의 문제점

(1) 세수목적인 과세시가 표준액의 가격과 현실가격과는 격차가

کم،

(2) 현실가격에 가깝고 동, 읍, 면까지 세분되어 있는 전국 토지 시가조사(농협협동조합)를 이용할 경우 지종별(상업, 주택, 공장, 농경지대), 등급별(상, 중, 하) 면적을 파악할 수 없음.

다. 이용 방법

따라서 전국 동, 읍, 면까지 작성되어 있는 전국 토지시가지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세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등급별 면적, 지적통계 자료를 간접 이용하여 추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산 립)

가. 자료현황

전국산림기본통계조사(산림청) : 74 말 현재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항공 촬영)하고 매년 증감분을 행정통제 방식에 의거 임야면적, 임목축적량등을 파악하고 있음.

나. 이용방법

(1)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종설(현상태 있는대로 파악하는 방법(시군별)에 의거 동자료를 이용하되 시, 군까지 제표가 가능 하도록 지목설(현상태와는 달리 법적으로 지목이 결정되어 있음. (동, 읍, 면) 을 간접 이용함.

○ 임 야 지 : 지적별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므로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급(7등급)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함.

○ 임목축적량 :

반경 6cm이상의 임목 : 재적면적을 파악하여 평가함.

반경 6cm이하의 임목 : 인공림에 한하여 육성가를 이용 평가함. (자연림제외)

2. 토지 및 산림의 평가를 위하여 가부분별 기본 계획을 6. 10 까지 확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3. 제 3 차 실무자회의 개최

(1) 일 시 : 78. 6. 1 10:00

(2) 장 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3) 안 건 : 토지 및 산림기본계획 검토

< 제 88 차 >

1978. 10. 16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 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각지부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동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안을 작성 10·18 개최되는 본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가. 임 지

산림청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임지면적 및 가격 평가방법을 검토한 결과 동 평가는 산림청 소관사항 뿐 아니라 타부문(임지를 제외한 전지목)과도 통일된 기준하에 결정하여야 하므로 나)항과 같이 검토하였음.

(1) 토지과세 자료로 내무부에서 작성 발행한 76년말 전국토지 가격통제표를 기준으로 직결한 조정율을 가하여 77년말 임지가를 산출함.

(2) 임지면적은 77년말 현재 지적통제에 준함. 단, 지목상 비임지는 지가계산에서 제외함.

나. 임 목

(1) 자료현황

전국산림기본통계조사 : 74년말 현재 아래방법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항공촬영)하고 매년 증감분을 행정통계방식에 의거 임야면적 임목축적량을 파악하고 있음.

전국임상도 : 일정한 면적을 정하여 흉고직경, 밀도(수관면적)

수종 연령별 등을 구분조사함.

생산능력급수 : 토질 등을 감안하여 산림의 생산능력은

1 - 5 등급으로 구분 하였음.

도 수 : 임야지의 경사도를 1 - 6 등급으로 구분 하였음.

(이상의 전국임상도, 생산능력급수, 도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산림의 축적량이 파악되어 있음)

(2) 평가방법

㉠ 성림지 (평균흉고직경 6cm 이상 임목)

○ 추계방법

임목축적 $\times$ 임목가 (거래가격)

○ 추계자료

임목축적 : 77년말 현재의 산림기본통계의 임목축적

임 목 가 :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군별 임상별로 77.6 - 12 까지의 민유림 (사유림, 공유림)의 거래가격을 파악함.

단, 국유림은 각 관리소별로 77년 임목매각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함.

㉡ 치수림 (평균흉고직경 6cm 미만)

조림치수

○ 추계방법

년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무육 (撫育) 투자액으로 파악

○ 추계자료

조립실적 통계에 준함.

천연치수

천연치수의 면적, 수량의 집계방법,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노동력에 비추어 경제력이 희박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함.

2. 토지(과세지)자산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고 동자료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자료현황

전국토지 등급가격통계(내무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고 있는 토지등급 가격을 지목별, 등급별,

시군별로 작성되어 있음. (76년말 현재)

전국토지시가조사(한국감정원): 전국을 대상으로 동, 읍, 면

까지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장지대 농경지대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시가조사하고 있음.

(매년 4월말 현재)

나. 동 자료이용상의 문제점

세수목적인 전국토지 등급가격(내무부)자료는 현실가격과 격차가 클것으로 예상되고 현실가격에 가까운 전국토지 시가조사(한국감정원)자료를 이용할 경우 지목별, 등급별 면적을 파악할 수 없음.

다. 이용방법

자료 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목별로 구분 평가하는 방법을 각 지부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상업, 주택, 공장, 농경지대

전국 토지 등급가격(내무부)자료의 동, 읍, 면별, 지목별 등급별 면적과 전국토지 시가조사(한국감정원 및 농협중앙회)자료의 동, 읍, 면별, 지목별 등급별 가격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상기 지목의 지역 등급별 가격을 조정함.

상기지목을 제외한 전토지

- 1 안 위에서 등급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평균배율 지수를 적용하여 지목별, 등급별 가격을 산출하는 방안
- 2 안 현실가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표본조사하는 방안

< 제 89 차 >

1978. 10. 18

1. 평가 지침서 작성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 (초안)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각지부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항목별로 수정, 보완하여 10·21 개최되는 본 실무자회의에 재 상정하기로 하였음. (별첨 참조)

- 조 사 목 적 (한국은행 김 재 수 조사원)
- 지역 및 자산의 범위
- 제 표 및 공 표 (국민은행 남 규 홍 조사역)
- 조사 및 평가 방법 (농수산부 이한용, 한국산업은행 김춘식 조사역)
- 국부통제본조사시 조사된 정부, 법인부문의 토지자산 결과를 본 토지 추계 작업에 이용하는 방법 (중소기업은행 민 주 현 조사역)

2.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농경지평가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자료현황

지적통제 (내무부) 77 년말 현재로 지목별, 시군별 면적이 행정통계 방식에 의거 작성되어 있음.

전국토지시가지조사 (한국감정원) ; 매년 4 월말 현재로 동, 읍,

면까지 상업, 주택, 공장, 농경지대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시가조사 하고 있음.

농가경제조사(농수산부) : 77년말 및 매월 15일 현재로 농산물 생산비 조사에 필요한 농경지의 등급, 면적, 시가를 조사하고 있음. (전국 3375 표본가구)

나. 동자료이용상의 문제점

면적은 지적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1) 전국토지 시가조사 (한국감정원, 농업협동조합) 가격 자료를 이용할 경우 동 자료는 시점이 77년말 기준시점과 상이하고 지역별(상, 중, 하) 최고 가격이므로 이용상 곤란함.

(2) 농가경제조사의 농경지 시가(면및월별연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국의 농경지 등급별 구성비와 본조사의 농경지의 등급별 구성비가 일치하여야 하나 이 비율이 상이할 경우 시가 평균 가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조사된 농경지의 도별 평균 가격을 도별 면적에 적용시킬 경우 도전체의 농경지 시가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행되어야함.

다. 보완사항

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다음사항을 보완작성하여 본 실무자회의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였음.

(1) 농가경제조사 대상가구 소유토지의 등급별 면적을 파악하여 전국치와 비교함.

(2) 농가경제조사에서 조사된 농경지, 시가의 평균을 산출하여 한국감정원 농업협동조합 자료와 비교함.

(3) 위의 각각의 각각 자료(3종)를 이용할 경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4) (3)항에서 제시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 제기

(5) (3)항에서 제시된 3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일정

(6) 농가경제조사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목장응지에 대한 추계방법(별도)

< 별첨 >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 (시안)

1. 목 적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중 토지 및 산림자산을 평가하여 일국의 총가용 생산능력과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적 수요를 측정하고 나가서 국민대차 대조표의 편제와 각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역 및 자산의 범위

가. 지역의 범위

우리나라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걸쳐 조사함.

나. 자산의 범위

(1) 자산은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과 재생산 불가능한 유형자산으로 구분되며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1977년 국부통계조사에서 파악되었음.

(2) 재생산 불가능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토지 및 산림을 평가대상 자산으로 함.

*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

1. 토 지

11. 대 지

12. 농 경 지

13. 기 타

2. 산 림

3. 지하 자원 및 추출광상

4. 수산 자원

5. 분 화 재

* 토지 및 산림 자산

1. 토 지 (Land)

가. 대 지 (Land underlying buildings and works)

건축물 부지, 농장집근로, 농장마당

나. 농경지 (Cultivated Land)

재배지, 과수원, 포도원, 농기업구성토지

다. 기 타 (Other)

휴양지 공원, 라이터, 정원, 공지, 사도

2. 산림 (Timber tracts and forests)

산림, 산림지, 벌판, 임도, 잡목덤불, 파 그 땅

3. 제표 및 공표

가. 제표의 원칙

(1) 평가결과의 제표는 목적에 부합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각종 분류는 기존자료에 의거 분류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분류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집계의 부문별 분류

평가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소유주체별, 지역별, 지목(임상)별 등으로 분류함.

(1) 소유주체별 분류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개인

(2) 지역별 분류

서울특별시, 부산, 각도별로 제표함.

(3) 지목(임상)별 분류

㉠ 지목별 분류(토지)

지적법에 의거 전, 답, 과수원등 24개 분류로 함.

㉡ 임상별 분류(임목)

침엽수 및 활엽수로 분류하고 시 성목(흉고직경 6cm이상)

및 치목으로 분류함.

(4) 기타 분류

기본분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결과 작성시 등급별 분류를 추가하고 기본 분류는 세분 또는 재분류토록 함.

다. 공 표

평가 결과를 통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조사본부에서 통일된 체제하에 종합분석하여 1979 년말에 발간되는 1977 년 국

부통제조사 종합보고서에 부록편으로 수록 공표함.

4. 조사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1) 토지평가

㉓ 과세지

○ 추계방법

지역별 지목별 등급별 면적×단가(거래가격)

○ 추계자료

면적자료 : 내무부 행정통제 및 1977년 국부통제 조사

중 토지부문 조사결과

가격자료 : 농경지의 경우 농산물 생산비 책정을 위한

77년말 가격자료를 증산으로, 기타 토지의 경우 기존

자료(세무용, 감정용등 자료)에 의한 조정가격 또는

표본조사 자료

㉔ 비과세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비영리단체의 소유토지

① 과세지의 지역별 지목별 등급별 거래단가를 적용

② 각기관의 재산대장상의 평가액을 이용

③ 별도 우편조사

등의 방법중 ①방법을 이용하여 추계

(2) 산림평가

㉕ 임야지 : 토지 평가방법에 준함.

④ 임 목

① 성림 (평균흉고직경 6cm이상 임목)

○ 추계방법

임목축적×단가(저래가격)

○ 추계자료

임목축적 : 77년말 현재의 산림기본통계

임목단가 : 시군별, 임상별 77.6-12까지의 민유림

(사, 공유림)의 저래가격 파악. 단, 국유림

은 각 소관소별 77년도 임목매각 실적으

로 산출

② 치수림 (평균흉고직경 6cm미만 임목)

치수림은 조림치수와 천연치수로 구분되며 천연치수의

육목은 노동력 투입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으므로 치수

림의 평가는 조림치수에 한함.

○ 추계방법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 무육(撫育) 투자액을

이용 평가

○ 추계자료

연도별, 지역별, 수종별 조림실적통계

나. 조사부문 및 방법

조 사 부 문	조 사 방 법	비 고
(1) 정부 및 법인 소유 토지	정부 및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종별 장부 가액을 조사 (1977 년 국부통제조사에 첨부) 완료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에 서 조사
(2) 비법인 비영 리 단체 소유 토지	우편 조사 (필요시)	별도 조사
(3) 토지 거래 가격	지역별 지목별 등급별 표 본 조사	행정계통을 통 한 우편 조사
(4) 입 목 가격	시군별 입상별 거래가격조사	"
(5) 기타 부문	기존 행정자료 이용	

5. 담당기관

담 당 기 관	평 가 부 문	비 고
조 사 통 계 국 농 수 산 부 산 립 청 한 국 산 업 은행	총 관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포함) 산림 (임야지 포함) 농경지, 임야지를 제외한 전토지	전부문 종합

6. 일 정

- 가. 기본계획 수립 (78. 5. 1)
- 나. 기존자료 수집 (78. 5 - 78. 9)
- 다. 평가지침서 작성 (78. 9 - 78. 10)
- 라. 기존자료 보완 (78. 11 - 79. 4)
- 마. 평가작업 (79. 5 - 79. 7)
- 바. 분 석 (79. 8)
- 사. 공 표 (79. 12)

< 제 90 차 >

1978. 10. 21

1. 토지 및 산림자산 지침서 작성

가. 조사목적 지역 및 자산의 범위

조사목적, 지역 및 자산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 작성하였음.

(1) 조사목적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중 토지 및 산림자산을 평가하여 일국의 총가용 생산능력과 실무자산에 대한 금융적 수요를 측정하고 나가서 국민대차 대조표의 편제와 각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자함.

(2) 지역 및 자산의 범위

㉠ 지역의 범위

우리나라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걸쳐 조사함.

㉡ 자산의 범위

① 자산은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과 재생산 불가능한 유형자산으로 구분되며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채고자산으로 1977 년 국부통계조사에서 파악되었음.

② 재생산 불가능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토지 및 산림을 평가 대상 자산으로 함.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

1. 토 지

11. 대 지

12. 농경지

13. 기 타

2. 산 림

3. 지하자원 및 추출광상

4. 수산자원

5. 문화재

*토지 및 산림자산

1. 토 지 (Land)

가. 대 지 (Land underlying buildings and works)

건축물 부지, 농장접근로, 농장마당

나. 농경지 (Cultivated Land)

재배지, 과수원, 포도원, 농기업구성토지

다. 기 타 (Other)

휴양지, 공원, 놀이터, 정원, 공지, 사도

2. 산 림 (Timber tracts and forests)

산림, 산림지, 벌판, 임도, 잡목덤불과 그 땅

나. 조사 및 평가 방법 (토지)

토지자산 평가방법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지부에서는 이를 시행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조사방법, 일정등을 작성 본 실무자회의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였음.

- 면적은 77 년말 현재, 지적통제를 이용함.
- 토지가격은 지역별(11 개 시도), 지목별(25 개 지목), 등급별(75 등급) 평균가격을 작성 이용함.
- 평가방법 = 면적 × 평균가격

< 제 91 차 >

1978. 10. 24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 검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시안)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동 지침서 평가방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초자료 작성기관인 내무부 세정과, 지적과의 담당자를 차기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동 자료와 작성방법, 작성상의 문제점등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가. 기 조사된 국부통제정부, 법인 토지 부문 결과를 참고하여 소유주체별로 제표할 예정이나 현자료 상태를 감안하여 볼때 소유주체별 분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소유주체별 분류의 기능성은 희박함.

나. 지역별, 지목별, 등급별 평균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Cell 이 너무 세분되어 있어 표본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분류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함.

다. 각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및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한 자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시됨.

2. 총자산액 (Gross) 개념 설정

본 실무자회의 (81, 85 차) 에서 논의되었던 Gross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인 당원기획국, 한국개발연구원, 예 서면 자문한 후 본 국부통계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Gross 개념을 개 정립하기로 하였음.

< 제 92 차 >

1978 - 11 2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지침서 검토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를 위하여 기존자료(지적통제, 전국 토지 등급 가격통제) 작성기관인 내무부 세정과, 지적과 담당자의 연속회의를 개최하고 동자료의 작성방법, 이용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지적통제(토지면적 자료)

(1) 작성방법

○ 본통제자료는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에 의 하였음.

○ 지적공부 등록지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집계표에 의 하였음.

○ 미등록 토지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추계하였음.

○ 시군, 시도로 구분하여 지목별 등록별, 소유별(국유지, 민유지)로 작성하였음.

○ 본통제는 1977. 12. 31 현재임.

(2) 이용방법

본자료는 지적법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한 상태에 따라 지목이 결정되므로 지적통제상의 지목면적과 실제 지목

면적이 격차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개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실제지목과 부합되고 그 차이와 폭도 미세하므로 면적 자료는 본 지적통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였음. 단, 소유주체별 분류는 본 지적통계 자료로는 불가능 하므로 기초사된 국부통계 조사 토지 자산부문 (정부, 법인)을 참고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나. 토지 등급 가격통계 (토지가격자료)

(1) 작성방법

62 년도에 작성한 임대가액을 조정한 전국토지 등급 가액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 (매매) 사례비례법에 의거 표준지 가액을 조사 변동된 폭만큼 등급을 조정하여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이 되고 있는 토지 등급 가격을 지목별, 등급별로 가액을 3 년마다 작성하고 있음. (최근자료 : 76 년도말)

* 거래사례비례법

시장가격의 추산은 실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지불된 가액과 최근에 시장에 출품되어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액에 입각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써 이를 거래사례비례법이라 한다.

* 표준지 결정 방법

아래 분류표와 같이 지대, 지구를 정하고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목을 결정 그 지목중 지가변동이 심하지 않고 상지상의 가격의 지역을 표준지로 결정함. (전국 약 9,000개

표준지)

상업지구

주거지구

도시지대 공업지구 (공장용지)

 근교농업지구 (전, 답, 과수원)

 특수지구 (과수원, 운동장 용지등)

 취락지구 (상가지, 주거지)

 공업지구 (공장용지)

농촌지대 농업지구 (평야지, 구릉지)

 산간지구 (임지)

 특수지구 (유원지, 광천지)

(2) 이용방법

㉞ 표준지, 가격산정 기준심사요령서 및 표준지 목록을 검토하여 표준지의 가격과 토지등급 가액의 차이를 산출 일정한 조율을 전 토지에 비례 추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기존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료요청시 사전에 작성기관인 내무부의 실무자와 충분히 토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음.

㉟ 내무부의 표준지 가격에 대한 이용여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 군에서 직접 가격자료와 현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결정하는것이 요망되었음.

㊱ 내무부의 표준지 가격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별, 지목별, 등급별 지번 대장을 모집단으로 한 별도의 표본 조사가 요청되나 현 여건(예산, 인력, 시기)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3) 기타자료

또한 내무부 자료이외에 건설부의 토지 수용을 위한 국 토이용 관리법상의 가격, 국세청의 투기지역 고시가격, 감정원의 토 지감정을 위한 가격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주제작업에 반영시킬 예정임.

< 제 93 차 >

1978. 11. 21

1.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방법

토지 및 산림자산 추계를 위하여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평가범위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류기준하에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관제이용 기관의 토지 및 산림자산 자료 수요를 파악한 후 추후 조정하기로 하였음.

(1) 지 역 : 11개시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 지 목 : 지적법에 의한 24 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3) 소유주체 : 전국 단위의 소유주체별(정부, 법인, 개인) 5 개 지목별(전, 답, 대지, 임야지, 기타) 분류

나. 평가방법 작성

(1) 다음과 같이 각지부별로 세부계획서(평가방법, 작업일정 결과표안등)를 작성 11. 30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함.

농수산부 :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 추계계획서

산 립 청 : 산림 및 임야지 추계계획서

한국산업은행 : 농경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지를 제외한 전토지

추계제 회서

법인소유토지 지목별 추계제 회서

한국은행 : 정부소유토지 지목별 추계제 회서

(2) 토지자산 추계에 필요한 토지 면적 자료는 각 지부공통으로 내무부 지적통계를 사용하기로 함.

(3) 가격자료는 토지등급 가격통계등 기존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자료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표본조사방법을 채택하기로 함.

2. 중고품자산 평가방법

국민은행 남 규 홍 조사역은 중고품자산 취득의 평가방법을 작성하여 12. 3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함.

3. 기타사항

각지부별 78년도 국부통계 업무추진 실적을 11. 30 현재로 작성 12. 3 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함.